

연구보고서 2019-02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2019-02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정책방향

신태중 권혜원 김종진 남우근

서울노동권익센터

신태중
권혜원
김종진
남우근



9 791187 917298
ISBN 979-11-87917-29-8

연구보고서 2019-02

발행일 2019. 12. 31

발행인 문종찬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대표전화 02)6925-4349 상담전화 02)376-0001 Fax.070-8250-4349 www.labors.or.kr

I·SEOUL·U 서울노동권익센터

발 간 사

서울시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제한적인 법적 권한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해 서울형 노동정책을 수립·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접근하는 현실에서 서울시가 노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노동정책의 독립적 위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선도적 노동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영역이 존재하고, 실제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으며, 자치적 노동행정의 장을 여는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2014년 3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4월 처음으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으며, 5년이 지난 2020년에는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민선 5, 6기 추진한 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발굴해야 할 신규과제를 검토하는 등 향후 5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과제의 보완과 개선, 신규과제 발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학계, 노동조합, 노동단체, 서울시, 서울시의회,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문단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가 서울시의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문종찬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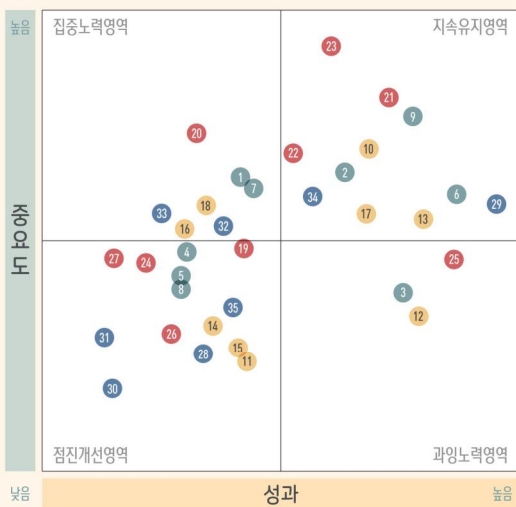


2015년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비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서울

	근로자 권익 보호 (34개 과제)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 (27개 과제)
2대 정책목표		
4대 정책과제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20개 과제)	고용의 질 개선 (16개 과제)
16개 정책분야 (61개 단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 (4) 2. 청(소)년 (2) 3. 어르신 (2) 4. 장애인 (1) 5. 외국인 (2) 6. 중소영세근로자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실태조사 (3) (모니터링) 8. 교육 (5) 9. 상담 (3) 10. 홍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고용구조 (1) 12. 소득 (4) 13. 근로환경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 노사관계 (5) 15. 지역사회 협력 (4) 16. 행정기반 (2)

1차 정책과제 IPA 평가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조사대상: 서울시 노동정책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181명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 1 청소년 등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 2 직장맘 지원
-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
- 4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5 외국인 노동자 보호
- 6 어르신 돌봄노동자 지원
- 7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 8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 9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 10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 11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
- 12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제작
- 13 서울노동아카데미
- 14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 15 마을노무사
- 16 노동조사관
- 17 노동권리보호관
- 18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고용의 질 개선

- 19 청소 노동환경 시설 개선
- 20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
- 21 생활임금제 도입과 확산
- 22 사회·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2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24 민간위탁기관 고용개선
- 25 다산콜센터 처우개선
- 26 노동자 권리보호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 27 노동시간 단축모델 도입과 확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 28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29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과 운영
- 30 서울시 노사정모델업외의 효율적 운영
- 31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32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
- 33 노동정책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34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
- 35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

2016 추진체계 구축

감정노동보호조례 제정
일자리노동국 설치
노동이사제 도입

2017

서울형 노동시간단축
자치구 노동복지센터(4개소)
노동복합시설착수(전태일기념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2018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유지특별대책반
노동조사관 도입
감정노동보호센터 개소

2019

노조할 권리(유니온시티)
민선7기 노동 7대 과제

2020년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비전	취약노동자 권리보장	좋은 일자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정책 목표	취약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권리보장 기반 및 환경 조성	노동의 질 향상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중받는 일터 실현	노동자 참여 및 협력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중점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원 강화(플랫폼, 프리랜서 등) ·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 · 체불임금 제로 도시 · 아르바이트, 청소년, 특성학교 졸업생 노동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 서울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시행 · 서울형 취약계층 시민보험 · 민간위탁 노동환경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안전보건 및 건강권 강화 · 정신건강 및 직장내 괴롭힘 대책 · 공공조달 사업에서 산재업체 자격 제한 ·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노동자 참여 플랫폼 구축(1,000인 위원회) · ILO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조합 설립 지원, 노조할 권리 보장 · 노동포괄적 교섭·협이기구 활성화 · 노동이사제 확대·강화
일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노동 지원 · 돌봄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지원 · 성평등 노동사업 확대 · 취약직종별 노동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모델 구축 · 생활임금제 확산 및 표준화 · 노동자 유급교육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 · 미래지향적 노동의제 발굴과 서울형 노동지표 개발 · 집단적 노사관계 조정 및 갈등사업장 노동자 지원

지속가능한 노동행정 (기반 구축)

안정적·체계적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노동행정 인프라 구축인프라 구축

중점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인지적 행정체계 구축 - 노동정책예산 확대 - 자치구 노동행정 강화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원비 및 기능·역할 정비 	일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정책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 서울시 설립 노동권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노동권리보호 기반 내실화
-------	--------------------------------------------------------------------------------------------------------------------------------------------------	-------	-----------------------------------------------------------------------------------------------------------------------------------------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3
II.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 현황	6
1. 개요	6
2. 2015년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9
3. 2016년 노동존중특별시 1단계 발전계획 및 노동혁신대책	13
4. 2017년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	15
5. 2018년 서울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제278회 임시회)	17
6. 2019년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18
III. 서울시 추진 노동정책 세부과제 검토	20
1. 개요	20
2.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부문 세부과제 검토	21
3.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부문 세부과제 검토	24
4. 고용의 질 개선 부문 세부과제 검토	28
5.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부문 세부과제 검토	31
IV. 서울시 노동정책 설문조사 결과	36
1. 조사개요	36
2. 응답자 특성	37
3.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38
4.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에 대한 평가	65
5. 신규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70
6. 소결 :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과제 도출	76

V. 2차 노동정책 비전과 정책방향	81
1. 2차 노동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81
2.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와 중점과제	83
1) 정책목표1 : 취약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83
2) 정책목표2 : 좋은 일자리 구축	110
3) 정책목표3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실현	128
4) 정책목표4 : 일하는 시민의 노동기본권 보장	139
5) 노동정책 추진 기반 : 지속가능한 노동행정	159
 참고문헌	 177
[부록]	180

- 표 목차 -

〈표 1-1〉 연구추진체계	4
〈표 2-1〉 2011년 이후 서울시 노동정책 흐름	8
〈표 2-2〉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경과	8
〈표 2-3〉 2015년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핵심지표	10
〈표 2-4〉 2015년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11대 핵심과제	12
〈표 2-5〉 2016년 노동존중특별시 1단계 발전계획	14
〈표 2-6〉 2016년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	15
〈표 2-7〉 2017년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	16
〈표 2-8〉 시민의 삶을 바꾸는 노동존중 구현	17
〈표 2-9〉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19
〈표 3-1〉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부문 세부과제 검토	22
〈표 3-2〉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부문 세부과제 검토	25
〈표 3-3〉 고용의 질 개선 부문 세부과제 검토	29
〈표 3-4〉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부문 세부과제 검토	32
〈표 4-1〉 설문조사 개요	37
〈표 4-2〉 설문대상 과제와 주요내용	37
〈표 4-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38
〈표 4-4〉 설문대상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주요 세부과제	38
〈표 4-5〉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주요 세부과제 전체 평가 결과	40
〈표 4-6〉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45
〈표 4-7〉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35개 주요 사업 IPA 분석 결과 종합	60
〈표 4-8〉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전체 평가 결과	65
〈표 4-9〉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별 인지도, 중요도, 추진용이성	67
〈표 4-10〉 중요도 - 추진용이성 분석	68
〈표 4-11〉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중요도와 추진용이성 차이	70
〈표 4-12〉 신규제안과제 전체 평가 결과	71
〈표 4-13〉 신규제안과제별 중요도, 추진용이성	72
〈표 4-14〉 신규제안과제별 중요도, 추진용이성 차이	76
〈표 4-15〉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안)	79

〈표 5-1〉 업종, 성별, 체류자격에 따른 최저임금 수령 여부	93
〈표 5-2〉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2016년)	93
〈표 5-3〉 청소년 아르바이트시 노동인권 침해 실태	97
〈표 5-4〉 성별 시간분배율(1999~2013)	102
〈표 5-5〉 사회보험 가입율	116
〈표 5-6〉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현황 (2012~2020)	117
〈표 5-7〉 서울지역 사회보험 지원(안)	118
〈표 5-8〉 공공영역과 민간위탁 영역 구분 - 직접고용, 간접고용, 민간위탁	119
〈표 5-9〉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추이 및 적용대상 (조례)	123
〈표 5-10〉 서울지역 기초지자체 생활임금 및 적용대상 현황 (2019.11.)	125
〈표 5-11〉 고용노동부 지청별 산업재해 현황 (2019.1~6, 단위 : 명, %, % ₁₀₀ , % _{100p})	129
〈표 5-12〉 노동안전보건 분야 1차, 2차 노동정책	130
〈표 5-13〉 해외 공공계약 협약과 지방정부 정책개입 사례	134
〈표 5-14〉 서울지역 사업체 및 종사자 구분 현황 (2018)	136
〈표 5-15〉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적	146
〈표 5-16〉 서울시 노동이사제 현황	149
〈표 5-17〉 20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 및 교부현황	151
〈표 5-18〉 서울지역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사업 유형	153
〈표 5-19〉 공적조정과 사적조정의 구분	154
〈표 5-20〉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교육 실적	161
〈표 5-21〉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예산 비중 (단위 : 억원, %)	163

- 그림 목차 -

[그림 2-1] 2015년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비전체계	9
[그림 4-1]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주요 세부과제 전체 평가 결과	40
[그림 4-2]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42
[그림 4-3] 직장맘 지원	42
[그림 4-4]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42
[그림 4-5]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	42
[그림 4-6] 외국인노동자 보호	42
[그림 4-7]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42
[그림 4-8] 도심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43
[그림 4-9]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43
[그림 4-10]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43
[그림 4-11]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세부사업 종합 결과	44
[그림 4-12]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사업 IPA 분석 결과	45
[그림 4-13] 취약계층노동자 실태조사	47
[그림 4-14]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47
[그림 4-15] 서울노동아카데미(서울시민 노동교육)	47
[그림 4-16] 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노동인권교육	47
[그림 4-17]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노동상담)	47
[그림 4-18] 마을노무사(노무관리 컨설팅)	47
[그림 4-19] 노동권리보호관(권리구제)	48
[그림 4-20] 노동조사관(공공부문 노동인권침해 조사)	48
[그림 4-21]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제작	48
[그림 4-22]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세부사업 종합 결과	49
[그림 4-23]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사업 IPA 분석 결과	49
[그림 4-2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51
[그림 4-25] 생활임금제 도입과 확산	51
[그림 4-26] 사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1
[그림 4-27] 노동시간 단축모델 도입과 확산	51
[그림 4-28]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	52

[그림 4-29] 민간위탁기관 고용개선	52
[그림 4-30] 다산콜센터 처우개선	52
[그림 4-31] 청소 노동환경 시설 개선	52
[그림 4-32] 노동자 권리보호 공공조달시스템 구축	52
[그림 4-33] 고용의 질 개선 세부사업 종합 결과	53
[그림 4-34] 고용의 질 개선 사업 IPA 분석 결과	54
[그림 4-35]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55
[그림 4-36] 서울 노사정보모델협의회 효율적 운영	55
[그림 4-37] 노동이사제 도입	56
[그림 4-38]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	56
[그림 4-39]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과 운영	56
[그림 4-40]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	56
[그림 4-41] 노동정책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56
[그림 4-42]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	56
[그림 4-43]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세부사업 종합 결과	57
[그림 4-44]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사업 IPA 분석 결과	58
[그림 4-45]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35개 주요 사업 인지도, 중요도, 성과 종합	61
[그림 4-46]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35개 주요 사업 인지도	62
[그림 4-47]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35개 주요 사업 중요도	63
[그림 4-48]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35개 주요 사업 성과	64
[그림 4-49]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전체 평가 결과	66
[그림 4-50] 소속기관에 따른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인지도	67
[그림 4-51] 소속기관에 따른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중요도	67
[그림 4-52] 소속기관에 따른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추진용이성	68
[그림 4-53] 민선 7기 7대 과제 중요도 - 추진용이성 분석 결과	69
[그림 4-54] 신규제안과제 중요도	73
[그림 4-55] 신규제안과제 추진용이성	74
[그림 4-56] 신규제안과제 중요도 - 추진용이성 분석 결과	75
[그림 5-1]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비전체계(안)	81
[그림 5-2]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추진방향	82
[그림 5-3] 플랫폼 노동자 계약체결 비율	85
[그림 5-4] 플랫폼 노동자 월 평균 소득(세전)	85
[그림 5-5] 프리랜서 불공정계약 경험 및 월 평균 수입	88

[그림 5-6] 임금체불액 규모(억원)	90
[그림 5-7]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 수(명)	90
[그림 5-8]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한 청구 지원	92
[그림 5-9]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사례	94
[그림 5-10] 아르바이트 참여시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비율	96
[그림 5-11]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 유무 및 위치	99
[그림 5-12] 방문 요양보호사 성희롱 등 경험 비율(%)	99
[그림 5-13] 무급가족종사자 추이 (천명)	103
[그림 5-14]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비임금노동자 비율(%)	103
[그림 5-1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106
[그림 5-16]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수 및 인정률	106
[그림 5-17]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109	108
[그림 5-18] 서울시 및 광역시도별 주 52시간 초과자 비율(2018년 기준, 단위 : %)	111
[그림 5-19] 유럽 지자체 노동시간 단축 실험 (이탈리아, 독일)	112
[그림 5-20] 서울시 공공부문 및 민간위탁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실현 로드맵	112
[그림 5-21]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미래 이슈	121
[그림 5-22] 서울시 단계별 정규직화 추진 현황	122
[그림 5-23] 연도별 정규직화 추진 현황	122
[그림 5-24]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확산 단계별 검토 대상	124
[그림 5-25] 취약계층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	126
[그림 5-26] 해외사례 -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 도심 공예품 일자리 프로젝트(2013~2021)	137
[그림 5-27] 기존 민선 5, 6기 노동정책 플랫폼	140
[그림 5-28]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직 현황	148

연구 요약 문

1. 서론

- 서울시는 2014년 3월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 조례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환경변화를 검토함으로써 민선 7기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위해 폭넓게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를 추진함. 전문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단체, 서울시, 서울시의회,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20명 내외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연구 진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연구팀은 서울시 등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참여하거나 지방정부 노동정책 평가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로 구성하여 자문단 논의자료를 생산하고,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여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기초 자료를 마련함

구분	주요내용
자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 등 전문가, 노동조합, 노동·시민단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의회, 서울시 등 노동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 • 연구팀의 단계별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와 자문의견 제시, 신규 과제에 대한 제안 등
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을 포함한 광역지자체의 노동정책 수립·평가 등에 참여한 노동분야 연구자로 센터인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 • 서울시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자료 생산, 자문의견 등을 포함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3가지로, ① 기존 서울시 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보완 및 개선점을 도출하여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 ②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반영하는 것, 그리고 ③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 핵심과제 제시 등의 비전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 연구방법은 자문단 운영에 따른 자문의견 수렴, 그리고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추진함

2.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 현황

- 서울시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후보가 당선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제한적인 법적 권한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행정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해 서울형 노동정책을 수립·시행해 왔음
- 민선 5기에서는 선도적 노동정책과 노동행정 체계를 마련하였는데, 서울시 민선 5기의 노동정책은 ‘노동존중 서울시 만들기’의 기본 방향 아래 1) 좋은 일자리 만들기, 2) 취약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 향상, 3) 신뢰와 참여의 노사관계 형성, 4) 노동인지적 서울시 행정시스템 정착 등의 과제를 제시함
- 민선 6기에서는 종합적 노동정책을 마련하여, 주요하게 생활임금제 시행, 서울노동권익센터 설립,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등 취약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확대·시행하고,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및 일자리노동국 설치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 체계 기반을 조성함
- 민선 7기에서는 노동분야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주요하게 노조 설립지원, 노동사회위원회 설치, 임금체불 제로도시 조성, 서울형 노동안전체계 구축 등을 향후 추진할 중요 과제로 설정함

새로운 출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체계 구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민권리 선언	정규직 전환 추진	알바권리 장전	노동권리보호조례 제정	생활임금조례 제정	감정노동보호조례 제정	서울형 노동시간단축	아파트경비 노동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	노조 할 권리 (유니온시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4개소)		노동권익센터 설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 노동국 설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4개소)	감정노동보호센터 개소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과제

새로운 출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체계 구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동 정책과 설치			서울협약 (시 투·출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	노동복합시설 착수 (전태일기념관)	노동조사관 도입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자료 : 이철(2019),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동권익 활동 성과와 과제, 충남노동권익센터 제1회 노동정책포럼 발표자료

3. 서울시 노동정책 설문조사 결과

- 서울시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존 서울시 노동정책,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그리고 새롭게 제안한 신규과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설문조사 대상은 서울시 노동정책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로, 구체적으로 서울시 설립 노동관련 위원회 위원, 노동분야 연구자, 서울시 설립 노동권익기관 상근자, 서울지역 노동조합 상근자, 서울지역 노동단체 소속 활동가였음
- 설문기간은 2019년 11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약 6주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와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함

1)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주요 사업 분석

-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에 대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성과 분석) 분석 결과를 보면, 35개 과제 중 11개 사업은 중요도와 성과 모두 높게 나타나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나타남.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직장맘 지원,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노동권리보호관 운영,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도입과 확산,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 등이 해당됨. 즉 이들 사업은 2차 노동정책 계획에서도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중요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아 향후 집중 노력이 필요한 과제는 7개

로, 아르바이트 및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노동조사관 운영,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 노조 및 노동단체 지원, 노동정책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등이었음. 이들 과제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전보다 집중적 노력을 통해 성과를 높여나가야 하는 사업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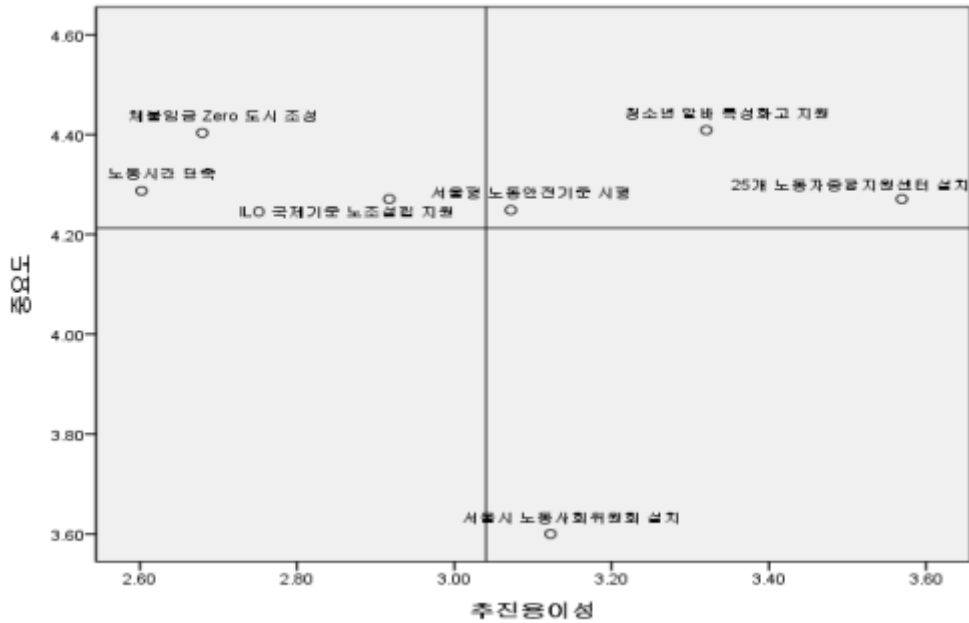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낮은 사업은 14개로,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업임. 구체적으로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외국인노동자 보호,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마을노무사 운영,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 운영, 노동자 권리보호 공공조달시스템 개선, 노동시간 단축, 청소 노동환경 시설개선, 민간위탁기관 고용개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 운영, 노동이사제, 노동정책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이었음. 용역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민간위탁 고용개선, 거버넌스 운영 등은 단시간에 성과를 얻기보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노무사,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 운영은 전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재편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과는 크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제작, 다산콜센터 처우개선 등 3개 사업이었음. 이들 사업은 그동안 중요도에 비해 성과가 큰 사업으로 향후 사업추진시 이들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에 자원을 우선배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즉, 일정한 성과를 거뒀기에 지금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한정된 자원으로 가급적 다른 사업에 우선 자원배분이 필요함을 의미함. 하지만, 이들 사업 모두 중요도가 5점 척도 기준 3.70 이상으로 상대적인 중요도가 낮은 뿐, 절대적 중요도는 높은 편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의 질 개선	노사관계 구축
지속 유지 과제 (높은 중요도-높은성과)	-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 직장맘 지원 -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	-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 노동권리보호관 - 서울노동이카데미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생활임금제 - 사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 전담조직 강화 -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의 질 개선	노사관계 구축
집중 노력 과제 (높은 중요도-낮은 성과)	- 청소년 등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 노동조사관	- 직장내 괴롭힘 예방	- 노조 및 노동단체 지원 - 노동정책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점진 개선 과제 (낮은 중요도-낮은 성과)	-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외국인노동자 보호 -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 민생침해 모니터링 - 마을노무사 - 시민명예노동음부 즈만 운영	- 노동자 권리보호 공공조달시스템 개선 - 노동시간 단축 - 청소 노동환경 시설개선 - 민간위탁기관 고용개선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 노사정모델협의회 운영 - 노동이사제 -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과잉 노력 과제 (낮은 중요도-높은 성과)	- 이동노동자 센터 조성	- 노동권리수첩	- 다산콜센터 처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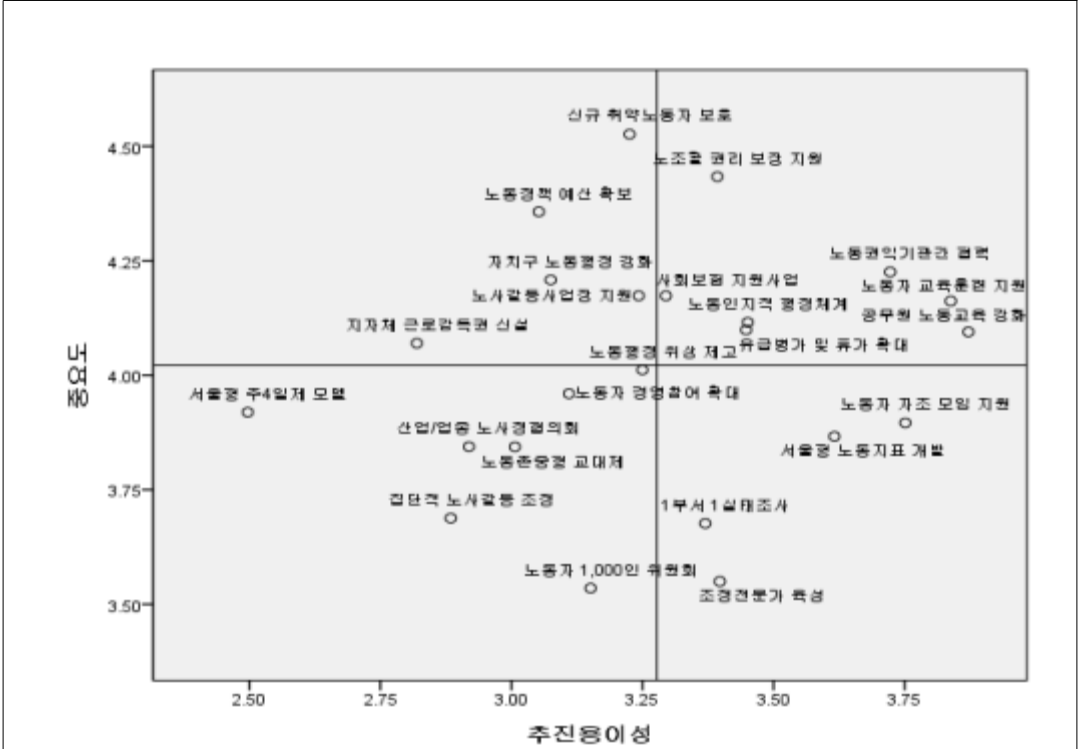
2) 민선 7기 7대 과제 분석

- 민선 7기 7대 과제에 대해 IPA(중요도-성과분 석)과 마찬가지로, 중요도와 추진 용이성 평균을 기준으로 4분면의 매트릭스를 형성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1사분면은 중요하면서 추진이 용이한 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지만 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3사분면은 중요도와 추진용이성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아 선택하여 추진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며, 4분면은 중요도는 낮지만, 추진이 용이하여 중기추진영역에 해당함
-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를 상대적 중요도와 추진용이성에 따라 구분하면, 아르바이트와 청소년, 특성화고 노동권익 보호,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완비,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은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체불임금 제로 도시 조성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ILO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 설립지원은 중요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하지 않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 하겠음. 노동사회위원회 설치는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하지만, 중요도는 낮게 보아 신속히 추진하기보다 중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함



3) 신규제안 과제 분석

- 신규제안과제 23개를 상대적 중요도와 추진용이성에 따라 구분하면, 노조할 권리 보장 지원, 노동권익기관간 협력,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노동자 교육훈련 지원, 노동인지적 행정체계 구축, 공무원 노동교육 강화, 유급병가·유급휴가 지원 확대 등 사업은 중요도와 추진용이성 모두 높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신규 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원, 노동정책 예산 확보, 자치구 노동행정 강화, 노사갈등사업장 지원,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 등 사업은 중요하지만 난이도가 있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해당하며, 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서울형 노동지표 개발, 1부서 1실태조사, 조정전문가 육성 과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중요도도 상대적으로 낮아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 하겠음. 마지막으로 3사분면에 위치한 중요도와 추진용이성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7개 과제는 선택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해당함. 하지만 3사분면에 위치한 7개 신규제안과제들도 모두 중요도가 5점 척도 기준 3.50 이상으로 중요도 평균(4.02)보다 낮을 뿐, 절대적 중요도가 낮다고 할 수 없어 2사분면의 사업처럼 장기적으로 추진을 고려해야 할 사업으로 보임



4)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과제 도출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와 자문회의, 그리고 연구진 논의를 통해 도출한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우선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지만 성과는 높았던 과잉노력영역 과제는 제외하고, 지속유지영역, 집중노력영역, 점진개선영역에 포함된 과제를 중심으로 2차 기본계획 과제를 도출하였음
-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는 2차 노동정책에 모두 포함함.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노동사회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 중요도가 모두 4.0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3개 과제(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보호,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는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과제와 연계된 과제로 기존과제 평가시 지속 추진의 필요성이 확인됨.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던 서울시 노동사회위원회 설치는 서울형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측면에서 과제로 포함함
- 신규제안과제에 대해서는 신속추진영역, 장기추진영역, 중기추진영역, 선택추진영역별로 평가하여 2차 노동정책 과제로 선정함. 또한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지

만, 연구진 논의를 통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과제도 함께 제안함

평가대상 과제			2차 노동정책 과제(안)
1차 노동정책 과제	민선 7기 노동 7대 과제	신규제안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 직장맘 지원 -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 -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 노동권리보호관 - 서울노동이카데미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생활임금제 -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전담조직 강화 -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 - 청소년 등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 노동조사관 - 직장내 괴롭힘 예방 - 노조 및 노동단체 지원 - 노동정책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외국인노동자 보호 -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 민생침해 모니터링 - 마을노무사 -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 운영 - 노동자 권리보호 공공조달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아르바이트, 청소년 특성학교 졸업생 노동권 보호 -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ILO국제기준에 맞는 노조 설립지원 - 서울시 노동사회위원회 설치 - 체불임금 제로 도시 조성 - 서울형 노동인건기준 확대 및 시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노동교육 강화 - 노동인적저 행정체계 구축 - 노동자 경영참여 모델 강화 및 확대 - 노조할 권리 보장 지원 - 서울형 주4일제 노동 모델 - 노동정책 예산 확보 - 신규 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자차구 노동행정 강화 - 장기투쟁사업장 및 해고노동자 지원 -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 - 산업별·업종별 노사정협의회 -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 유급병가·유급휴가 지원 확대 - 노동존중형 교대제 - 집단적 노사갈등 사적조정 지원 - 노동행정 위상 제고 - 서울시 노동권익기관간 협력 강화 - 노동자 참여 플랫폼(노동자 1,000인 위원회) - 노동자 교육훈련 지원 - 1부서 1실태조사 - 서울형 노동지표 개발 - 조정전문가 육성 - 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p>(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 - 체불임금 제로 도시 - 아르바이트, 청소년, 특성학교 졸업생 노동권 보호 - 취약직종별 노동자 지원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 서울형 취약계층 시민보험 - 민간위탁 노동환경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모델 구축 - 생활임금제 확산 및 표준화 - 노동자 유급교육훈련 지원 - 노동안전보건 및 건강권 강화 - 정신건강(감정노동, 디지털트라우마) 및 직장내 괴롭힘 대책 - 공공계약·조달시 산재업체 자격 제한 - 도심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등 지원 - 서울시 노동자 참여 플랫폼 구축(1,000인 위원회) - ILO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조합 설립 지원, 노조할 권리 보장 - 서울형 사회적대화기구 재편을 통한 노동포괄적 교섭·협의를기구 - 노동이사씨 확대·강화 -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 - 미래지향적 노동의제 발굴과 서울형 노동지표 개발 - 집단적 노사관계 조정 및 갈등사업장 노동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간 단축 - 청소 노동환경 시설 개선 - 민간위탁기관 고용개선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 노사민정모범협의회 운영 - 노동이사제 -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 노동권리수첩 - 다산콜센터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인 지적 행정체계 구축 - 노동정책예산 확대 - 자치구 노동행정 강화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완비 및 기능·역할 정비 - 노동정책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노동권리보호 체계 내실화 <p>(연구진 추가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노동 지원 - 돌봄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지원 - 성평등 노동사업 확대 - 서울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시행
----------------------------------------------------------------------------------------------------------------------------------------------------------------------------------------------------------------------------------------------------------------------------------------------	--	--	-------------------------------------------------------------------------------------------------------------------------------------------------------------------------------------------------------------------------------------------------------------------------------------------------------------------------------------------------------------------------------------------------------------------------

* 평가대상 과제에서 기어어진 진한 글씨체가 2차 노동정책 도출 과제

4. 2차 노동정책 비전과 정책방향

1) 비전체계

비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정책 목표	취약노동자 권리보장	좋은 일자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정책 과제	중점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 서울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시행 - 서울형 취약계층 시민보험 - 민간위탁 노동환경 개선 및 종합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안전보건 및 건강권 강화 - 정신건강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책 - 공공조달 사업에서 산재업체 자격 제한 -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노동자 참여 플랫폼 구축 (1,000인 위원회) - ILO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조합 설립 지원, 노조할 권리 보장 - 노동포괄적 교섭·협의회구 활성화 - 노동이사제 확대·강화
	일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노동 지원 - 돌봄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지원 - 성평등 노동사업 확대 - 취약직종별 노동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모델 구축 - 생활임금제 확산 및 표준화 - 노동자 유급교육 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 - 미래지향적 노동의제 발굴과 서울형 노동지표 개발 - 집단적 노사관계 조정 및 갈등사업장 노동자 지원

지속가능한 노동행정 (기반 구축)

(중점과제)

- 노동인지적 행정체계 구축
- 노동정책예산 확대
- 자치구 노동행정 강화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완비 및 기능·역할 정비

(일반과제)

- 노동정책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 서울시 설립 노동권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노동권리보호 기반 내실화

2) 추진방향

정책목표	추진방향	
<p>① 취약노동자 권리보장</p>	<p>취약노동자 노동권의 향상을 위한 권리보장 기반 및 환경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노동자, 이주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신규 취약 노동자 보호 사업 추가로 취약노동자 보호 범위 확대 - 고용관계나 임금노동 중심의 협의의 노동자를 넘어 비임금노동, 생활노동 등 일하는 사람에 대한 포괄적 접근 - 1차 노동정책에서 추진했던 취약노동자 지원 정책 확대·강화
<p>② 좋은 일자리</p>	<p>노동의 질 향상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EU의 Decent Work 관점에서의 노동의 질 향상 - 고용안정, 소득불평등 해소(임금), 노동시간 단축, 사회보장, 교육 훈련, 차별해소 등 사업 추진 -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모델 구축, 생활임금 확산과 표준화 등 기존 정책 강화
<p>③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p>	<p>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중받는 일터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사회, 안전한 일터의 중요성 확대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서울지역 산업특성을 고려한 도심형 제조업, 서비스 산업, 공공 부문에 특화된 안전보건 사업 추진
<p>④ 노동기본권 보장</p>	<p>노동자 참여 및 협력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참여에 기초한 포괄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포괄적 참여형 거버넌스 구조 선도적 확립·운영 (노동자 참여 플랫폼 확립, 지역 수준 사회적 대화기구 신설, 노동이사제 강화·확산) - 노동법상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하는 서울시민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전면 보장과 지원

지속가능한 노동행정 (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노동행정 추진을 위한 인프라 강화
- 행정 전반의 노동인지적 관점 실행을 위한 노동인지적 행정체계구축 추진
- 안정적·지속적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노동행정예산 확대
- 전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기능·역할 정비 및 노동권리보호 기반 내실화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서울시는 2014년 3월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 조례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2015년 4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음. 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울시 노동정책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관련 조례 제정, 조직, 정책사업, 예산, 이행평가체계 등 노동행정의 기본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음(주진우 외, 2015)
-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이후, 서울시는 종합적인 노동행정을 펼치며,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선도적·모범적 사례로 꼽히고 있음. 중앙정부가 시도하지 못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청년수당, 노동이사제 등의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취약노동자 노동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 노동정책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계층의 소득 증대, 이를 위해 노동기본권의 적극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과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도 시사점을 주었으며, 다른 지자체의 노동정책 검토·도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특히 서울시 노동정책 사례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영역이 존재하고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치적 노동행정의 장을 여는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임(주진우 외, 2015)

- 서울시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주요 계획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음
 - 2015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 실현을 위해 ‘근로자 권익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의 2대 정책목표, 그리고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16개 분야 61개 단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마을노무사,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 제도 운영 등 서울시 특성에 맞는 노동행정을 펼쳐옴
 - 2016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1단계 발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하여, 7대 약속 24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함
 - 2017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의 것으로서 중점 추진방향으로 지방자치 관점에서 국가단위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노동모델을 정립·확산하며,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노동권 보호 확대 및 저출산·고령화, 산업변화 등의 사회변화에 맞는 노동정책 수립을 제시함(운영삼, 2019)
 - 2018년에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 지방정부가 노동환경, 노동시장과 임금 등의 기준을 설정해 노동자를 적극보호하고, 노동자 또한 스스로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는 도시인 ‘유니온 시티(Union City)’ 조성을 제시함
 - 2019년 민선 7기에 들어서는 노동분야 7대 과제를 선정·발표함으로써 핵심적으로 추진할 노동정책을 제시함

- 한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장은 5년마다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2020년에 2차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음

2) 연구목적

- 서울시 조례에 의거 그동안 서울시 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환경변화를 검토함으로써 민선 7기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

고자 함

- 민선 5기, 선도적 노동정책과 노동행정 체계, 민선 6기, 종합적 노동정책 수립·시행
- 민선 7기,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평가와 환경변화 분석을 통해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기초자료 마련
- 서울시 중장기 노동정책 비전과 정책방향, 세부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선도적 역할 모색

2.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1) 연구추진체계

- 노동정책은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함. 또한 현장밀착형 새로운 노동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의 직접적 참여가 필요함
- 이에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위해 폭넓게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를 추진함
 - 전문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단체, 서울시, 서울시의회,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20명 내외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연구 진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연구팀은 서울시 등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참여하거나 지방정부 노동정책 평가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로 구성하여 자문단 논의자료를 생산하고,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여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의 기초 자료를 마련함
 - 연구팀은 서울시가 추진한 기존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역할
- 자문단은 노동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 정치적 행정적 관계자, 실무 수행 역할을 맡은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이 참여함

- 자문단은 연구진이 연구진행에 따른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와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신규과제를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
- 구체적으로 연구 추진 방향, 기존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신규 제안과제에 대한 의견,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핵심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문 의견 제시

<표 1-1> 연구추진체계

구분	주요내용
자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 등 전문가, 노동조합, 노동·시민단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의회, 서울시 등 노동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 • 연구팀의 단계별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와 자문의견 제시, 신규 과제에 대한 제안 등
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을 포함한 광역지자체의 노동정책 수립 · 평가 등에 참여한 노동분야 연구자로 센터인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 • 서울시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자료 생산, 자문의견 등을 포함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3가지로, ① 기존 서울시 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보완 및 개선점을 도출하여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 ②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반영하는 것, 그리고 ③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 핵심과제 제시 등의 비전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 기존과제의 보완과 개선,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과제 발굴, 그리고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게 본 연구의 주된 목적임

2)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자문단 운영에 따른 자문의견 수렴, 그리고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추진함
 - 앞서 설명했듯이, 자문단 운영은 연구진의 단계별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여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문헌연구에서는 2015년 노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정책과제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이후 매년 발표한 실행계획과 2018년 민선 7기 노동정책 공약, 2019년 시정 4개년 계획의 노동분야 7대 과제 등의 자료를 분석함. 또한 서울시 이후 지방정부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경기, 광주, 충남의 노동정책기본계획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등도 함께 검토함. 아울러 서울시 노동정책 및 지방정부 노동정책 평가에 대한 문헌도 본 연구에 참고함

- 끝으로 서울시 노동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직·간접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노동정책에 대한 인지도, 중요도,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노동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함. 또한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발굴한 신규과제에 대한 중요도, 추진용이성을 조사하여 2차 노동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용이한 추진을 위한 조건 등을 검토함

II.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 현황

1. 개요

- 서울시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후보가 당선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제한적인 법적 권한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행정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해 서울형 노동정책을 수립·시행해 왔음
- 민선 5기에서는 선도적 노동정책과 노동행정 체계를 마련하였는데, 서울시 민선 5기의 노동정책은 ‘노동존중 서울시 만들기’의 기본 방향 아래 1) 좋은 일자리 만들기, 2) 취약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 향상, 3) 신뢰와 참여의 노사관계 형성, 4) 노동인지적 서울시 행정시스템 정착 등의 과제를 제시함
- 민선 6기에서는 종합적 노동정책을 마련하여, 주요하게 생활임금제 시행, 서울노동권익센터 설립,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등 취약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확대·시행하고,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및 일자리노동국 설치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 체계 기반을 조성함
- 민선 7기에서는 노동분야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주요하게 노조 설립지원, 노동사회위원회 설치, 임금체불 제로도시 조성, 서울형 노동안전체계 구축 등을 향후 추진할 중요 과제로 설정함
- 서울시 차원의 노동정책은 2011년 11월 「서울시민권리선언」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난 9년간의 추진경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11년 「서울시민권리선언」 제7조에서 “서울시민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정 및 증진과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정책의 구상과 방향을 담음
 - 2012년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에서 일자리·경제분야 4대 시책 중 하나로

‘노동존중의 사회문화 정착’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조건 개선, 실질적 노사민정 협력 강화,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노동시간 준수와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제시함. 또한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 전담조직을 ‘팀’에서 ‘과’ 단위로 확대하여 ‘노동정책과’를 설치함

- 2014년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의 노동자 보호 책무,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음
- 2015년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으며, 2대 정책목표, 4대 정책과제, 61개 단위과제를 제시함
- 2016년 1단계 노동정책 발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하고, 고용노동정책의 독자적 추진을 위한 ‘국’ 단위의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직으로 개편함
- 2017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7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무기계약직의 전면 정규직화, 생활임금 1만원 시대,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등을 제시함
- 2018년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를 개소하고,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함
- 2019년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를 제시하고, 노동존중문화의 상징 전태일기념관을 개관함.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개편함

○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접근하는 현실에서 서울시가 노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노동정책의 독립된 위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이철 외, 2017)

○ 서울시의 선도적 노동정책은 노동정책이 중앙정부만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영역이 존재하고, 실제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며, 자치적 노동행정의 장을 여는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음(주진우 외, 2015)

○ 이하에서는 서울시가 발표해 온 그동안의 노동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검토함

<표 2-1> 2011년 이후 서울시 노동정책 흐름

새로운 출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체계 구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민권리 선언	정규직 전환 추진	알바권리 장전	노동권리 보호조례 제정	생활임금 조례 제정	감정노동 보호조례 제정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아파트경비 노동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	노조 할 권리 (유니온 시티)
	자치구 노동복지 센터 설치 (4개소)		노동권익 센터 설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 노동국 설치	자치구 노동 복지센터 (4개소)	감정노동 보호센터 개소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과제
	노동 정책과 설치			서울협약 (시 투·출 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	노동복합 시설착수 (전태일 기념관)	노동조사관 도입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자료 : 이철(2019),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동권익 활동 성과와 과제, 충남노동권익센터 제1회 노동정책포럼 발표자료

<표 2-2>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경과

일자	경과
2011.10.19.	'서울시민권리선언' 발표, 여기에 서울시의 전체적인 노동정책 구상과 방향을 담음
2012	서울시,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에 '노동존중의 사회문화 정착'을 일자리 경제분야 4대 시책 중 하나로 설정,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조건 개선, 실질적 노사민정 협력 강화,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노동시간 준수와 일자리 나누기를 사업으로 제시
2012.9	기존 일자리정책과의 노사협력팀을 확대하여 지방정부 최초로 '과' 차원의 노동정책 전담 행정조직인 노동정책과 신설
2015.4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장의 근로자 보호 책무를 담은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 발표
2016.2.4.	전국 최초로 일자리노동국을 신설하여 서울시 고용노동정책의 독자적 추진 체계 마련.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일자리 문제해결과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 노동복지 등을 노동인지적 관점으로 추진
2016.4.27.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발표, 노동권익 보호, 사람 우선의 노동조건 보장,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7대 약속 제안
2016.8.1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한시기구였던 일자리노동국을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직으로 정규기구화
2017.8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 발표

일자	경과
2018.5.20.	"10년 혁명을 위한 약속" 공약에서 Union City! 제시
2019.1.1.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조직개편

자료 : 김철(2019), 박원순 서울시장 3기, 노동정책의 쟁점과 과제, 박원순 민선 7기 서울시장 1년 평가토론회

2. 2015년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 2015년 4월 발표된 1차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노동자 권익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의 2대 정책목표, 취약노동자 권리보호,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의 4대 정책과제야 61개의 단위과제로 구성됨

[그림 2-1] 2015년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비전체계



- 정책목표별로 2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별로 5년간의 5대 핵심지표를 제시함
 -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기본권

- 보장기반 구축의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각각 20개, 14개의 단위과제를 제시함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이동하는 여성노동자 쉼터 개수,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이 양성,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MOU 건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원, 외국인노동자 의료서비스 지원 인원 등을 핵심 지표로 설정함.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정책과제에서는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인원, 소규모사업장 노동실태조사 인원, 서울노동아카데미 교육인원,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 무료상담 건수, 노동권리수첩 제작부수를 핵심지표로 함
- 모범적 사용자역할 정립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용의 질 개선과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의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각각 16개, 11개의 단위과제를 제시함
- 고용의 질 개선 정책과제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원,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인원,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개선, 민간위탁기관 노무진단 개소, 공공조달 중소기업장 노무컨설팅 사업장 개소 핵심지표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정책과제에서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공정일터 조성지원 사업장 개소, 노동포럼 및 세미나 개최 회수,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연간 이용인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상담 건수를 핵심지표로 제시함

<표 2-3> 2015년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핵심지표

정책목표	정책과제	핵심지표
노동자 권익보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하는 여성노동자 쉼터 개수 (2014년 8개소에서 2019년 25개소로 확충) - 맞벌이가정 등 아이돌봄이 양성 (2019년까지 4,300명으로 확대) -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MOU건수 (2014년 9건 체결에서 2019년까지 59건 체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원 (2014년 528명에서 2019년 620명으로 증원) - 외국인노동자 의료서비스 지원 인원 (2019년까지 총 10,000명 이상 의료비 지원)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노동자 노동실태 조사인원 (매년 1,000명 이상 실시) - 소규모사업장 노동실태 조사인원 (2019년까지 총 20,000명 조사) - 서울노동아카데미 교육인원 (2014년 12,000명에서 향후 5년간 119,000명) -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 무료상담 (2014년 2,300건에서 2019년까지 13,000건 상담) - 노동권리수첩 신규 제작 (2015년 3,000부에서 2019년까지 35,000부 제작 보급 확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	고용의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원 (2015년 4월 5,625명에서 2017년까지 7,322명 전환) -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인원 (2015년 420명에서 2019년 1,400명 이상 목표) -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개선 (2019년까지 340개소 이상) - 민간위탁기관 노무진단 (2014년 63개소에서 2019년까지 563개소) - 공공조달 중소기업장 노무컨설팅 사업장 (2019년까지 550개소)

정책목표	정책과제	핵심지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연 1회 이상 본회의 개최) - 공정일터 조성 지원 사업장 (2015년 5개소에서 2019년까지 40개소 지원) - 노동포럼 및 세미나 개최 (2019년까지 총 8회 이상 개최 목표) - 4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연간 이용인원 (2019년까지 186,000명 이상) -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상담 건수 (2019년까지 6,000건 이상)

○ 기본계획 수립 이후, 향후 5년간의 주요 핵심지표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할 11대 핵심과제를 제시함

- 첫 번째 과제는 노동교육, 상담, 모니터링, 홍보 확대 및 내실화로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정책과제가 주로 해당됨. 공무원·청소년·대학생·시민대상의 노동교육, 노동자 권리구제체계 강화, 취약노동자 실태조사에 의한 정책과제 도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의 조사 및 홍보, 홍보매체를 활용한 인식개선 등이 주요내용임
- 두 번째 과제는 적극적 취약계층 보호로 여성, 감정노동자, 어르신, 아르바이트, 장애인, 외국인, 화물운수종사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도심형 제조업 등 주요 취약계층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담고 있음
- 세 번째 핵심과제는 고용안정 강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며, 네 번째 과제는 적정임금 보장으로 생활임금제 적용 정책임
- 다섯 번째 과제는 삶의 질 개선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관리센터 운영,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여섯 번째 과제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주로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문제와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사업임
- 일곱 번째 과제는 노사상호존중으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정책이며, 여덟 번째 과제는 민관거버넌스 구축으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과 포럼 개최 등임
- 아홉 번째는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 교육청 등과의 정책 네트워크 강화이며, 열 번째는 노동존중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그리고 열한 번째는 노동정책 주진을 위한 노동행정 조직 강화임

<표 2-4> 2015년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11대 핵심과제

11대 핵심과제	주요내용
<p>① 노동교육, 상담 모니터링, 홍보 확대 및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공무원 대상 노동존중 마인드 및 실무능력 향상교육 대폭확대 - 청소년 대학생 시민대상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확대 - 상담형 권리구제체계 강화를 통한 노동권의 보호 -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근로실태(인식) 조사 및 홍보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근로자 사용자 근로인식 개선
<p>② 적극적인 취약계층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모색 -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과 MOU 체결('14년 9개→'19년까지 59개 기업) - 일가정 양립 기업지원 및 컨설팅(매년 400건 이상) - 맞벌이가정 등 아이돌보미 신규양성('14년 2,300명→'19년까지 4,300명으로 확대) -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확충(1개→4개소)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배치 운영(노동권익센터 등 5개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개선 - 사업장대상 외국인근로자 인식개선 교육('19년까지 100개업체) 및 -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회사 평가 및 인증제 도입시행('15년~) - 화물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운영 - 아파트 경비종사자 처우개선(관리규약준칙 보완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매년 100개소) - 근로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확대(우리동네 음악회, 천원의 행복)
<p>③ 고용안정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지속업무 종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병행을 통한 효과 증대
<p>④ 적정임금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개발 - '15년 생활임금 6,687원(최저임금대비 120%) - 서울형 생활임금제 확산('15년 420명→'19년 1,400명)
<p>⑤ 삶의 질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및 시범 도입 운영 - 임금 삭감 등 근로자 불이익 없는 단축모델 개발 - 전담조직(시간관리센터) 및 운영시스템 구축 검토 -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마련
<p>⑥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발주공사장 대상 근로자 관리자 대상 전문심리상담 -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 공공부문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및 시설안전 개선
<p>⑦ 노사상호존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형 노사관계모델 개발 시범도입 후 성과에 따라 확산 검토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p>⑧ 민관거버넌스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권익센터 광역기능 및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가칭)서울노동포럼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매년 4월)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정례화(분기별 1회)
<p>⑨ 정책 네트워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25개 자치구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지원 - 중앙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와의 협업체계 구축 - 市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력

11대 핵심과제	주요내용
Ⅳ 노동존중 인식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보호를 위한 서울형 노동종합지침서 마련 - 책자외 모바일 앱·웹을 활용한 시민 접근성 및 활용도 증대 - 취약계층별 노동권리수첩 별권 제작 - (가칭)서울노동종합포털 구축 추진
Ⅴ 노동정책 추진 행정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정책 추진조직 강화 - 25개 자치구에 노동전담부서(팀단위 이상) 신설 권고 - 노동정책 추진 이행점검 및 평가체계 구축 - 노동정책 추진 모니터링 체제 확립 - 미래지향적 노동의제 발굴·추진

3. 2016년 노동존중특별시 1단계 발전계획 및 노동혁신대책

- 2016년 노동존중특별시 1단계 발전계획에서는 2015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노동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7대 약속 24개 핵심과제를 발표함
 -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의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으로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노동존중의 행정문화 확산을 통한 노사화합 강화, 해외 및 국내 벤치마킹으로 노동정책의 성과 확산 계기 마련 등을 들고 있음
 - 향후 개선과제로는 체계적·주기적 점검 체계 구축에 의한 성과 관리, 민간으로 서울형 노동정책의 확산, 성과 제고를 위한 내·외부 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제시함

- 성과 평가에 기반하여 향후 중점 추진 방향으로 ① 차별화된 서울형 정책 추진(노동권리보호관, 마을노무사 제도 등), ② 체감형 정책 확대(이동노동자쉼터, 감정노동자 보호 등), ③ 서울시 선도사업 민산화산(생활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④ 상생과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⑤ 성과창출을 위한 집중적·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함

- 2016년 계획에서는 7대 약속 24개 핵심과제와 31개 기타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 번째 약속은 노동권의 침해 제로로, 노동권의 침해 예방부터 권리구제까지 윈스톱 지원을 위한 6개 핵심과제를 제안함. 권익침해 권리구제를 위해

-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노무사를 보호관으로 위촉함
- 두 번째 약속은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 7개를 제시함
 - 세 번째 약속은 생활임금 확대 적용으로, 공공부문 민간위탁 및 용역노동자 적용과 민간기업 확산 등 2개 핵심과제를 제안함
 - 네 번째 약속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완 료와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을 핵심과제로 함
 - 다섯 번째 약속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도입과 모델 확산 과제를 제시함
 - 여섯 번째 약속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동자 30인 이상 투자·출연기관 15 곳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일곱 번째 약속은 노동정책 네트워크 구축으로, 노동권익센터 재단화,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대,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캠페인 등 4개가 핵심과제임

<표 2-5> 2016년 노동존중특별시 1단계 발전계획

7대 약속	24개 핵심과제
노동권익 침해 제로	① 노동권리보호관 신설 ② 시민명예노동옹호부즈만 운영 ③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운영 ④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확대 운영 ⑤ 열린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 ⑥ 노동인식 개선 홍보
노동 사각지대 해소	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및 확충 ②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및 확충 ③ 외국인근로자 지원 ④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⑤ 민간위탁종사자 고용안정 ⑥ 용역근로자 노동조건 개선 ⑦ 청소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생활임금 확대 적용	① 공공부문 2단계 적용 ② 민간기업으로 생활임금 적용 확산
비정규직 정규직화	① 비정규직 정규직화 1단계 완료 ②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
노동시간 단축	①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 도입 ② 포럼개최 등 노동시간 단축 모델 확산
노동이사제 도입	①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정책네트워크 구축	① 노동권익센터 운영 및 재단화 추진 ②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 ③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④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일터 캠페인 추진

- 2016년 4월 노동존중특별시 1단계 발전계획 발표 이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발생을 계기로 그 해 8월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발표함.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업무는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3% 이하로 낮추며, 비정규직 채용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힘

-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안정에 초점이었다면, 이후 2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차별해소, 민산으로의 확산에 집중하는 계획임
- 정규직과 전환자간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며, 공정한 승진시스템을 구축하여 승진기회를 보장하고, 차별적인 후생복지제도도 개선하는 과제를 제시함
- 또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구형장비의 자동화장비로 교체, 작업중지권 보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의 안전보건 사업도 포함함

<표 2-6> 2016년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

분야	추진과제	
1. 양극화된 노동구조 타파	① 상시지속 +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 추진 ② 민간위탁분야 정규직화 확대 ③ 비정규직 채용 3대 원칙(단기성·예외성·최소성) 준수	
2. 노동 불평등과 차별 철폐	정규직·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④ 자존감을 해치는 인사관리분야 차별 해소 ⑤ 능력과 무관, 배제되는 승진분야 차별 해소 ⑥ 불평등한 임금분야 차별 해소 ⑦ 기본적인 후생복지분야 차별 해소
	⑧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3. 노동자 생명안전 최우선	⑨ 노동현장 안전체계 구축 ⑩ 휴식권 등 노동자 건강권 보장 ⑪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 참여 안전 관리 도입	
4. 인간다운 노동조건 보장	⑫ 적정 근로형태·시간 보장 ⑬ 생활임금 확대 및 내실화 ⑭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건강한 사업장 조성 ⑮ (가칭)노동인권조사관 운영	
5. 대등한 상생문화 정착	⑯ 노사간 소통 활성화 ⑰ 견제와 균형의 노사관계 정립 ⑱ 노동감수성 제고를 위한 노동교육 확대 및 인식제고	

4. 2017년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

- 2017년에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2단계 발전계획을 발표함. 7대 핵심과제와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 첫 번째 핵심과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단계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을 전면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하는 계획임. 정규직과 유사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

으로 편입하고 이질적 업무는 별도 직군·직렬을 신설하여 정원내로 통합하겠다고 밝힘

- 두 번째 핵심과제는 생활임금제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진입을 목표로 연차별로 인상하는 과제를 제시함. 또한 서울시 투자회사의 자회사와 뉴딜일자리 참여자에게까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함
- 세 번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으로, 의무 도입기관 16개 기관 모두 노동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중앙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에 따라 전국적 확산을 모색하기로 함
- 네 번째 핵심과제는 노동권의 상징시설 설립 및 노동존중의 가치 확산으로 전태일기념관을 조성하고, 지역단위 노동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대 계획을 제시함
- 다섯 번째는 노동권보호 강화로, 공공부문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조사관 신설, 노동상담 수요 증대에 따라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 2배 확대, 민간부문 노사갈등 조정·중재 등의 사업이 포함됨
- 여섯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과제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수립·제시하겠다고 밝힘
- 마지막 일곱 번째 핵심과제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로, 특히 감정노동자와 10대 취약노동자 보호체계 구축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함

<표 2-7> 2017년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면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비율 지속 감축 및 확산 • 직군통합 등 완전한 정규직화 추진
2019년 생활임금 1만원시대 개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까지 공공부문 적용 완료 • 2019년 생활임금 1만원대 수준으로 인상
노동이사제 전면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이사제 제도 정착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전국적 확산
노동권의 성장시설 건립 등 노동존중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전태일노동복합시설 조성 • 지역별 노동복지전달체계 강화 •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 국내외 확산
노동조사관 신설 등 노동권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권의 침해 구제체계 강화 • 노동교육 확대 및 전문화 • 노사갈등 조정·중재 기능 신설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노동시간 단축 추진으로 일자리 700개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료원·서울신용보증재단 시범사업 • 2018년 전 산하기관 노동시간 단축 추진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노동자 보호 종합계획 추진 • 10대 주요 취약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5. 2018년 서울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제278회 임시회)

- 2018년은 제7회 지방선거 실시로 별도의 서울시 노동정책 발표는 없었음. 2018년 3월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노동정책 추진과제를 확인할 수 있음
 - 주요과제로 6개 과제를 시의회에 보고하였는데,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산, 전태일기념관 개관 준비,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활성화, 노동단체 지원,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 등이었음
 - 이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표 2-8> 시민의 삶을 바꾸는 노동존중 구현

주요과제	주요내용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 감정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권익구제 추진 및 노동환경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산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지속 추진
노동존중문화의 상징 「전태일 기념관」 개관준비	노동운동사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고 시민의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시설로서의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조성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활성화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활성화 추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등 근로복지 향상 및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복지 기관·시설 운영 및 노동단체 지원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	노동상담 및 노무컨설팅, 근로기준 확보 등 전문적·포괄적인 노동권익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기본권 보장

6. 2019년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 2019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방향과 노동분야 7대 과제를 제시함
- 먼저 정책방향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중앙정부와 임금체불 조사권 병행을 통한 임금체불 제로화, 업무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서울형 노동안전체계 구축 및 현장중심의 노동안전 조치 강화, 그리고 취약노동자의 노동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의 질 제고를 제시함
- 정책방향에 따른 7대 핵심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함
 - 첫 번째는 노동자종합지원 센터 설치·운영으로, 1개 자치구에 1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자치구간 노동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중심으로 노동권익 보호 연결망을 구축하여 유기적 사업추진을 계획함
 - 두 번째는 ILO국제기준에 맞는 노조 설립지원으로, 노조 설립 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위한 중앙정부 관련법 개정 건의, 노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 흥동 사업 등을 제시함
 - 세 번째는 (가칭) 서울시 노동사회위원회 설치로, 다양한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설치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과제를 제시함
 - 네 번째는 체불임금 제로도시 조성으로, 노동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금체불사건을 서울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함. 임금체불 조사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임
 - 다섯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과제로, 노동시간 단축 2단계 모델 발굴 및 확산, 시내버스 장시간 노동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시설 3교대제 개편으로 사회복지사 일자리 창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제시함
 - 여섯 번째는,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강화로, 노동안전 전담조직 설치 및 노동안전 거버넌스 구성·운영, 현장에 맞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 서울형 노동안전보장 권리 민간부문 확산 추진 등의 사업을 제시함
 - 마지막 일곱 번째 과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특성화고 졸업생 등의 노동

권익 보호 강화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문화 확산, 소규모 사업장 노무컨설팅으로 좋은 일자리 확대, 특성화고 졸업생 전담 상담 창구 마련 등의 사업이 포함됨

<표 2-9>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과제	추진방향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확대) 단계적 확충을 통해 1개 자치구-1개 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대상 수요 조사를 통해 복지 수요 파악 및 준비 정도에 따라 우선 설치 · 전 자치구 설립 전에는 센터 이용 대상이 해당구민에 한정되지 않도록 유도 ○ (기능 심화) 서울노동권익센터 중심의 노동권익 보호 연결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간 노동복지센터 명칭 일원화(가칭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센터 주요 필수사무와 자치구 실정에 맞는 지역 수요 대응형 서비스 병행 제공 ·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노동안전보건 사업 실시
ILO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조합 설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노무상담 및 기초공간 제공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한 노동관련 법률 상담 지원 ○ 노동조합 인식개선을 위한 대 시민 홍보 활동 전개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서울특별시 노동사회위원회(가칭)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노동자층 참여 대화 기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노동자와 지역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마련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서울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확대운영 개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설치 운영(사무국 및 전문위원 인력 배치)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구분 운영 : 공공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심으로 한 기존 모델협의회 확대·운영, 민간은 업종별위원회, 의제별위원회 등 워커라운드 신설·운영
체불임금 Zero 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체불조사권 지방병행으로 근로감독관 부족문제 해결 및 임금체불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서울시 체불임금 조사·확인을 통한 임금채권보장기금 지급방안 마련 ○ 신속한 임금체불 조사 및 해결을 위한 임금체불신고센터 설치·운영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업무 감량을 위한 업무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 재택근무·유연근무 등 재량적 근무가 가능한 특정 유형 노동자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유도 및 시행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복지·보육 등 공공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안전 전담조직과 거버넌스 구축으로 사고사망인율 감축 대책 추진 ○ 현장에 맞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산업분야별 실태조사 실시 ○ 시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부터 노동자의 안전권리를 보장하여 서울형 노동안전 보장권리 민간부문 확산 추진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특성화고 졸업생 등 노동권익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조성) 취약계층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구축 ○ (사업장)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환경 개선 ○ (노동자) 단계별 권리구제 지원과 노동인권인식 제고로 노동권익 증진

Ⅲ. 서울시 추진 노동정책 세부과제 검토

1. 개요

- 서울시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 노동정책은 매우 방대하고 세부적임(주진우·이정용, 2015). 1차 기본계획의 세부과제는 61개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발표된 노동정책 과제도 매우 다양함. 2016년 1단계 발전계획의 핵심과제는 24개, 2016년 노동혁신대책의 과제는 18개, 2017년 2단계 발전계획의 핵심과제는 7개, 민선 7기 노동분야 핵심과제는 7개 등으로 2015년 이후 발표된 단위과제가 100개가 넘음. 동일·유사한 과제를 묶더라도 서울시는 그동안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노동정책 사업을 추진해옴

- 서울시 추진 노동정책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이유는 노동정책 주무부서 사업 외에 타 부서 사업이지만 노동과 연계된 사업도 세부과제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여성정책과의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 사업이라든지,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개선 사업 등이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세부과제에 포함됨. 이처럼 노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부서의 사업들도 추진과제에 포함되면서 노동정책 사업 규모와 양도 많아짐

- 이하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노동정책 세부과제의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2차 노동정책에서의 개선안을 간략히 검토함. 검토대상 세부과제는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세부과제를 포함하여 2016년, 2017년 발표된 핵심과제, 그리고 2019년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임.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체계에 맞춰 이후 발표된 핵심과제들을 재분류하여 검토함. 예를 들어 민선 7기 핵심과제 중 하나인 (가칭)서울시 노동사회위원회 설치는 1차 기본계획의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부문에 포함하여 검토하는 식임

- 또한 세부과제가 매우 방대하여 노동정책 주무부서의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함. 다른 부서 주관 사업은 해당 부서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기에 가급적 본 검토에서는 담당 부서가 관리하되, 노동정책 담당부서와의 협력과제로 제안함

2.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부문 세부과제 검토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부문은 취약계층 대상별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위한 사업들임
- 여성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 추진과제는 이동여성노동자 쉼터 운영, 일·가족양립 체계 운영, 맞벌이 가정 돌봄서비스 지원,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등임
 - 일·가족 양립이나 맞벌이 가정의 돌봄 지원 사업을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과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일·가족 양립과 자녀 돌봄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전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여성의 권익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국미애·임윤옥, 2019)
 - 또한 일·가족양립 컨설팅 사업과 아이돌보미 신규양성 사업은 해당 부서 주관으로 진행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는 여성 노동권의 보호 사업이라기보다는 안전건강 영역의 사업으로 감정노동센터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등 노동권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모색이 필요해 보임
 - 직장맘지원센터는 현재 권역 센터만 있는 상황에서 총괄하는 광역센터를 설치하고, 직장맘의 고충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직장맘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해 보임
- 청(소)년 대상 사업에서는 향후 교육청과 협력을 토대로 모든 고등학교에서 노동교육이 정례화하여 권리의식을 제고하며, 청소년 노동을 활용하는 소규모사업장에 노무컨설팅을 제공하여 청소년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필요
- 외국인 대상 노동정책 과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대상 사업은 해당 사업 주관부서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되, 도심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은 산업안전팀 신설에 따라 노동안전보건종합계획 수립 맞춰 추진

<표 3-1>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부문 세부과제 검토

구분	1차 노동정책 현황	2차 노동정책 개선안	
① 여성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센터 운영	· '14년 개소하였으며 '17년까지 18개소 운영중이었으나 기능상실 등 사유로 2개소는 운영중지, 2018년 현재 16개소 운영 중	· 주관부서(여성정책과)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
	일가족 양립 지원체계 운영	· 일가족양립진단 및 컨설팅	· 여성정책과 주관 진행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 신규양성	· 여성정책과 주관 진행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감정노동보호팀이 2018년에 정식으로 지원센터를 개소했음. · 서울시는 2016년에 감정노동보호조례 제정, '감정노동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2018년에 감정노동보호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여성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이 아닌 안전건강 영역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강화 · 민간기업과의 협약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 확대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및 확충	· 서울시 2012년 직장맘지원센터 개소 · 현재 동부권(광진구), 서남권(금천구), 서북권(은평구) 등 3개 센터 운영 중	· 주관부서(여성정책과)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 · 광역센터 설립 및 기능강화
②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 권리보호센터 운영 · 협약기관 사용자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제작 ·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노동인권 교육 강화 · 사업주 대상 노동법, 노동안전 교육 · 공공매체를 통한 인식개선캠페인 · 노동법 준수 사업장에 대한 인증제
	청소년 알바 및 특성화고 졸업생 등 노동권익 보호 강화	· 취약계층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구축 ·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일자리 알선 및 취업 후 노동권익 증진 확대	
③ 어르신	어르신 복지시설을 활용한 노동 교육홍보강화	· 어르신취업훈련센터 교육 활용 노동 교육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현재 광역센터 1개소, 권역센터 4개소, 쉼터 5개가 운영 중임. 향후 쉼터 3개소 추가 예정. · 2019년부터는 '돌봄가족지원센터' 기능도 수행.	· 주관부서(어르신복지과)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

구분		1차 노동정책 현황	2차 노동정책 개선안
④ 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 장애인복지정책과 주관 진행
⑤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보호(상담, 직업 능력개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센터 상담 · 사업주와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인식 개선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부서(외국인문화과)와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 ·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사업으로 개편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서울건강콜센터 이용 	
⑥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	영세사업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 사회보험 가입근로자수 증가기업 인센티브 특례보증 지원	· 좋은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사회보험 지원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 택시회사 평가 및 인증제 실시(횡수)	· 주관부서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
	화물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 화물운수종사자 휴게시설(개소, 누적)	
	경비종사자 처우개선	· 2018년 전수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경비노동자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대책반 컨설팅 사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계약 근절을 위해 아파트 평가에 항목 추가 · 교대제 개선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 강화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 2017년부터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 기준에 경비,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항목을 포함해서 평가에 반영	· 주관부서(공동주택과)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 작업환경 개선 업체 점검	· 산업안전팀 신설에 따른 사업 구체화
	특화산업지구 근로자 노동상담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카페 운영 · 근로자 교양강좌 및 노동상담 	· 주관부서 진행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운영	· 서초쉼터(대리기사), 2017년 북창쉼터(퀵서비스기사), 합정쉼터(대리기사), 상암쉼터(미디어), 불광쉼터(셔틀버스기사) 등 현재 5개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플랫폼 노동' 증가추세, 이동노동자의 영역과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휴게공간 기능과 함께 종합적 지원기능 역할 필요 · 현재 상담·교육·복지제도 운영비가 예산의 5~7% 수준으로 사업비 확충 필요 · 쉼터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 당사자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쉼터 이용 활성화 및 조직화 기능 수행 필요 	

구분	1차 노동정책 현황	2차 노동정책 개선안
· 용역근로자 노동조건 개선	· 2016년에 '보호지침 준수 가이드라인'을 산하 기관에 배포하고, 이행점검체계를 구축.	· 정책이행 결과에 대한 계량화된 지표를 공개하고 관리해야 함

3.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부문 세부과제 검토

-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부문에서는 실태조사, 교육, 상담, 홍보 분야의 과제들로 구성됨
- 실태조사(모니터링) 사업은 현장의 취약노동자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을 확인하여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향후에는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대상과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담당부서와 체계적 소통채널 구축으로 현실적인 정책과제 도출
- 시민대상 노동교육은 단시간 내 높은 양적 성과를 기록하는 만큼, 향후에는 노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통교안 마련, 강사진 역량 강화와 같은 노동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공무원 노동인권교육은 교육 대상 대비 이수률은 높지 않아 노동인지적 행정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필수교육화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상담, 노동권리보호관의 권리구제, 마을노무사의 컨설팅에 의한 예방 등은 유사·동일한 기능을 하는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에 따라 사업 정비 필요. 2021년 광역 - 권역 - 자치구 센터 완비 계획에 따라 센터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동일한 노동상담 기능 수행. 따라서 예상되는 노동상담 수요를 확인하여 노동상담 체계 정비. 또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마을노무사 모두 소규모사업장 대상 컨설팅 사업을 수행. 서울지역 소규모사업장이 64만개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마을노무사가 역할 분담에 의한 사업 정비 필요
- 홍보사업은 온라인·모바일에 초점을 맞춤 홍보 전략을 수립하며, 서울노동포털 구축으로 서울지역 노동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또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획캠페인으로 단순 홍보가 아닌 참여형 홍보활동 추진

<표 3-2>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부문 세부과제 검토

구분		1차 노동정책 현황	2차 노동정책 개선안
실태조사 (모니터링)	취약직종/산업 선정 실태조사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직종 및 산업을 선정하여 매년 1,000명 실태조사 실시 노동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지속적으로 필요 전문가, 자치구센터,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당해연도 조사대상과 조사방향 설정 광역·권역·자치구센터와 연계한 실태조사 조사대상 선정 - 실태조사 - 정책과제 도출 유기적 연계 해당 직종 및 산업의 담당부서와 체계적 소통채널을 구축으로 현실적인 정책과제 도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노동실태조사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편의점 등 소규모사업장) 현장방문 실태조사 최저임금, 각종수당 등 노동관계법령 인식조사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부터 노동분야를 포함하여 모니터링단 운영(2019년 노동분야 제외) 매년 3,000건 내외의 노동분야 모니터링 실적(근로계약서 체결,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인식 조사, 노동권리 수첩 배부 등 홍보캠페인 진행)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인식 실태 파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예방적 활동을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소개소 연2회 합동점검 및 연4회 자체점검 자치구 직업안정법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거짓구인광고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자치구-노동청이 연계하여 합동점검 실시 현재 직업소개소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권역별로 집체교육 실시(3강 3시간). 강의내용은 직업소개제도, 직업정보관리, 직업상담실무로 노동인권 강의 포함 필요 직업소개소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 구인광고 단속 주체는 지자체이나 사후조치는 고용노동부 소관. 따라서 사후조치 권한 미비로 단속을 완화하기보다 단속과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청과 연계 필요
교육	서울노동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교육을 희망하는 10인 이상 단체 또는 개인에게 찾아가는 노동교육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시간 내 높은 양적 성과 창출 여전히 노동기본권 확인과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동교육 필요 다만, 양적 목표를 완화하고 노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양적 목표를 일정하게 달성한 이후에는 상설 노동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민노동대학 모색
	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청 및 사업소 직원 대상 노동교육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민간 위탁 직원 대상 노동교육 자치구 노무관리 실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시 분청 4급 이상,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민간위탁기관 직원, 자치구 등) 교육대상 대비 실적은 높지 않은 편으로, 특히 시 분청 소속 및 투자·출연기관의 교육

구분	1차 노동정책 현황	2차 노동정책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이 낮음 · 인권교육처럼 필수교육으로 배치하여 시 및 산하 공무원의 노동인지행정 토대 마련 	
대학생 노동기본권 교육	· 시립대 대상 노동교육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소재 56개 대학중 노동교육 강좌 개설 대학은 여전히 적은 편 · 대학 취·창업센터와 협력을 통한 노동교육 시행 · 특성화고 대상 노동교육은 시·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수행중(일반고로 확대 필요). 공동교안 개발 및 강사단 역량 강화 등 지원 및 관리기능 강화. 학생 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대상 노동교육 또는 연수 필요 · 보편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제도개선방안 모색 	
고용지원사업 취업자 및 기업주 교육	· 고용지원사업 취업자 및 사업주 노동관계법 교육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 전문통역사와 함께 건설현장 방문. 외국인노동자 대상 노동교육	· 건설현장의 외국인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이 아닌 이주노동자를 정책대상화하여 노동기본권 강화 필요(교육/상담/권리구제 등)	
노사 대표자 노동권인식 제고를 위한 노사민정야카 데미 운영	· 사용자 및 노조간부 대상 노사관계 법령 및 근로감독 실무사례 등 전문노동교육 실시(2개월 과정, 2기 총 120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주관 하에 한국노총, 경총 소속 간부 대상 교육(1기당 4회, 12시간, 연간 2기) · 지난 3년간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개선방안 모색. 특히 노사민정협의회 주관 사업인 만큼,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성과와 연계한 평가 필요 	
상담	시민명예노동 옴부즈만	· 취약노동자의 노동상담을 위해 자치구당 2명씩 50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센터, 자치구센터와 동일한 상담기능 수행 ·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노동상담 통합콜 운영에 맞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사업 정비 필요
	마을노무사	·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을 위해 자치구당 2명씩 50명 운영	· 자치구센터의 컨설팅 업무와 유사·중복.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역할분담 및 정비
	노동권리보호 관	· 노동권익침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50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50건 내외 권리구제 지원(계획은 연간 80건) · 지속적으로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노동조사관	· 공공부문 노동인권침해 조사 및 개선 권고를 위해 노동조사관 2명 채용	·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 위임사무와 구청장 조사 의뢰사항), 투자·출연기관(자회사 제외), 민간위탁기관 등 대상

구분	1차 노동정책 현황	2차 노동정책 개선안	
		· 단순한 고충처리 및 노사협력 업무가 아닌 사건의 예방 및 처리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확보 필요	
노동-복지 연계 찾아가는 노동상담	· 시민명예노동옹호부즈만과 찾동이 연계하여 노무-복지 연계 상담	· 추진 실적 확인 어려움	
찾아가는 고용노동 종합컨설팅 지원	· 서울산업진흥원 지원시설 입주기업 대상 고용노동 일일컨설팅 상담 · 고용노동 세미나 및 교육개최 · 근로환경 및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 경제진흥본부 및 서울산업진흥원 주관하여 추진	
여성노동권 옹호부즈만 기능 확대	· 직장맘 3고충 해소 원스톱 종합지원	· 주관부서(여성정책과)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	
홍보	노동인식 개선 홍보	·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홍보물 제작 · 서울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 아르바이트 청소년관련 포털, 여성지원기관 등 활용 노동권 리 홍보 캠페인	· 온라인/모바일에 초점을 맞춘 홍보 전략 · 서울노동포털 구축(정책 소개 및 서비스연계) · 시민참여형 기획캠페인 추진
	(가칭)서울노동 권리장전 제작	·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서울노동종합포털 구축	
	노동존중 시민캠페인 실시	· 노동자 근로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포스터, 권리수첩 등) · 노동법 교육 미치 노동상담 권리구제 · 양대노총 활용한 노동존중 시민 캠페인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일터 캠페인 추진	·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사 단체의 캠페인 참여를 통한 실효성 제고 · 기초고용질서 지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서울형 노동모델 국내 확산	· 서울형 노동모델 노동포럼 개최 · 생활임금의 날, 비정규직 박람회, 노동시간 단축포럼 등 시민참여 행사 개최	
	서울형	· 국제기구 및 도시정부와 함께 도시정부협업체 구성	

구분		1차 노동정책 현황	2차 노동정책 개선안
	노동모델 국제 확산	· 서울시 노동정책 성과공유 및 모델확산 전략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선언 발표	

4. 고용의 질 개선 부문 세부과제 검토

- 고용의 질 개선 부문에는 고용구조, 소득, 노동환경 분야의 과제들로 구성됨
- 서울시의 선도적인 노동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 정규직 전환 추가 발굴 및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모색. 정규직 전환의 효과성과 사회적 의미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
- 생활임금제는 민간위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체 등 민간으로 확산 모색. 서울지역 자치구 생활임금 기준(산입범위 등) 통일화 작업 진행
- 취약직종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주관부서 중심으로 추진하며,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중 하나인 체불임금 제로도 시 조성은 사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되,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 체결로 임금체불사건 원스톱처리시스템 구축
- 노동시간 단축은 서울시 민간위탁 주4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이후 확장 모델 검토, 시내버스, 사회복지시설, 보육교사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은 해당부서와 협력사업으로 진행

<표 3-3> 고용의 질 개선 부문 세부과제 검토

구분		1차 노동정책 현황	2차 노동정책 개선안
⑪ 고용구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비율 감축 ·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1만명 이상) · 자치구 및 자치구 산하 기관,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유도 방향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굴 등(시 각 사업소, 산하기관) · 정규직(공무직) 전환 이후 인사제도 : 공무직 직급직책, 승진, 평가 등 수립 · 정부 가이드라인 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 문제 논의 시점,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 문제 유도
	생활임금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임금제 적용('19 1만명 이상), 2017년 투자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적용 확대('17), 생활임금 1만원 진행('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임금 금액 인상에서, 적용대상 확대 방향 검토(2020년 생활임금 10,523원/월 219.9만원) · 민간위탁 시설과 보조금 시설로 확대 검토(민간기업 확대 방안 모색 등)
⑫ 소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부서(복지정책과)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부서(여성권익과)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
	가스검침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시 종사자 생활임금 보장 방안 강구 등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노동 분야 이동 · ⇨ 서울시 차원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및 불안정 노동자 대상 향후 주요 검토 대상
	셔틀버스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교육 등을 통한 셔틀버스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 협의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 확대 (임금체불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e바로」 적용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불임금 제로 사업 연관 사업
	체불임금 제로 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 7기 공약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 7기 체불임금 사업 구체화 방안 모색 필요 : 별도 정책 과제 세부 사업 방안 검토 *지방정부 임금체불 조사권 부여 *체불임금 확인 청구 지원제도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사·고용노동부간 업무협약 체결로 임금체불사건 원스톱 처리
⑬ 근로환경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 5기부터 노동정책 기본계획, 중장기계획 핵심과제 (*시범 사업 : 서울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이행 미흡) · 투출기관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합의 이후 진척 없음(노사 모두 : 비용,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 7기 노동분야 공약 및 과제 : 민간위탁시설 주4일제 시범 사업 대상 파악, 논의, 시범 사업

구분	1차 노동정책 현황	2차 노동정책 개선안
포럼 개최 등 노동시간 단축모델 확산	력, 임금 보전문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교통공사 제외한 투자출연기관 정원 7,342명의 13%인 약 700명 일자리 창출(시범사업 검토 통한 노동시간 단축시 정규직 정원 대비 약 13%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단축 2단계 모델 발굴 및 확산 [일자리 창출] 시내버스 장시간노동 단축 사회복지시설 3교대제 개편 보육교사 휴게시간보장과 노동시간단축 	· 주관부서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
청소근로환경 시설 개선	·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개소)	·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정기적 이행평가 및 지침 제공, 개선사업 추진
직장내 괴롭힘 예방 대책 추진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업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	· 법률 시행(19.7.16) 및 산업안전팀 신설과 맞물려 사업 확대 방안 검토
근로자 권리보호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보호기업 가산점, 권리보호 서약제 운영 · 공공조달 조례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시행(적용건수) · 용역업체 근로자 임금지급 개선제도 실시 	· 용역 및 조달 노동자 보호 및 고용의 질 관련 제고 강화 방안 검토
市 공시장 대상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 노무진단 컨설팅	· 타 부서와 협업 사업 진행
市 전체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 민간위탁 노무관리 주기적 점검 및 노사협의회 활성화 	· 시민명예노동옹호즈만&마을노무사 통합 운영 통해 효과성과 실효성 중심 재편
산재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감성안전 추진	· 건설근로자 심리상담	· 타부서 협업 사업 추진
민간위탁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운영(횟수)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갯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민간위탁 노무관리, 노동환경 ·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검토, 주요 사업장 고용(비정규직 문제), 노사관계 현안 문제 발생 예방, 사후 모니터링

구분	1차 노동정책 현황	2차 노동정책 개선안
자치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 직영, 자치구 휴게시설 점진적 개선 진행, 휴게시설 질적 개선 방향 검토	· 25개 자치구 모두 민간위탁/대행 생 활폐기물 사업 진행(*문재인 정부 3 단계 비정규직 정책 가이드라인 연계 분야, 자치구 협의 진행)
다산콜센터 상담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 재단 전환 이후 노동조건 개선 긍정 적 평가, 현장 요구 헬스키퍼, 심리상 담 등 지원 부족(시민소통 부서와 협 의)	· 주관부서 담당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 공공조달 노무 컨설팅 사업장	· 사업효과성 검토
산재 등 비정규직 건강문제	· 비정규직 건강 및 산재 극복 지원을 위한 건강센터 운영(보건의료정책과 민간위탁 추진 예정)	· 사업이관&협력사업 · 2017년 이후 비정규직 산재·건강 문제 → 녹색병원과 특수고용 무료 검진 사업 확장 검토 (유관 부서 연 계 사업)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 강화	· 민선 7기 공약, 과제	· 체계적 노동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인 프라 구축 · 서울형 단계별 노동안전 대책 마련 · 현장의 노동안전 강화 조치 시행

5.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부문 세부과제 검토

-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부문에서 먼저 노사관계는 서울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재편 및 혁신을 목표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과 회의 정례화, 공공부문 노정교섭 내실화 등을 추진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조직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활동의 제약이 있는 서울지역 노동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여 지원
- 노동이사제는 노동이사의 경영참여 권한 확대와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시설로의 적용 모색
- 1자치구 - 1센터 완비에 따라 광역 - 권역 - 자치구 센터 역할과 기능 재정립

필요.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광역차원의 허브기능과 전략사업 추진, 자치구는 현장 밀착형 노동자 지원 기능, 권역센터는 권역내 노조, 노동단체, 취약노동자 활동 촉진·활성화

<표 3-4>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부문 세부과제 검토

구분	1차 노동정책 현황	2차 노동정책 개선안
⑭ 노사관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노사민정협회의의 기능과 역할, 활동 방향에 대한 근본적 계획수립 및 이행이 요구됨. · 지역단위의 실질적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위상을 재확립해야 함. · 노사민정협회의 사무국 설립을 통한 실행력 확보가 요구됨 · 이를 위해 주요 업종을 선정하여, 해당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 체제의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확립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취약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제별 사회적 대화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정협의회의 질적 강화 · 노사정협의를 통해 서울시 노동시간 단축 모델 도입 및 확산 방안을 구체화하고, 투자출연기관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연대임금전략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시범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이사제의 운영 성과가 사업장을 선정하여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노동이사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 안건 부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인사노무관리와 성과통제 방식의 변화나 조직 구조개혁 등 경영, 인사상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정기 이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영참여 채널을 확립하여 운영해야 함(예: joint

구분	1차 노동정책 현황	2차 노동정책 개선안
		labor management committee, 노사 공동 직무재설계 TF팀 혹은 협의회 등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총 지원사업 · 민주노총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외에 노동단체 지원 가능
공정일터 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지역기반구축사업 공모단체 지원 (노동단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원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단체 및 다양한 노동자 이해대변조직 지원 확대 검토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의무도입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기관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이사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함 ·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형식적인 심의, 의결기구로서 기능하지 않고, 명실상부하게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노동이사의 인건 부의권을 보장하고, 이사회 의제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여 노동이사의 경영참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회 운영 혁신이 필요함 · 민간위탁시설 운영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요구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채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주요 공공부문 업종별(의료, 교육, 돌봄, 운수)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업종 내에서 2단계 서울시 노동정책의 핵심 목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확립, 종속적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민간부문 집단적 노사갈등 조정, 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실적 없음 	
ILO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 설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온 시티(union city)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조합 설립 지원 체계 구축 ·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조 설립이나 가입에 어려움이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지원.

구분	1차 노동정책 현황	2차 노동정책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위한 중앙정부 관련법 개정 건의 · 노조 설립 지원을 위한 기초 공간과 필요한 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⑮ 지역사회 협력</p>	<p style="text-align: center;">노동사회위원회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연구용역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설치를 통해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업종별 협의회와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등 노동인지적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타당하므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노동권익 센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상담, 법률 지원, 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정책 허브 기능에 제약이 있음. ·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간 기능과 역할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상담을 통한 노동자들의 차별 및 권익 구제 지원 사업은 중요하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정책 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도 필요함.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현장밀착형 노동자지원, 교육, 상담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기구이자 정책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노동자종합지 원센터 설치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자치구 1 노동복지센터 설립 목표 하에 노동복지센터 명칭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단일화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중심의 노동권익 보호연결망 구축을 목표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확충 계획을 구체화하고, 우선 설치대상 자치구를 선정하여 센터를 설립 운영해야 함 ·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구 내 노동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현장밀착형 노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전태일노동복 합시설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4월 30일 전태일 기념관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style="text-align: center;">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정책 교류의 기회를 활성화하고, 근로자권익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노동인지적 관점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해야 함. ·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노동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정책 전문가들과의 정책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함

구분		1차 노동정책 현황	2차 노동정책 개선안
	노동정책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노동정책 중 긴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의제 선정 및 추진 방향 모색, 미래지향적 의제 발굴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 · 간담회, 회의, 포럼, 세미나 등을 활용하여 노동정책 유관기관 간 공유와 협력의 기회를 활성화해야 함 · 정책 수립과 의제발굴 단계에서부터 노동단체, 노동정책 기관들, 노동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예:노동원탁회의)
⑩ 행정기반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	· 팀 단위에서 국 단위의 전담조직으로 위상 강화	· 자치구 노동행정 강화 및 시 전 부서의 노동인지적 행정 기반 마련
	미래지향적 관점의 노동의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행을 위한 노동의제 발굴 필요 ·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전통적 노사관계의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계층의 노동권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신규시책 발굴 노력이 필요 ·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격차해소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한 '서울 노동 4.0' 의제 개발이 필요함

IV. 서울시 노동정책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서울시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존 서울시 노동정책,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그리고 새롭게 제안한 신규과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설문조사 대상은 서울시 노동정책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로, 구체적으로 서울시 설립 노동관련 위원회 위원, 노동분야 연구자, 서울시 설립 노동권익기관 상근자, 서울지역 노동조합 상근자, 서울지역 노동단체 소속 활동가였음
- 일반 시민보다는 서울시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와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차 노동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현장에서 노동자와 직접 대면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 설립 노동권익기관 상근자를 설문대상에 포함하여 서울시 노동정책의 실행자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함
- 설문기간은 2019년 11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약 6주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와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함
- 설문조사는 서베이 전문업체인 (주)오감리서치에서 진행하였으며, 6주간 수거된 총 유효부수 181부를 분석함

<표 4-1>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9년 11월 6일~12월 17일 (약 6주)
○ 조사대상 : 서울시 노동정책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1) 서울시 설립 노동관련 위원회 위원 및 연구자 2) 서울지역 노동조합 활동가 3) 서울지역 노동단체 활동가 4) 서울시 설립 노동권익기관 상근자
○ 조사방법 : 서베이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조사 및 이메일 설문지 조사

<표 4-2> 설문대상 과제와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평가	· 4대 정책목표별 세부과제에 대한 인지도, 중요도, 성과 평가(5점 척도) ·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 의견(주관식)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평가	·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에 대한 인지도, 중요도, 추진용이성 평가(5점 척도) ·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 의견
신규제안과제 평가	· 연구진이 새롭게 제안한 과제에 대한 중요도, 추진용이성 평가(5점 척도) · 신규 제안과제 이외에 추가해야 할 과제 제안

2. 응답자 특성

-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181명으로 남성 48.1%, 여성 47.0%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23.8%, 40대 40.9%, 50대 이상 30.4%로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편이었음. 응답자 소속은 서울시 설립 노동권익기관 상근자 40.3%, 서울지역 민간 노동단체 소속 활동가 27.6%, 서울지역 노동조합 소속 11.6%, 서울시 설립 노동관련 위원회 위원이거나 연구자 14.4%였음
- 서울시 설립 노동권익기관 소속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건 서울시 노동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는 당사자이기에, 현장에서 직접 사업 수행시 평가 및 개선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임

<표 4-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수	계
전체		(181)	100.0
성별	남	(87)	48.1
	녀	(85)	47.0
	무응답	(9)	5.0
연령	30대 이하	(43)	23.8
	40대	(74)	40.9
	50대 이상	(55)	30.4
	무응답	(9)	5.0
소속	서울시 설립 노동권익기관	(73)	40.3
	민간 노동단체	(50)	27.6
	노동조합	(21)	11.6
	전문가(위원회 위원, 연구자)	(26)	14.4
	무응답	(11)	6.1

3.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표 4-4> 설문대상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주요 세부과제

정책목표	세부과제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 직장맘 지원(지원센터 운영 등) ·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 특성화고 졸업생 지원 · 어르신 돌봄노동자 지원(지원센터 운영 등) · 외국인 노동자 보호(직업능력개발 등) ·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 도심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 이동노동자쉼터 조성 및 운영 ·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노동분야 실태조사 및 홍보) · 서울노동아카데미(시민 노동교육) · 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 시민명예노동옹호부즈만(노동상담) · 마을노무사(노무관리 컨설팅) · 노동조사관(공공부문 노동인권 침해 조사) ·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제작

정책목표	세부과제
고용의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생활임금제 도입과 확산 · 사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노동시간 단축모델 도입과 확산 ·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 · 민간위탁기관 고용개선(노무진단, 노동조건 개선) · 다산콜센터 처우개선(다산콜재단 설립) · 청소 노동환경 시설 개선 · 노동자 권리보호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 효율적 운영 ·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 ·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과 운영 ·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포럼 등) · 노동정책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지방고용노동청, 교육청) ·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노동정책담당관 설치)

- 2015년에 발표된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은 4대 정책목표, 16개 분야, 61개 단위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주요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인지도, 중요도, 성과를 5점 척도로 평가함
 - 구체적으로 해당 세부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인지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중요도),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성과)에 대해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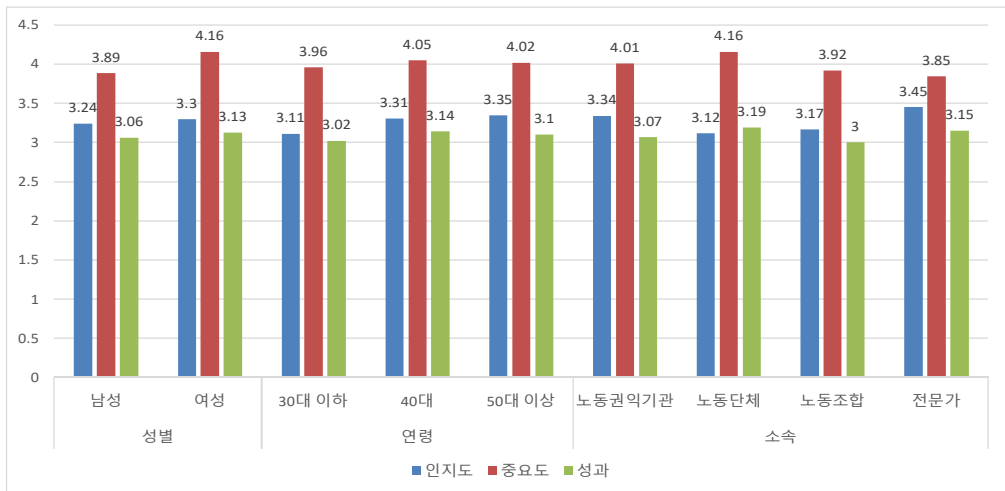
- 전체 평가결과, 인지도는 3.27, 중요도는 4.02, 성과는 3.10으로 나타나,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세부과제가 전반적으로 중요하지만, 성과는 중요도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구체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인지도, 중요도, 성과를 다소 높게 평가함. 또한 연령별로도 30대 이하보다는 40대 이상 응답자의 평가가 긍정적이었음
 - 소속기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인지도 측면에서는 노동권익기관 소속 응답자와 전문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요도 평가는 노동권익기관과 노동단체 소속 활동가가 다소 중요하다고 평가함. 성과에서는 노동단체와 전문가의 평가가 높았음

-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한 노동정책 세부사업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응답자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권익기관 종사자와 전문가였지만, 취약계층노동자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노동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세부과제의 중요도와 성과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점이 특징이라 하겠음

<표 4-5>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주요 세부과제 전체 평가 결과

		인지도	중요도	성과
전체		3.27	4.02	3.10
성별	남성	3.24	3.89	3.06
	여성	3.30	4.16	3.13
연령	30대 이하	3.11	3.96	3.02
	40대	3.31	4.05	3.14
	50대 이상	3.35	4.02	3.10
소속	노동권익기관	3.34	4.01	3.07
	노동단체	3.12	4.16	3.19
	노동조합	3.17	3.92	3.00
	전문가	3.45	3.85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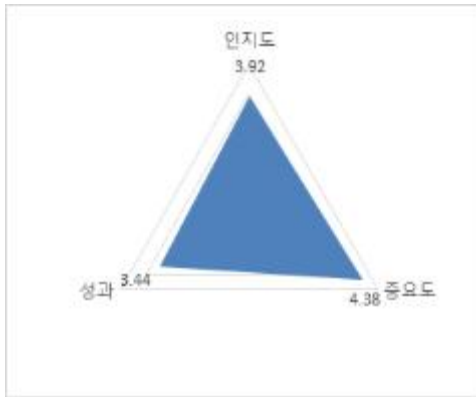
[그림 4-1]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주요 세부과제 전체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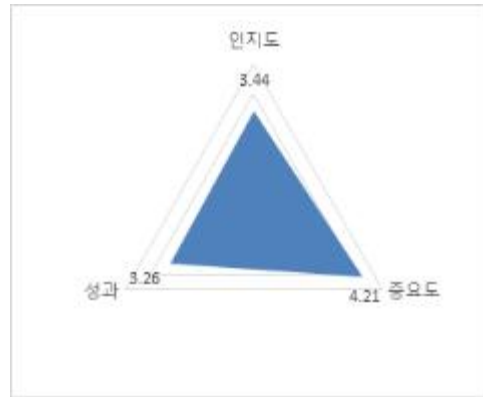
1)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사업 평가 결과

- 정책목표1의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세부사업 9개를 대상으로 인지도, 중요도, 성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요도, 인지도, 성과 순으로 나타남.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부사업에 대해 중요성에 비해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사업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3.96), 감정노동자 권익보호(3.92),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처우개선(3.69), 청소년 및 아르바이트 권리보호(3.52),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3.52), 직장맘 지원(3.44) 등 순으로 보통(3.00) 이상이었음. 이에 반해,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2.75), 외국인노동자 보호(2.47), 도심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2.47) 등 세부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3.00) 미만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해당 사업의 주된 내용을 잘 모르는 편이었음
- 중요도는 9개 사업 모두 보통(3.00) 이상으로 나타나, 인지도는 낮지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함. 특히 감정노동자 권익보호(4.38),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4.24), 직장맘 지원(4.21), 청소년 및 아르바이트 권리보호(4.20),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처우개선(4.17),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4.01) 사업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함
-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3.56), 감정노동자 권익보호(3.44),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3.41), 직장맘 지원(3.26), 청소년 및 아르바이트 권리보호(3.22),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처우개선(3.21) 등 6개 사업은 보통(3.00) 이상으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3개 사업은 2점대로 성과가 낮은 편으로 평가함
- 성과가 보통(3.00) 이하였던 3개 사업은 인지도도 낮았던 사업으로, 인지도가 낮은 사업이 성과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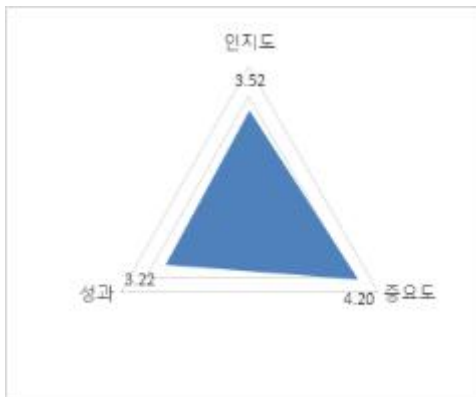
[그림 4-2]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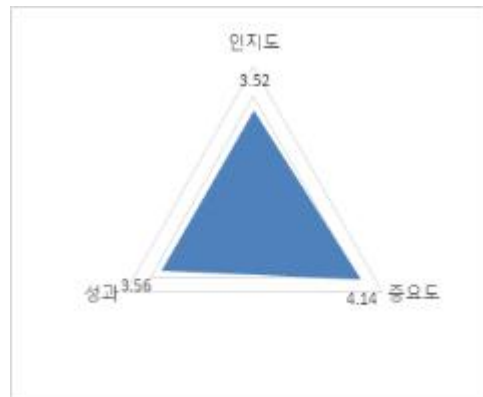
[그림 4-3] 직장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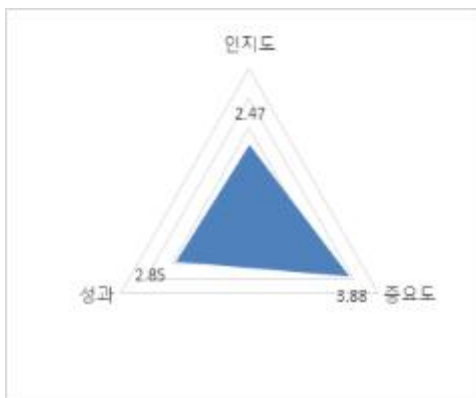
[그림 4-4]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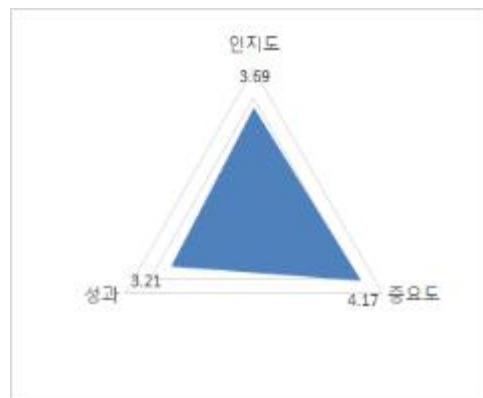
[그림 4-5]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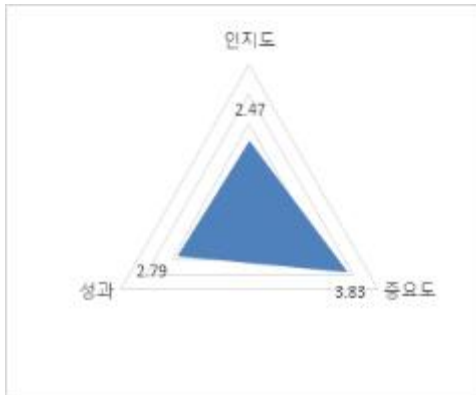
[그림 4-6] 외국인노동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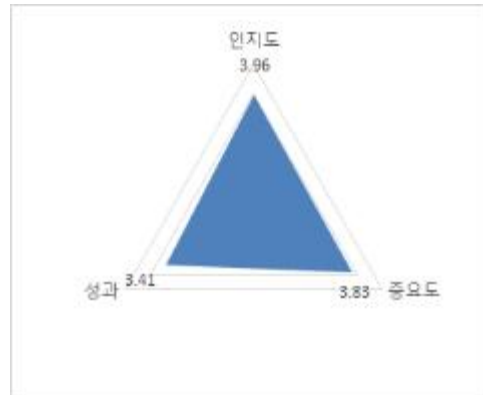
[그림 4-7]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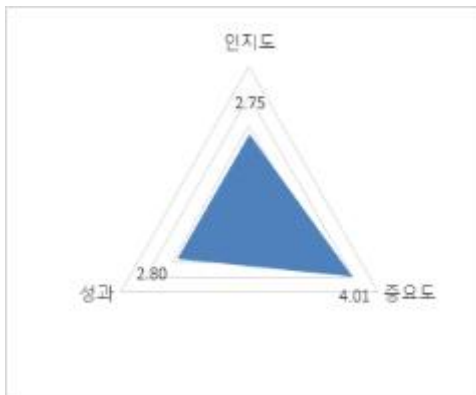
[그림 4-8] 도심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그림 4-9]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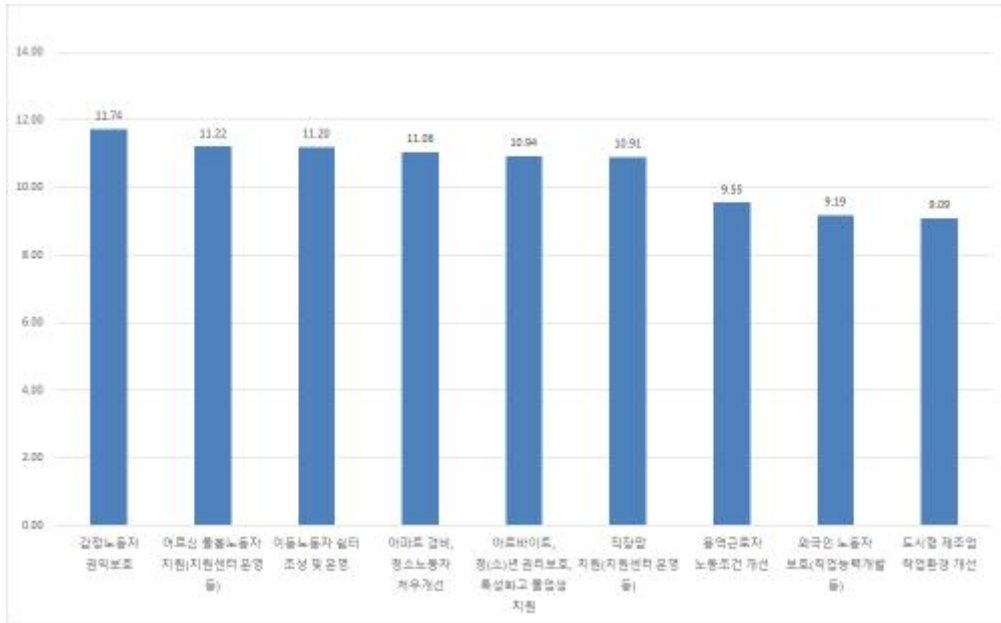


[그림 4-10]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인지도, 중요도, 성과를 종합한 평가 결과를 보면,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11.74로 가장 높았으며,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11.22),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11.20),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처우개선(11.06), 청소년 및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10.94), 직장맘 지원(10.91) 순이었음
-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정책목표에서는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외국인노동자 보호, 도심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등 3개 사업이 상대적으로 인지도, 중요도,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 4-11]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세부사업 종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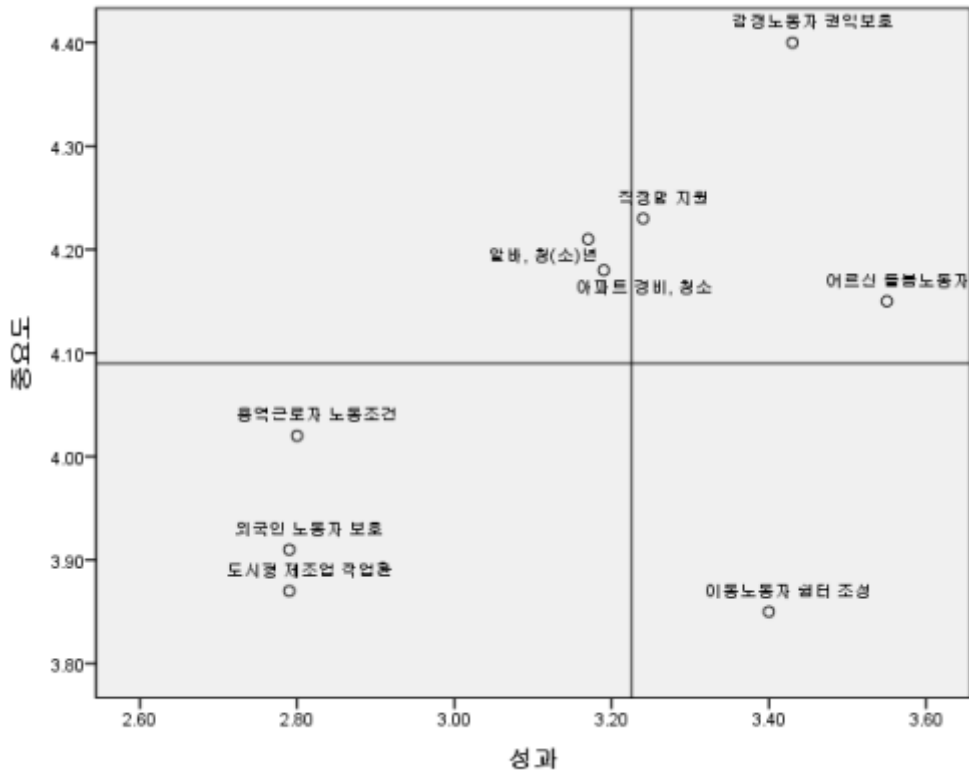


- 향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정책과제의 상대적 중요도와 성과를 동시에 비교·분석하는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실시함
- IPA 분석은 정해진 인력과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과 지양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1970년대부터 마케팅분야에서 시작되어 사용되고 있음(Matzi et al, 2004)
- 정책목표별 중요도와 성과 평균을 기준으로 4분면의 매트릭스를 형성하고, 1사분면은 중요도와 성과가 상대적으로 모두 높아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봄. 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지만 성과는 낮아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해당함. 3사분면은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낮아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4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지만 성과는 높아 과잉노력영역으로 봄 (Martilla and James; 1977)

<표 4-6>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중요도 ↑ ↓ 중요도	제2사분면	제1사분면		
	집중노력영역(Concentrate here) 높은 중요도 - 낮은 성과	지속유지영역(Keep up the good work) 높은 중요도 - 높은 성과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점진개선영역(Low Priority) 낮은 중요도 - 낮은 성과	과잉노력영역(Possible Overkill) 낮은 중요도 - 높은 성과		
	낮음 ←	성과 →	→	높음

[그림 4-12]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사업 IPA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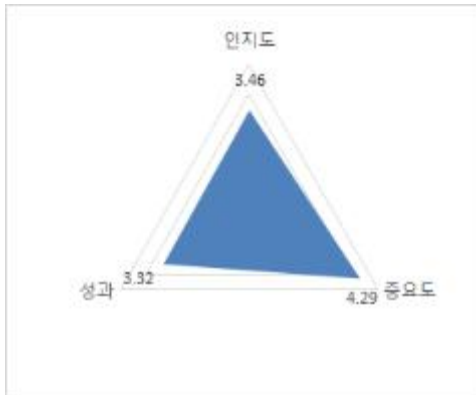
○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에 대한 IPA 분석 결과,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직장맘 지원,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 등 3개 사업은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익보호,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사업은 중요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으로 나타남.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 도심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은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은 중요도에 비해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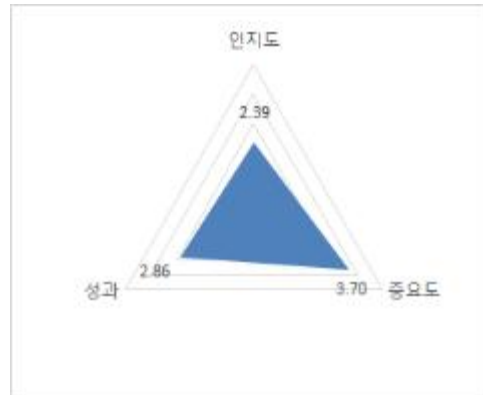
2)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사업 평가 결과

- 정책목표2의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세부사업 9개를 대상으로 인지도, 중요도, 성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요도, 인지도, 성과 순으로 나타남.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해 중요성에 비해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
- 인지도가 높은 사업으로는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제작(3.86), 서울노동아카데미(3.81),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3.48), 취약계층노동자 실태조사(3.46), 노동권리보호관(3.36), 마을노무사(3.26) 순이었음. 공무원 노동인권교육(2.92), 노동조사관 운영(2.67),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2.39) 등 3개 사업은 보통(3.00) 미만으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중요도는 9개 사업 모두 보통(3.00) 이상으로 나타나, 인지도에 비해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함. 취약계층노동자 실태조사(4.29), 공무원 노동인권교육(4.09), 노동권리보호관(4.09), 서울노동아카데미(4.08), 노동조사관(3.94) 사업 순으로 사업의 중요도를 평가함
-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서울노동아카데미(3.47),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제작(3.43), 노동권리보호관(3.36), 취약계층노동자 실태조사(3.32),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3.14) 사업이 보통(3.00) 이상이었으며,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마을노무사(2.95),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2.86), 공무원 노동인권교육(2.82), 노동조사관(2.77) 사업의 성과가 낮은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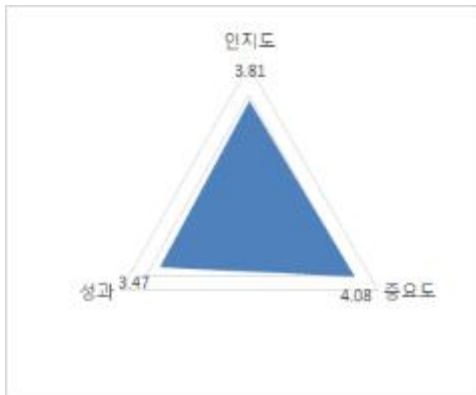
[그림 4-13] 취약계층노동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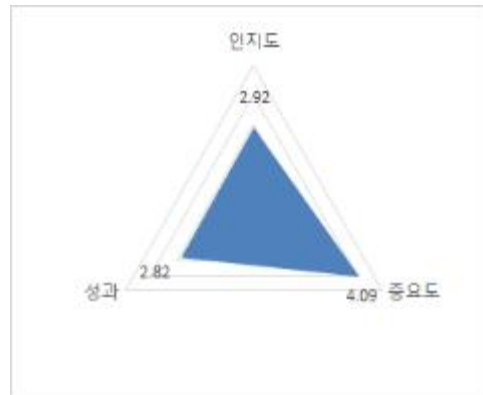
[그림 4-14]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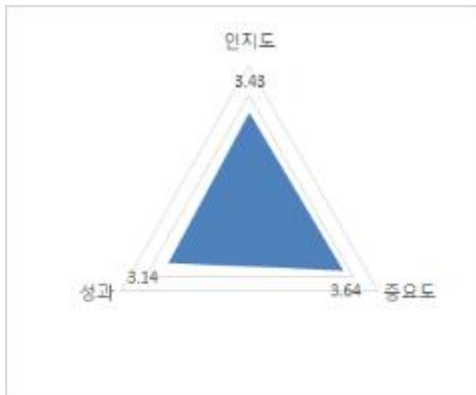
[그림 4-15] 서울노동자카데미(서울시민 노동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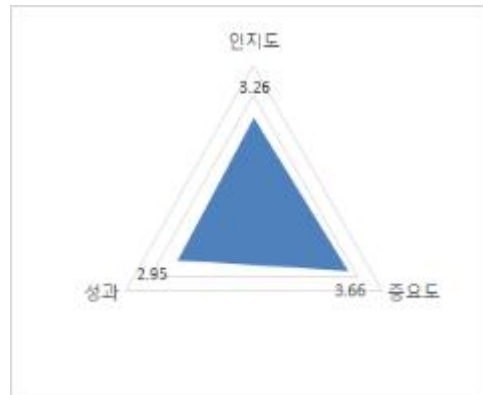
[그림 4-16] 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노동인권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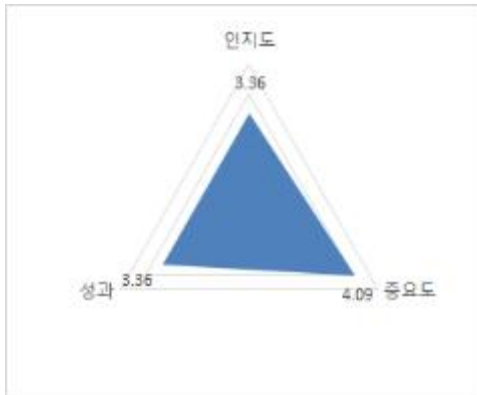
[그림 4-17]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노동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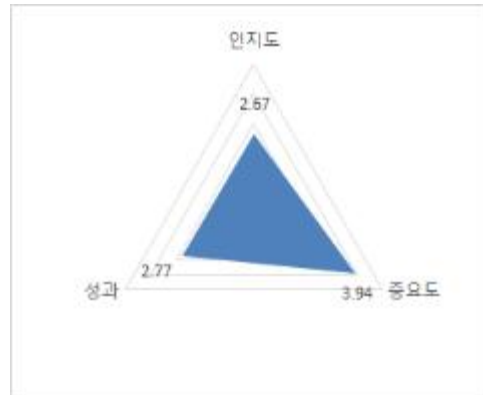
[그림 4-18] 마을노무사(노무관리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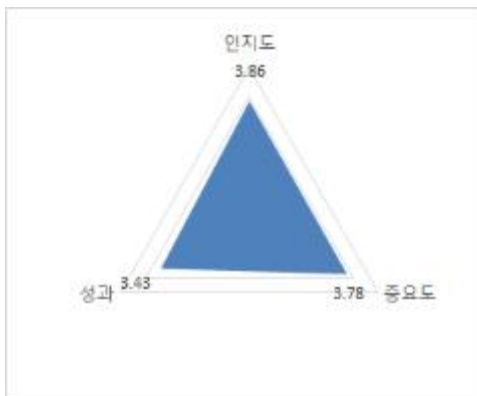
[그림 4-19] 노동권리보호관(권리구제)



[그림 4-20] 노동조사관(공공부문 노동인권침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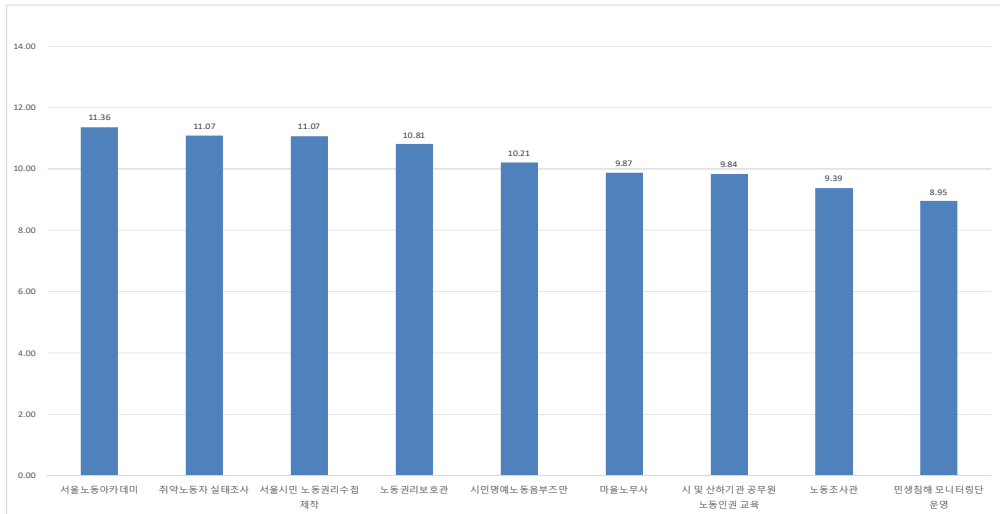


[그림 4-21]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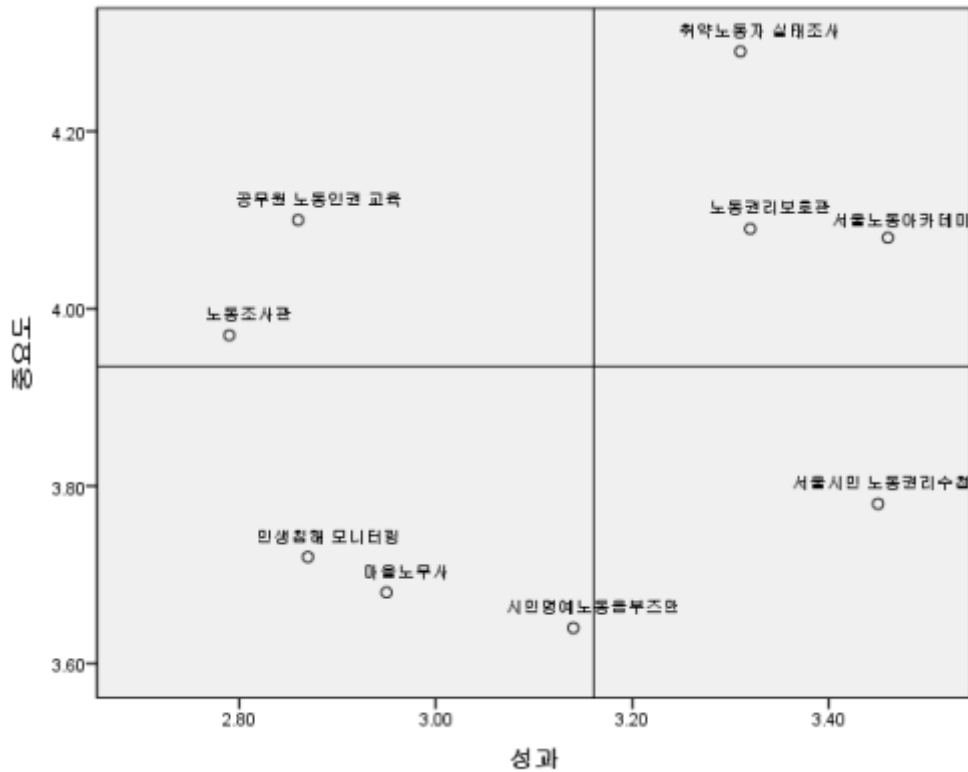


- 인지도, 중요도, 성과를 종합한 평가 결과에서는 서울노동아카데미(11.36), 취약 계층노동자 실태조사(11.07),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제작(11.07), 노동권리보호관(10.81),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10.21) 등의 순으로 높았음. 인지도와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4개 사업(마을노무사, 공무원 노동인권교육, 노동조사관,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의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편이었음

[그림 4-22]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세부사업 종합 결과



[그림 4-23]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사업 IPA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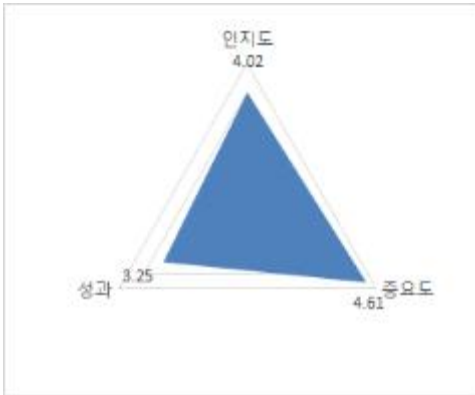
-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았던 사업은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노동권리보호관, 서울노동아카데미 3개 사업이었으며, 중요도는 높지만 성과는 이에 미치지 못한 사업은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조사관 사업이었음. 민생침해모니터링단 운영, 마을노무사 운영, 시민 명예노동음부즈만 운영은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성과가 낮은 사업으로 평가됨.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은 중요도는 낮지만 성과는 큰 것으로 평가된 사업이었음

3) 고용의 질 개선 사업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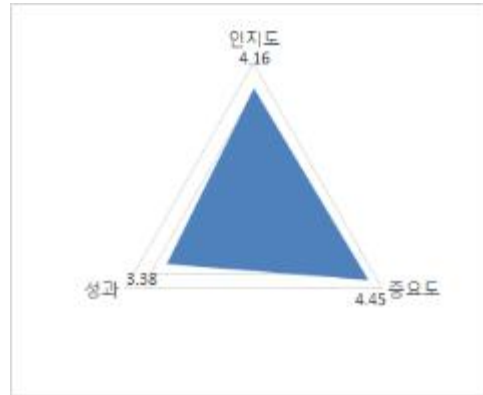
- 정책목표3의 고용의 질 개선 세부사업 9개를 대상으로 인지도, 중요도, 성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요도, 인지도, 성과 순으로 나타남.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해 중요성에 비해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
- 인지도가 높은 사업으로는 생활임금제 도입과 확산(4.16), 비정규직의 정규직화(4.02), 다산콜센터 처우개선(3.55),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3.52), 민간위탁기관 고용개선(3.45), 사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3.19), 노동시간 단축모델 도입과 확산(3.13), 청소 노동환경 시설 개선(3.05) 사업이 보통(3.00) 이상이었으며, 노동자 권리보호 공공조달시스템 구축 사업만 2.32로 낮게 나타남
- 중요도는 인지도가 가장 낮았던 노동자 권리보호 공공조달시스템 구축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사업 모두 4.00 이상으로 매우 높았음
- 하지만, 중요도에 비해 성과는 낮게 평가된 사업이 많았는데,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시설 개선(2.97),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2.87), 민간위탁기관 고용개선(2.69), 노동시간 단축모델 도입과 확산(2.58), 노동자 권리보호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2.75) 사업 등이 보통(3.00) 미만의 성과로 나타남
- 다른 정책목표보다 중요도와 성과 간 차이가 큰 사업이 다수여서, 향후 사업 추진시 중요도 만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지도, 중요도, 성과를 종합한 평가 결과에서는 생활임금제 도입과 확산(11.99), 비정규직의 정규직화(11.88), 다산콜센터 처우개선(11.11), 직장내 괴롭힘 예방 대책 추진(10.70), 사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10.5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자 권리보호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은 8.80으로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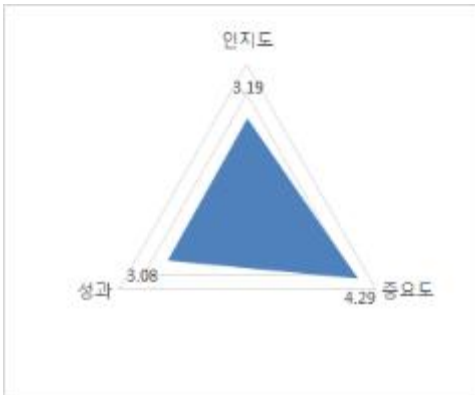
[그림 4-2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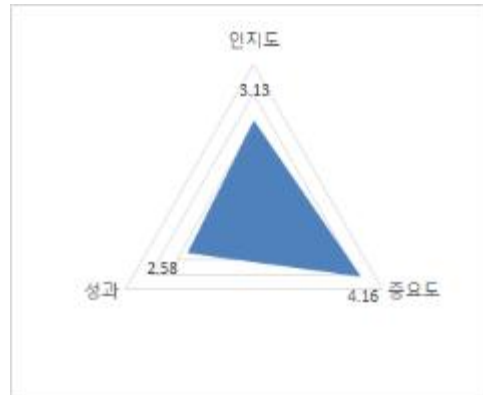
[그림 4-25] 생활임금제 도입과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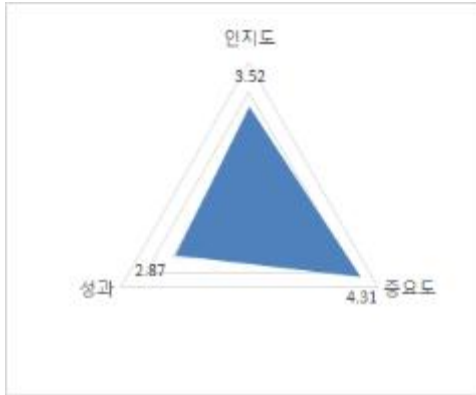
[그림 4-26] 사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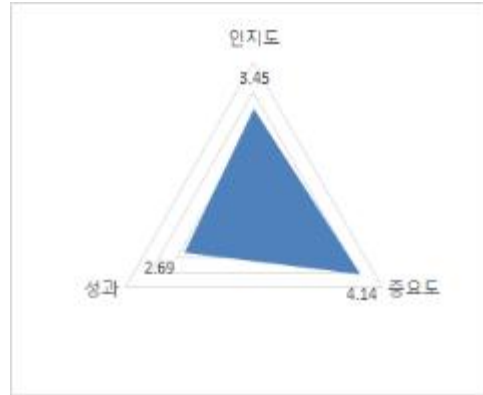
[그림 4-27] 노동시간 단축모델 도입과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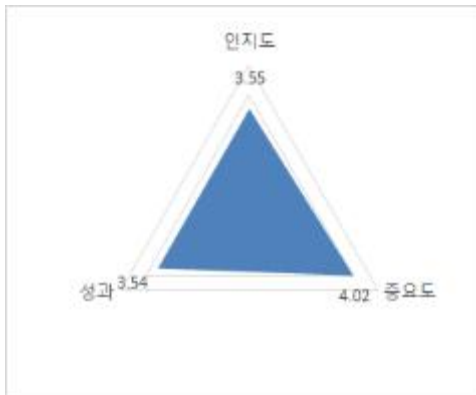
[그림 4-28]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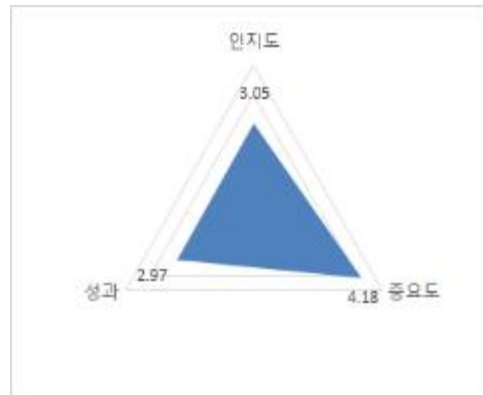
[그림 4-29] 민간위탁기관 고용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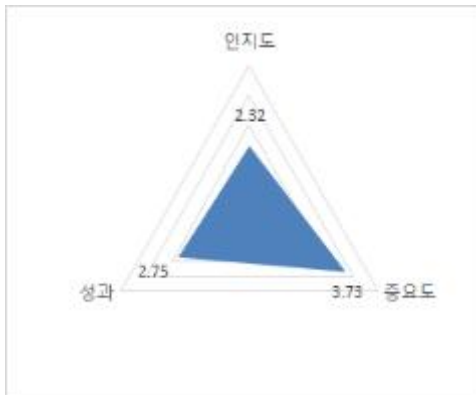
[그림 4-30] 다산콜센터 처우개선



[그림 4-31] 청소 노동환경 시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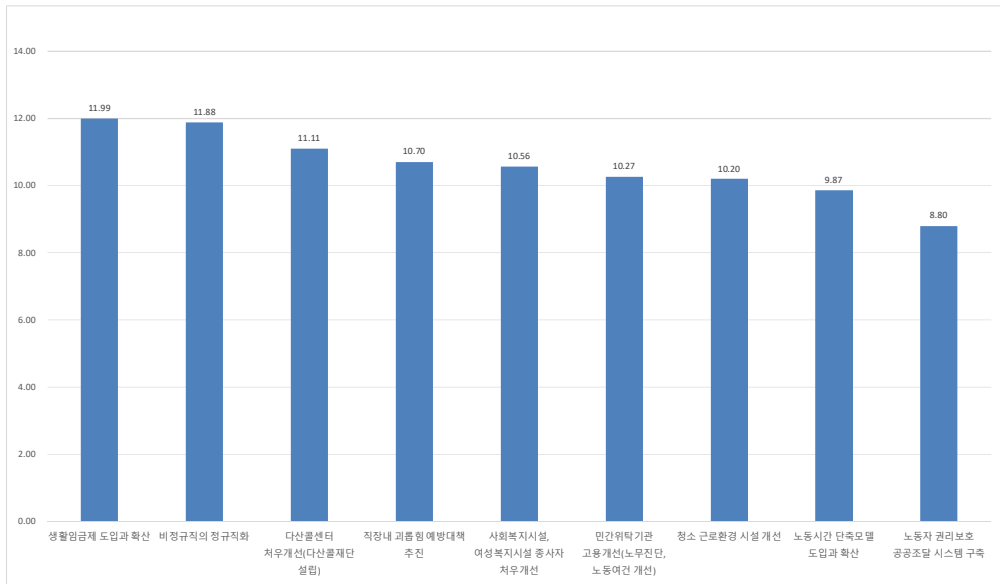


[그림 4-32] 노동자 권리보호 공공조달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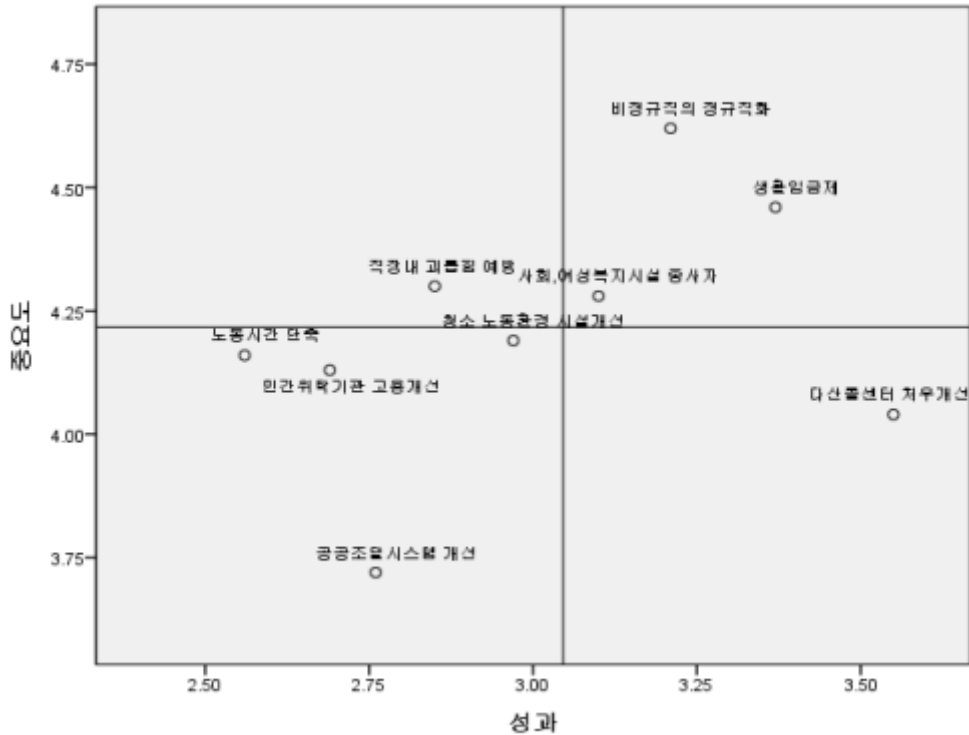
- 인지도, 중요도, 성과를 종합한 평가 결과를 보면, 생활임금제 도입과 확산이 11.99로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11.88), 다산콜센터 처우개선(11.11),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10.70)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이 가장 낮은 8.80으로 나타나 평균이 보통(3.00)에 미치지 못하였음

[그림 4-33] 고용의 질 개선 세부사업 종합 결과



- 고용의 질 개선 사업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았던 사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생활임금제 도입·확산,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었으며, 중요도는 높지만 성과는 이에 미치지 못한 사업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 사업이었음. 노동시간 단축과 민간위탁기관 고용개선, 공공조달시스템 개선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성과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다산콜센터 처우개선 사업은 중요도는 낮지만 성과는 큰 것으로 평가된 사업이었음

[그림 4-34] 고용의 질 개선 사업 IPA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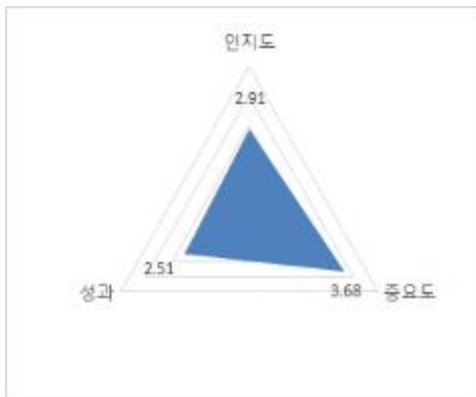


4)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사업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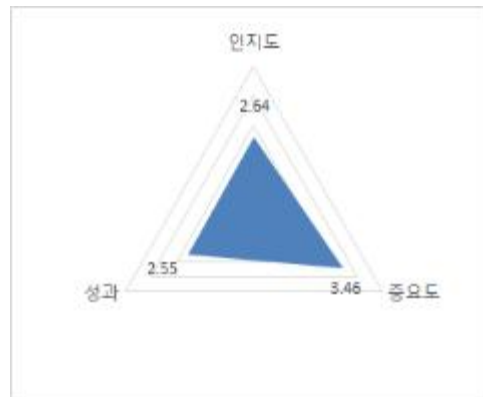
- 정책목표4의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세부사업 8개를 대상으로 인지도, 중요도, 성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요도, 인지도, 성과 순으로 나타남.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해 중요성에 비해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
- 먼저 인지도에서 보통(3.00) 이상 사업은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과 운영(3.83),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3.56),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3.19),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3.16) 등 4개 사업이었으며, 노동정책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강화(2.96), 노동이사제 도입(2.92),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2.91), 서울 노사정보협의회 효율적 운영(2.64) 사업은 2점대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중요도는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4.12),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과 운영(4.10),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4.05) 등 3개 사업이 4.00 이상으로 높았으며, 나머지 5개 사업은 3점대로 나타남
- 성과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과 운영(3.68),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3.17) 사업만이 보통(3.00) 이상이였으며, 나머지 6개 사업은 성과가 2점대로 낮게 평가됨
- 인지도, 중요도, 성과를 종합한 평가 결과에서는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과 운영(11.61),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10.51),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10.49) 등의 사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9.10),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 효율적 운영(8.66)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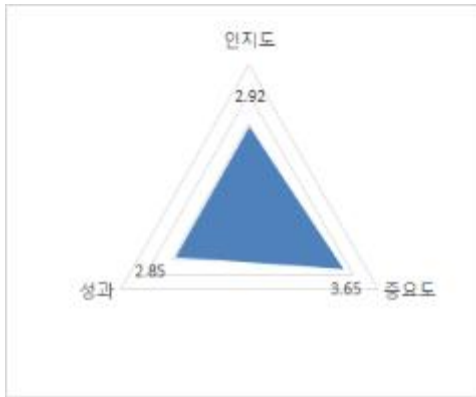
[그림 4-35]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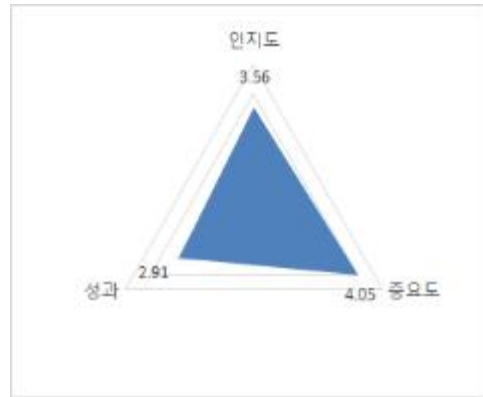
[그림 4-36] 서울 노사정모델협의회 효율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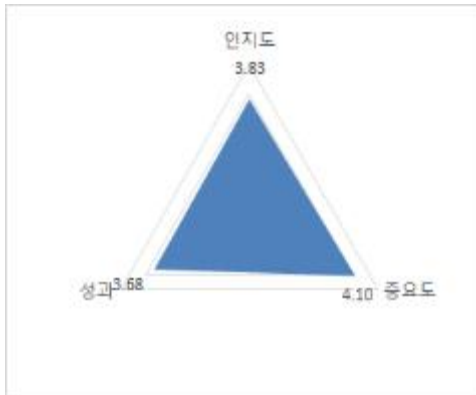
[그림 4-37] 노동이사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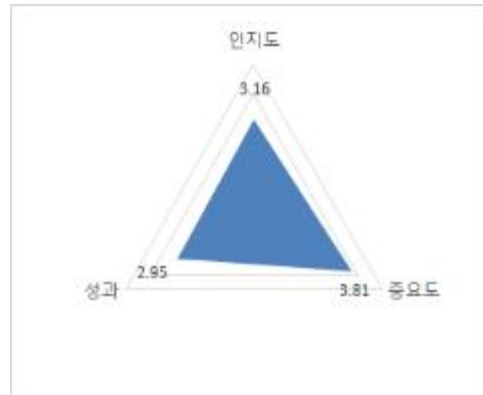
[그림 4-38]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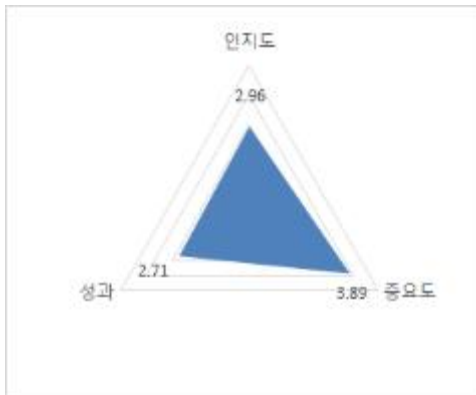
[그림 4-39]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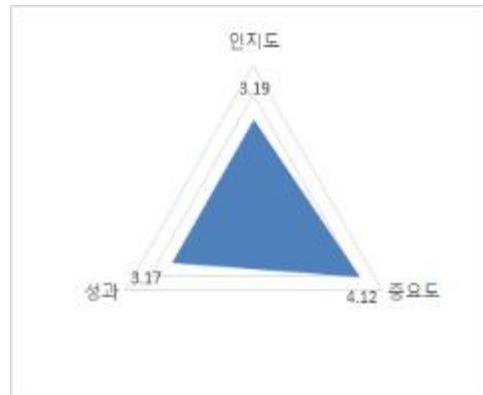
[그림 4-40]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



[그림 4-41] 노동정책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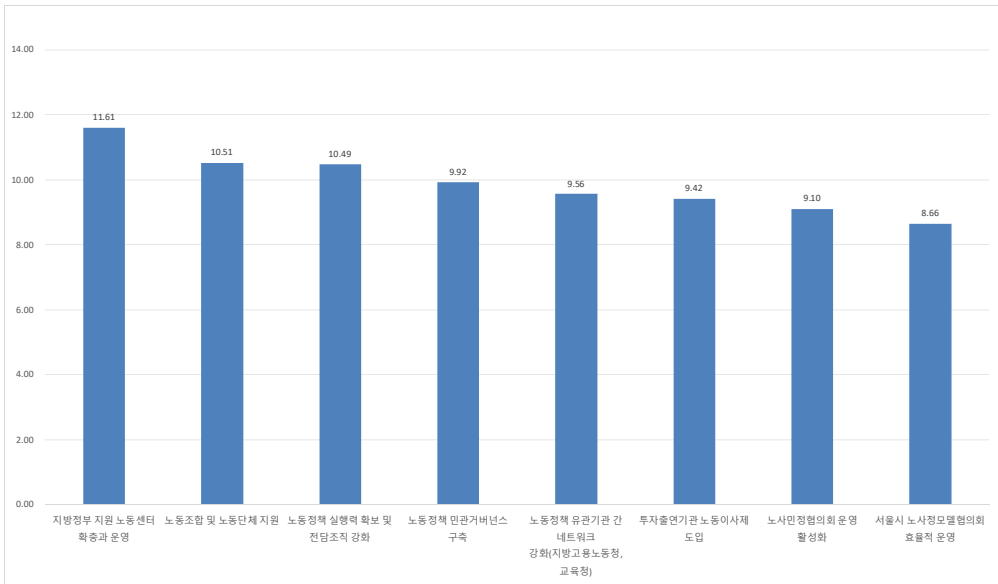


[그림 4-42]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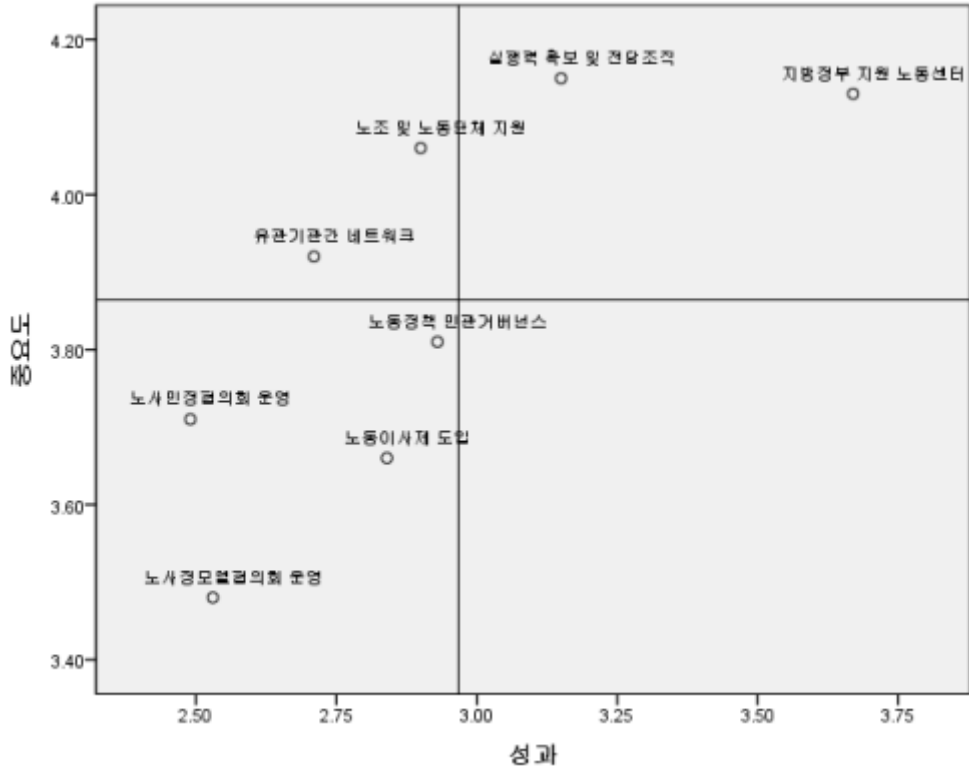
- 인지도, 중요도, 성과를 종합한 평가 결과를 보면,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11.61), 노조 및 노동단체 지원(10.51),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와 전담조직 강화(10.49)로 높은 편이었음. 하지만, 노사민정협의회와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의 운영 등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그림 4-43]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세부사업 종합 결과



-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사업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과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와 전담조직 강화는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았던 사업이었으며, 노조 및 노동단체 지원,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강화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지만,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나머지 4개 사업은 중요도와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었음

[그림 4-44]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사업 IPA 분석 결과



5)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세부과제 종합 평가 결과

-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에 대한 IPA 분석 결과를 보면, 35개 과제 중 11개 사업은 중요도와 성과 모두 높게 나타나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나타남.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직장맘 지원,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노동권리보호관 운영,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도입과 확산,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 등이 해당됨. 즉 이들 사업은 2차 노동정책 계획에서도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중요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아 향후 집중 노력이 필요한 과제는 7개로, 아르바이트 및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노동조사관 운영,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 노조 및 노동단체 지원, 노동정책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등이었음. 이들 과제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전보다 집중적 노력을 통해 성과를 높여나가야 하는 사업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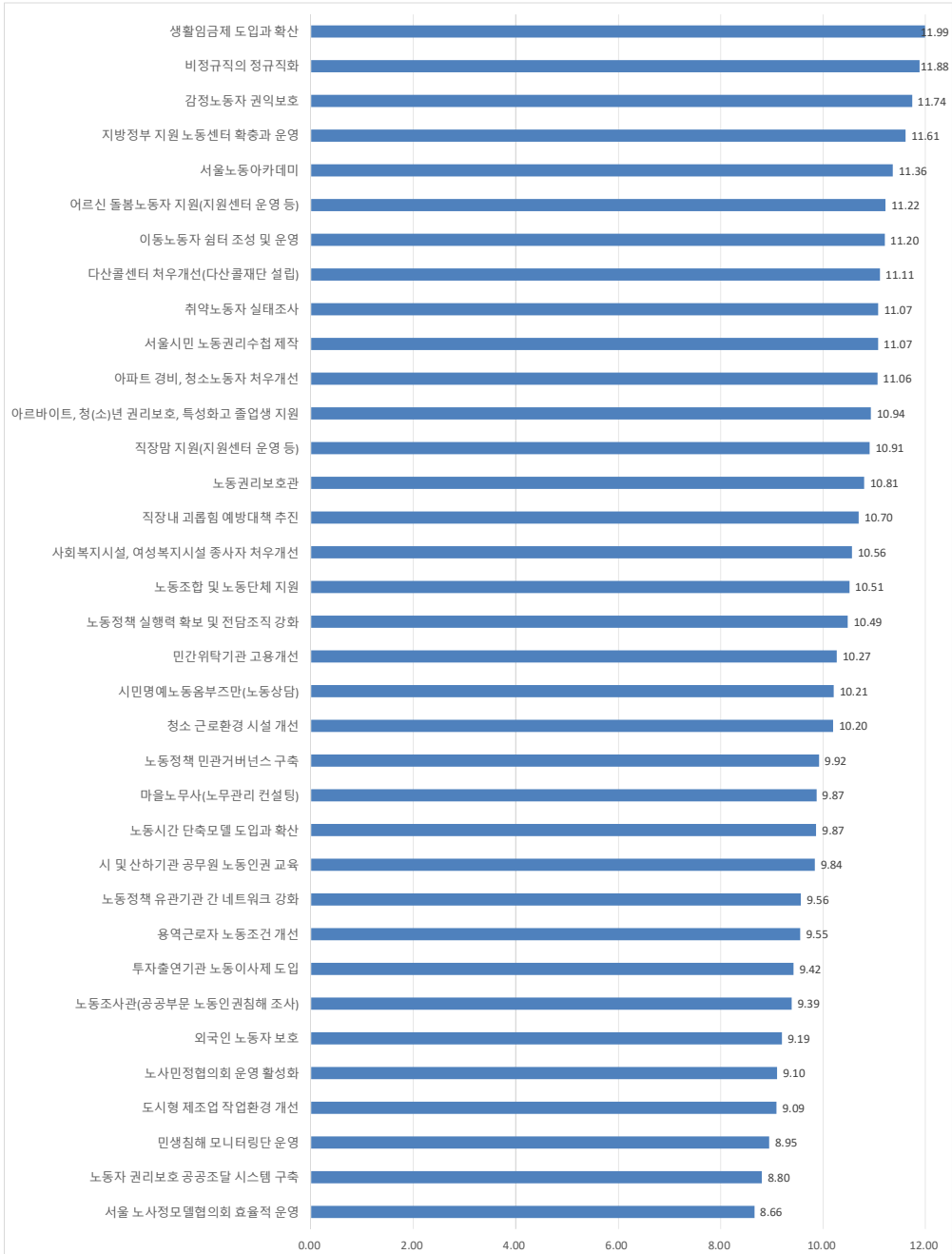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낮은 사업은 14개로,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업임. 구체적으로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외국인노동자 보호,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마을노무사 운영,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노동자 권리보호 공공조달시스템 개선, 노동시간 단축, 청소 노동환경 시설개선, 민간위탁기관 고용개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 운영, 노동이사제, 노동정책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이었음. 용역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민간위탁 고용개선, 거버넌스 운영 등은 단시간에 성과를 얻기보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노무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은 전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재편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과는 크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제작, 다산콜센터 처우개선 등 3개 사업이었음. 이들 사업은 그동안 중요도에 비해 성과가 큰 사업으로 향후 사업추진시 이들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에 자원을 우선배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즉, 일정한 성과를 거뒀기에 지금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한정된 자원으로 가급적 다른 사업에 우선 자원배분이 필요함을 의미함. 하지만, 이들 사업 모두 중요도가 5점 척도 기준 3.70 이상으로 상대적인 중요도가 낮은 뿐, 절대적 중요도는 높은 편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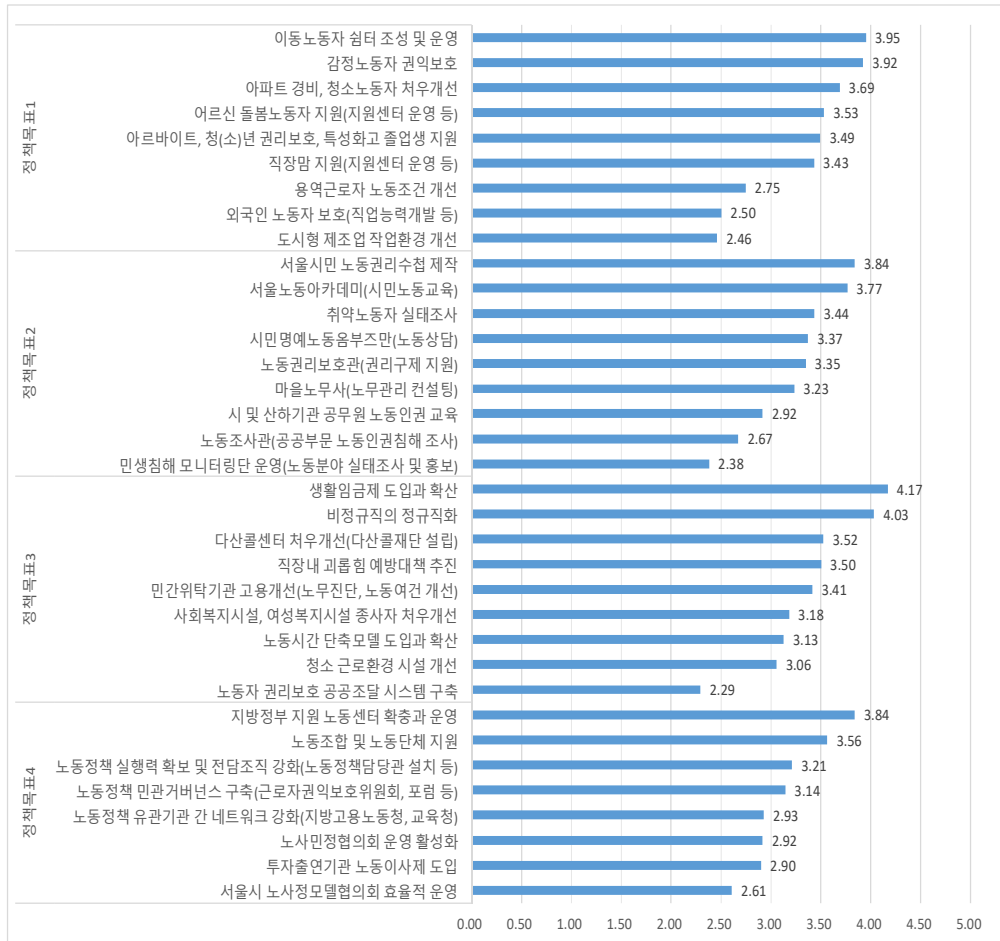
<표 4-7>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35개 주요 사업 IPA 분석 결과 종합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의 질 개선	노사관계 구축
지속 유지 과제 (높은 중요도-높은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 직장맘 지원 -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 노동권리보호관 - 서울노동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생활임금제 - 사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 -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
집중 노력 과제 (높은 중요도-낮은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등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 노동조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내 괴롭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및 노동단체 지원 - 노동정책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점진 개선 과제 (낮은 중요도-낮은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외국인노동자 보호 -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침해 모니터링 - 마을노무사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권익보호 공공조달시스템 개선 - 노동시간 단축 - 청소 노동환경 시설개선 - 민간위탁기관 고용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 노사정모델협의회 운영 - 노동이사제 -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과잉 노력 과제 (낮은 중요도-높은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등노동자 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권리수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산콜센터 처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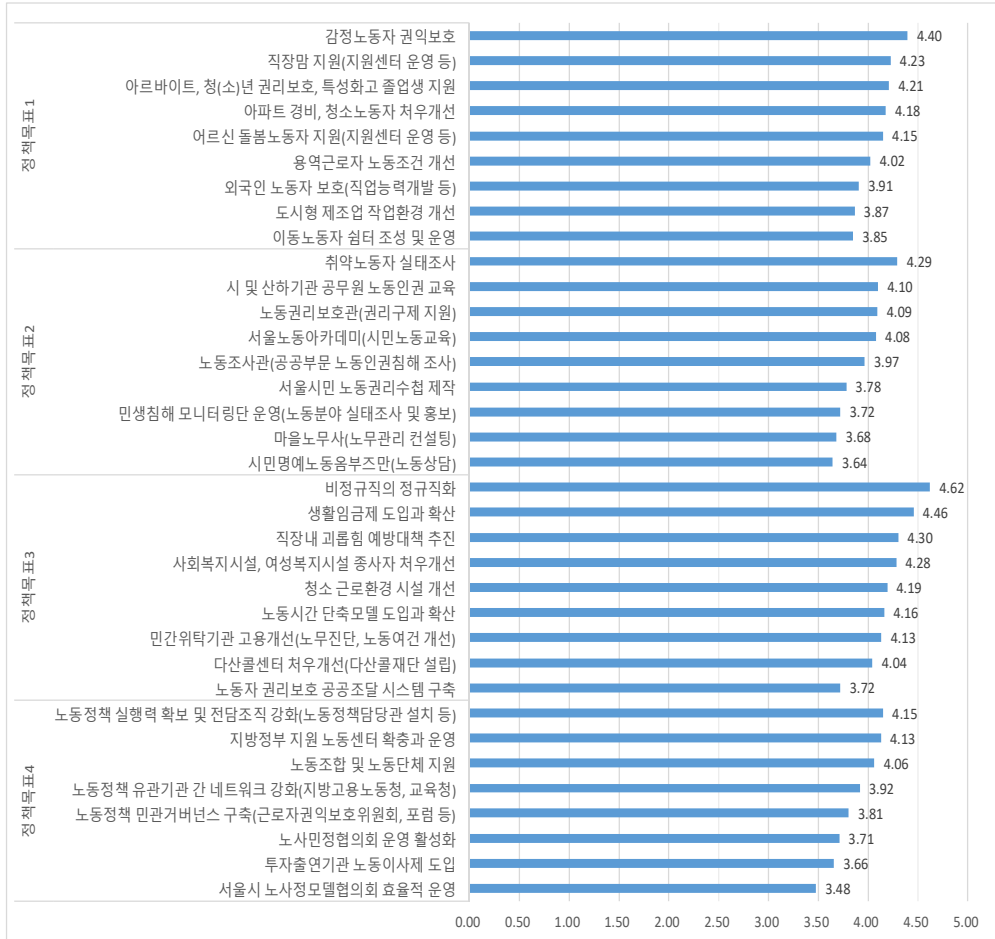
[그림 4-45]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35개 주요 사업 인지도, 중요도, 성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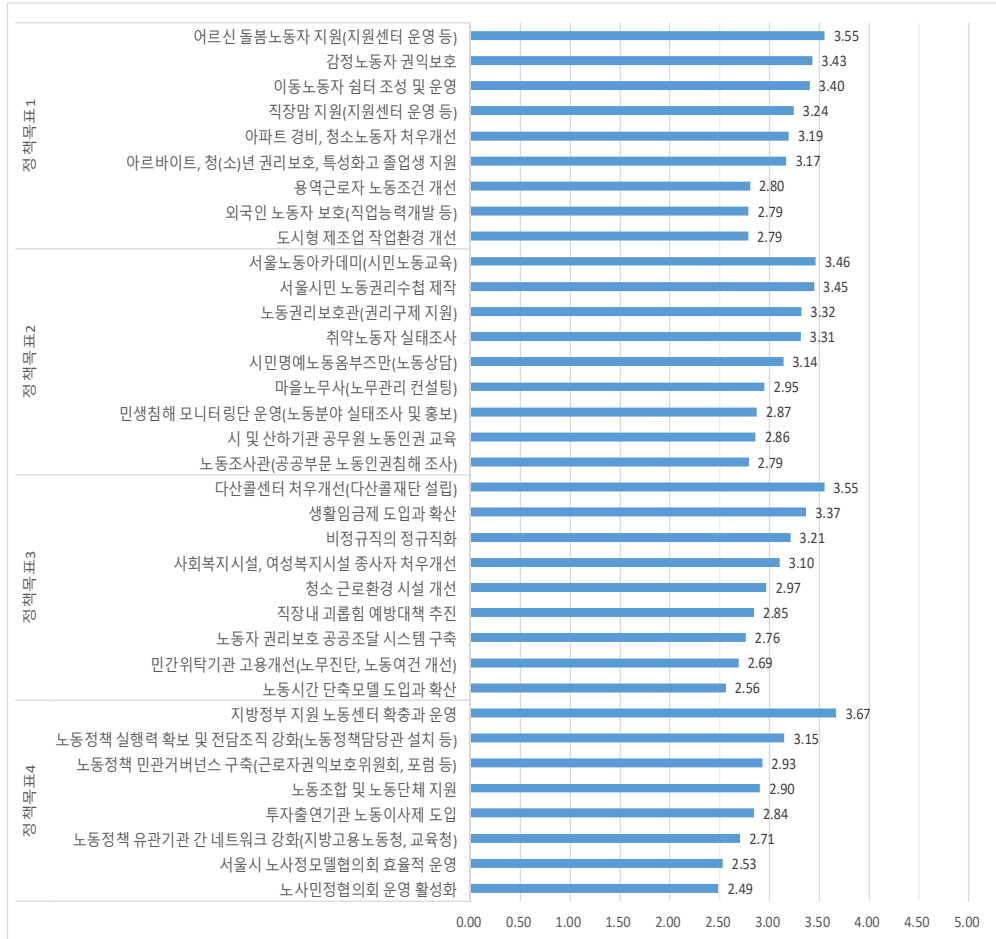
[그림 4-46]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35개 주요 사업 인지도



[그림 4-47]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35개 주요 사업 중요도



[그림 4-48]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35개 주요 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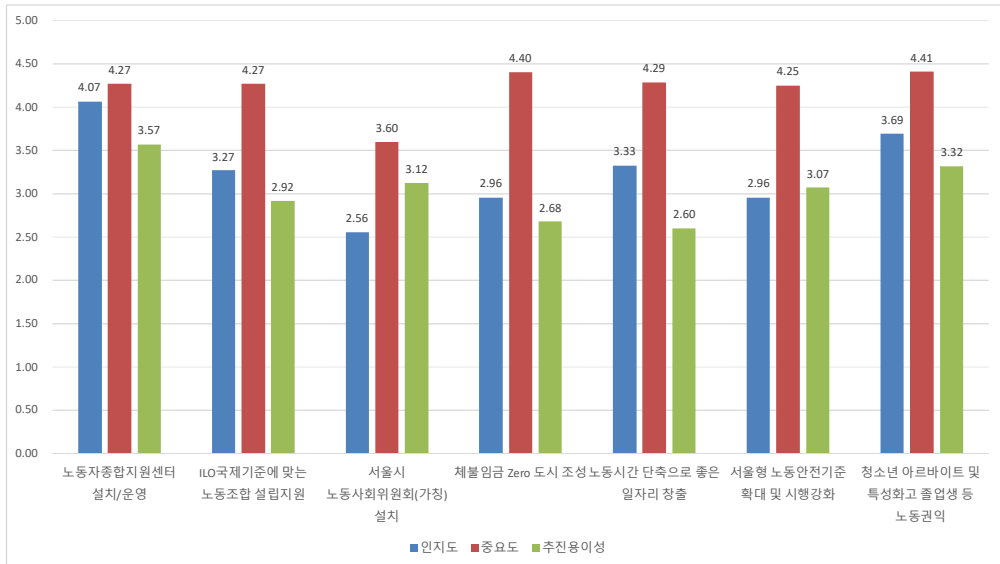
4.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에 대한 평가

- 민선 7기 시정4개년 운영계획에 포함된 노동분야 7대 과제에 대해 인지도, 중요도, 추진용이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함.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는 2019년 1월에 발표되어 추진기간이 길지 않은 편임
- 평가 결과, 인지도 3.28, 중요도 4.20, 추진용이성 3.05로 나타남.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의 인지도(3.27), 중요도(4.02)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중요도와 추진용이성을 비교하면, 중요도가 추진용이성보다 1.00 이상 높게 나타나, 중요한 과제이지만 사업 추진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응답자 소속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노동조합 및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7대 과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중요도는 노동권익기관 및 노동단체 소속의 응답자가 높았음. 추진용이성에서는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 4-8>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전체 평가 결과

		인지도	중요도	추진용이성
전체		3.28	4.20	3.05
성별	남성	3.33	4.10	3.10
	여성	3.21	4.32	3.02
연령	30대 이하	3.01	4.16	3.05
	40대	3.38	4.20	3.05
	50대 이상	3.32	4.25	3.07
소속	노동권익기관	3.22	4.18	2.95
	노동단체	3.15	4.35	3.20
	노동조합	3.44	4.11	3.18
	전문가	3.55	4.07	2.93

[그림 4-49]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전체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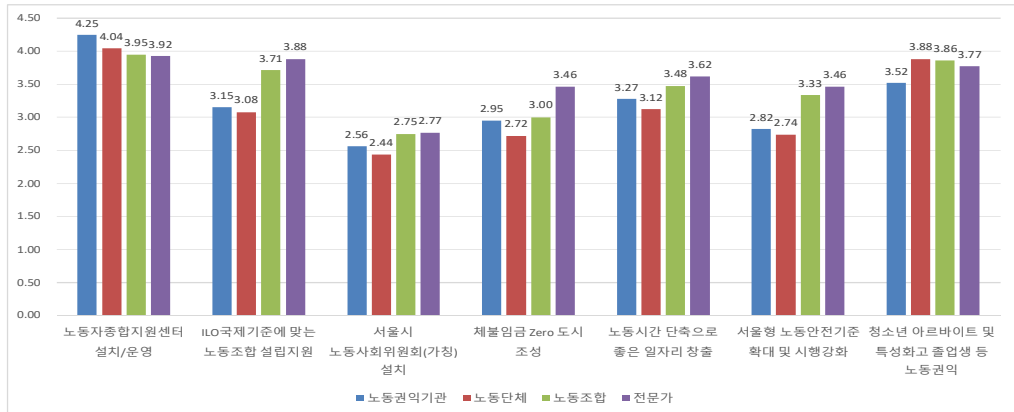


-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별로 살펴보면, 인지도가 높은 과제는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완비(4.07), 청소년, 아르바이트, 특성화고 노동권익 보호(3.69),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3.33), ILO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 설립지원(3.27) 순으로 높았음. 하지만, 노동사회위원회 설치(2.56), 체불임금 제로 도시 조성(2.96),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강화(2.96)으로 보통(3.00) 이하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음
- 중요도는 7대 과제 중 유일하게 노동사회위원회 설치가 4.00 미만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편에 속했음
- 추진용이성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완비(3.57), 청소년, 아르바이트, 특성화고 노동권익 보호(3.32), 노동사회위원회 설치(3.12),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강화(3.07)로 보통(3.00) 이상이었으며, 나머지 3개 사업은 추진용이성이 보통(3.00) 미만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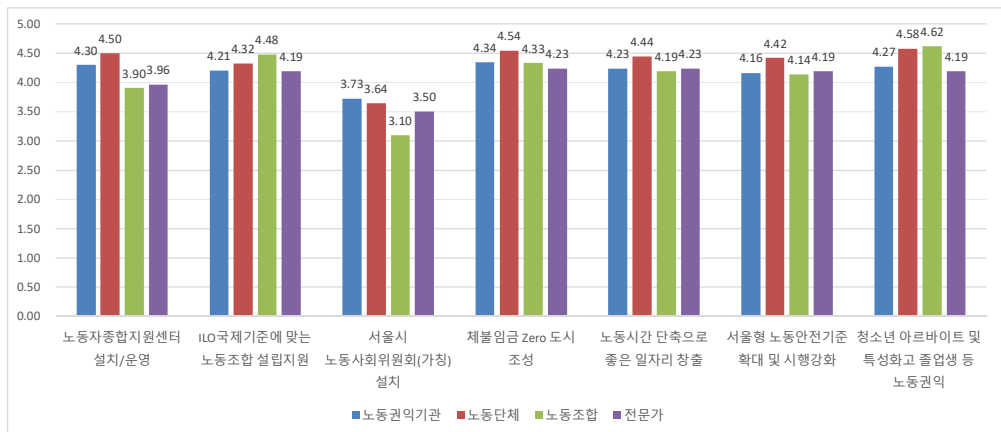
<표 4-9>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별 인지도, 중요도, 추진용이성

	인지도	중요도	추진용이성	합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4.07	4.27	3.57	11.91
ILO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조합 설립지원	3.27	4.27	2.92	10.46
서울시 노동사회위원회(가칭) 설치	2.56	3.60	3.12	9.28
체불임금 Zero 도시 조성	2.96	4.40	2.68	10.04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3.33	4.29	2.60	10.22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강화	2.96	4.25	3.07	10.28
청소년, 아르바이트,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3.69	4.41	3.32	1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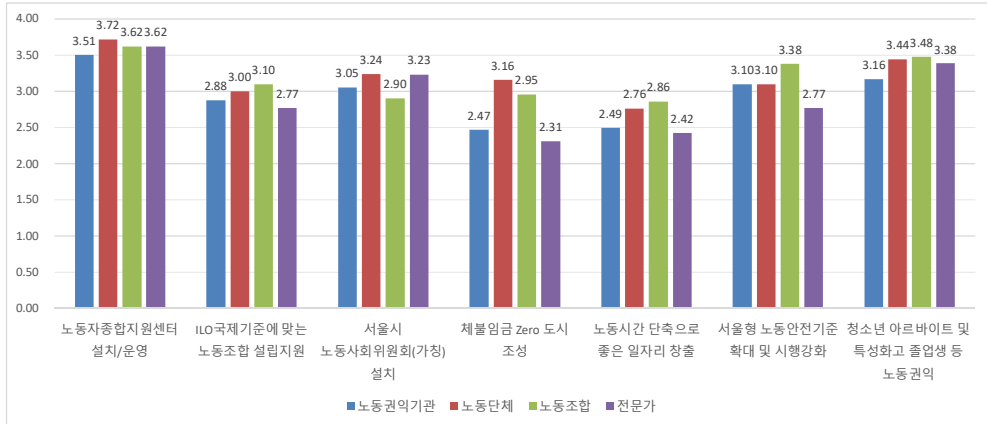
[그림 4-50] 소속기관에 따른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인지도



[그림 4-51] 소속기관에 따른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중요도



[그림 4-52] 소속기관에 따른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추진용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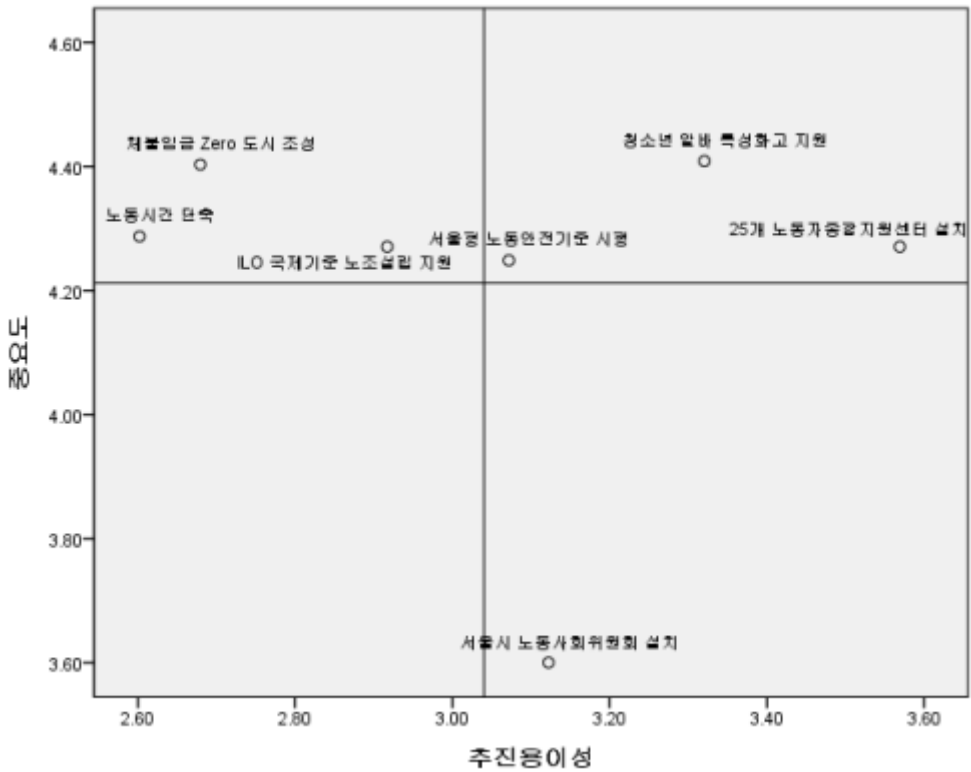
<표 4-10> 중요도 - 추진용이성 분석

	제2사분면	제1사분면
중요도 ↑ 낮음 ↓	장기추진영역 높은 중요도 - 낮은 추진용이성	신속추진영역 높은 중요도 - 높은 추진용이성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선택추진영역 낮은 중요도 - 낮은 추진용이성	중기추진영역 낮은 중요도 - 높은 추진용이성
	낮음 ←	→ 높음

- IPA(중요도-성과분석)과 마찬가지로, 중요도와 추진용이성 평균을 기준으로 4분면의 매트릭스를 형성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1사분면은 중요하면서 추진이 용이한 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지만 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3사분면은 중요도와 추진용이성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아 선택하여 추진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며, 4분면은 중요도는 낮지만, 추진이 용이하여 중기추진영역에 해당함
-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를 상대적 중요도와 추진용이성에 따라 구분하면, 아르바이트와 청소년, 특성화고 노동권익 보호,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완비,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은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체불임금 제로 도시 조성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ILO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 설립지원은 중요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하지 않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 하겠음. 노동사회위원회 설치는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하지만, 중요도는 낮게 보아 신속히 추진하기보다 중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함

[그림 4-53] 민선 7기 7대 과제 중요도 - 추진용이성 분석 결과



<표 4-11>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중요도와 추진용이성 차이

	중요도	추진용이성	중요도와 추진용이성 차이
체불임금 Zero 도시 조성	4.40	2.68	1.72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4.29	2.60	1.69
ILO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조합 설립지원	4.27	2.92	1.35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강화	4.25	3.07	1.18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특성학교 졸업생 등 노동권익	4.41	3.32	1.09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4.27	3.57	0.70
서울시 노동사회위원회(가칭) 설치	3.60	3.12	0.48

5. 신규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 연구진 논의를 통해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에 새롭게 반영해야 할 23개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와 추진용이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함
- 평가 결과, 중요도는 4.02, 추진용이성은 3.26으로 민선 7기 7대과제의 중요도(4.20)와 추진용이성(3.05)과 비교하여 중요도는 다소 낮지만 추진용이성은 다소 높았음
- 응답자 소속에 따라, 전문가는 중요도를 4.14로 높게 평가한 반면, 노동권익기관 소속 응답자는 3.99로 낮은 편이었음. 추진용이성은 전문가와 노동권익기관 소속 응답자가 각각 3.43과 3.36으로 높게 평가함. 전문가가 중요도와 추진용이성을 높게 평가한 게 특징임

<표 4-12> 신규제안과제 전체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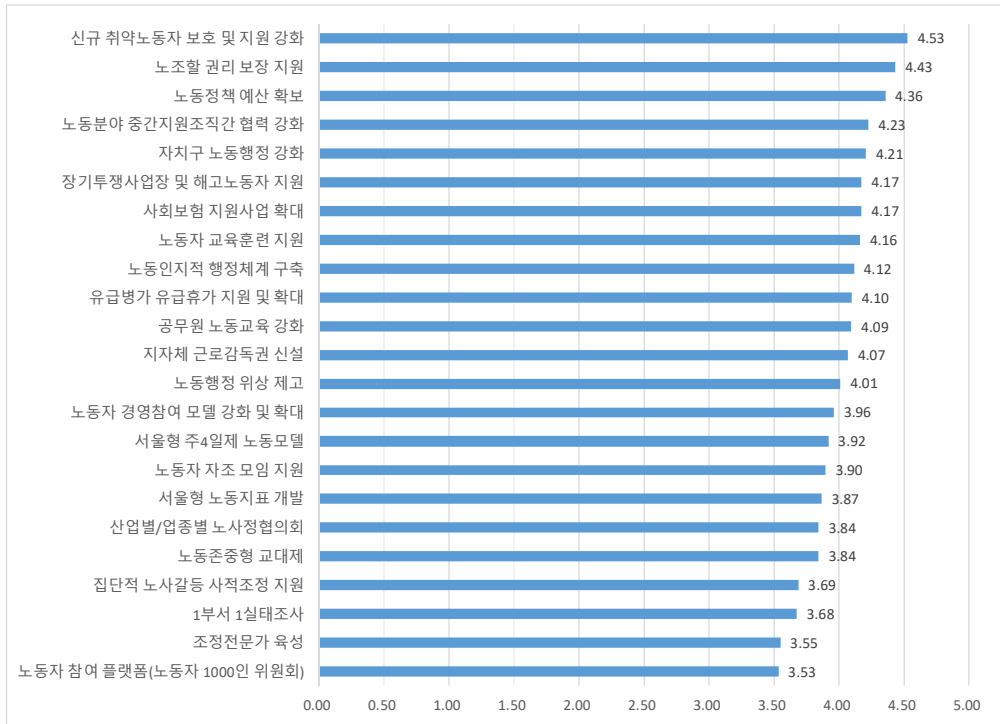
		중요도	추진용이성
전체		4.02	3.26
성별	남성	3.87	3.28
	여성	4.16	3.26
연령	30대 이하	4.02	3.27
	40대	4.08	3.25
	50대 이상	4.00	3.21
소속	노동권익기관	3.99	3.36
	노동단체	4.02	3.27
	노동조합	4.04	3.19
	전문가	4.14	3.43

- 신규제안과제별로 살펴보면,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과제는 신규 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원 강화(4.53), 노조할 권리 보장 지원(4.43), 노동정책 예산 확보(4.36), 노동분야 중간지원조직간 협력 강화(4.23), 자치구 노동행정 강화(4.21),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와 장기투쟁사업장 및 해고노동자 지원 각각 4.17, 노동자 교육훈련 지원 4.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사업은 노동자 참여 플랫폼(노동자 1,000인 위원회) 3.53, 조정전문가 육성 3.55, 1부서 1실태조사 3.68, 집단적 노사갈등 사적조정 지원 3.69 등이었음
- 추진이 용이한 과제로는 공무원 노동교육 강화 3.87, 노동자 교육훈련 지원 3.84, 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3.75, 노동분야 중간지원조직간 협력 강화 3.72, 서울형 노동지표 개발 3.62, 노동인지적 행정체계 구축과 유급병가·유급휴가 지원 확대가 각각 3.45 등으로 높게 나타남. 이에 반해, 서울형 주4일제 노동모델 도입 2.50,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 2.82, 집단적 노사갈등 사적조정 지원 2.88, 산업별·업종별 노사정협의회 운영 2.92 등은 추진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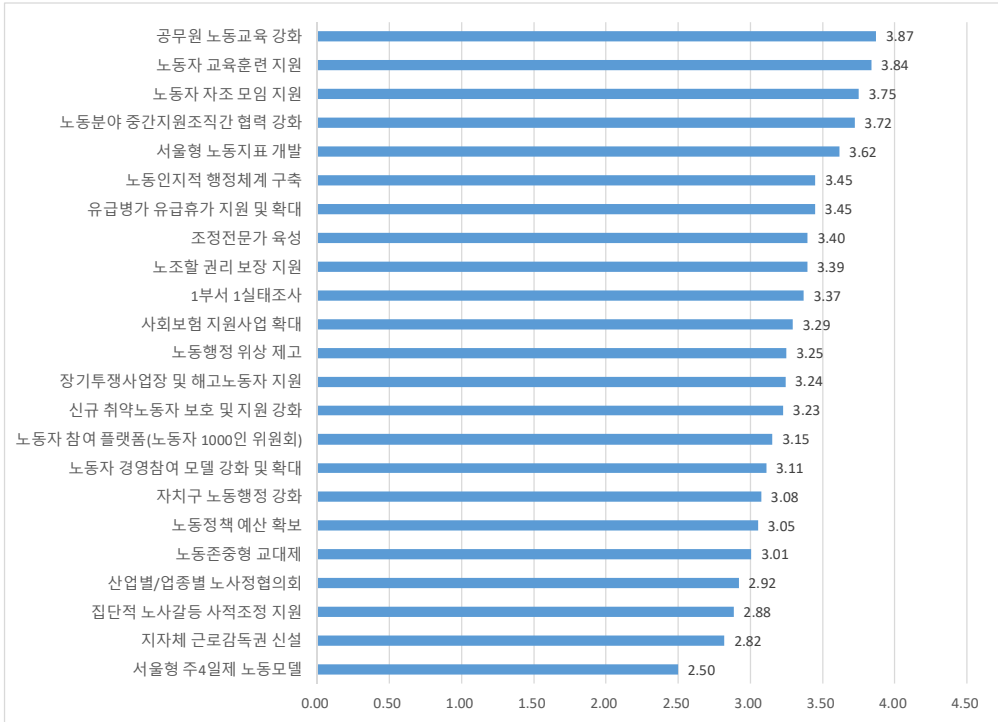
<표 4-13> 신규제안과제별 중요도, 추진용이성

	중요도	추진용이성	합계
노동자 교육훈련 지원	4.16	3.84	8.00
공무원 노동교육 강화	4.09	3.87	7.97
노동분야 중간지원조직간 협력 강화	4.23	3.72	7.95
노조할 권리 보장 지원	4.43	3.39	7.83
신규 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원 강화	4.53	3.23	7.75
노동자 자조 모임 지원	3.90	3.75	7.65
노동인지적 행정체계 구축	4.12	3.45	7.57
유급병가 유급휴가 지원 및 확대	4.10	3.45	7.55
서울형 노동지표 개발	3.87	3.62	7.48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4.17	3.29	7.47
장기투쟁사업장 및 해고노동자 지원	4.17	3.24	7.42
노동정책 예산 확보	4.36	3.05	7.41
자치구 노동행정 강화	4.21	3.08	7.28
노동행정 위상 제고	4.01	3.25	7.26
노동자 경영참여 모델 강화 및 확대	3.96	3.11	7.07
1부서 1실태조사	3.68	3.37	7.05
조정전문가 육성	3.55	3.40	6.95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	4.07	2.82	6.89
노동존중형 교대제	3.84	3.01	6.85
산업별/업종별 노사정협의회	3.84	2.92	6.76
노동자 참여 플랫폼(노동자 1000인 위원회)	3.53	3.15	6.69
집단적 노사갈등 사적조정 지원	3.69	2.88	6.57
서울형 주4일제 노동모델	3.92	2.50	6.42

[그림 4-54] 신규제안과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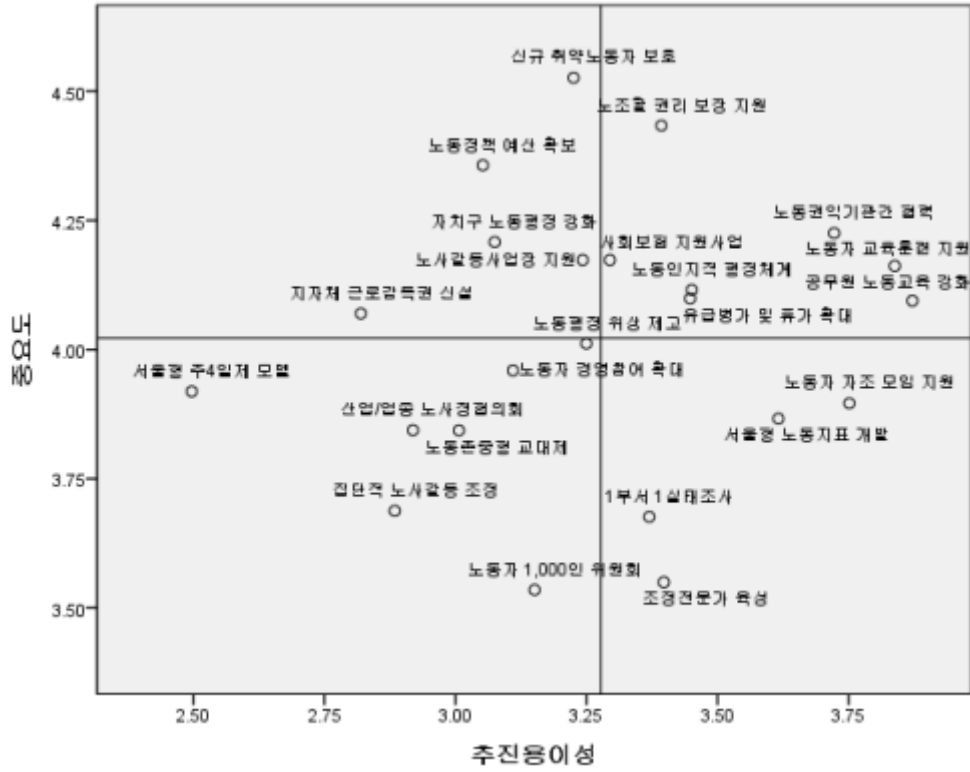


[그림 4-55] 신규제안과제 추진용이성



○ 신규제안과제 23개를 상대적 중요도와 추진용이성에 따라 구분하면, 노조할 권리 보장 지원, 노동권익기관간 협력,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노동자 교육훈련 지원, 노동인지적 행정체계 구축, 공무원 노동교육 강화, 유급병가·유급휴가 지원 확대 등 사업은 중요도와 추진용이성 모두 높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신규 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원, 노동정책 예산 확보, 자치구 노동행정 강화, 노사갈등사업장 지원,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 등 사업은 중요하지만 난이도가 있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해당하며, 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서울형 노동지표 개발, 1부서 1실태조사, 조정전문가 육성 과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중요도도 상대적으로 낮아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 하겠음. 마지막으로 3사분면에 위치한 중요도와 추진용이성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7개 과제는 선택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해당함. 하지만 3사분면에 위치한 7개 신규제안과제들도 모두 중요도가 5점 척도 기준 3.50 이상으로 중요도 평균(4.02)보다 낮을 뿐, 절대적 중요도가 낮다고 할 수 없어 2사분면의 사업처럼 장기적으로 추진을 고려해야 할 사업으로 보임

[그림 4-56] 신규제안과제 중요도 - 추진용이성 분석 결과



<표 4-14> 신규제안과제별 중요도, 추진용이성 차이

	중요도	추진용이성	중요도 추진용이성 차이
서울형 주4일제 노동모델	3.92	2.50	1.42
노동정책 예산 확보	4.36	3.05	1.30
신규 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원 강화	4.53	3.23	1.30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	4.07	2.82	1.25
자치구 노동행정 강화	4.21	3.08	1.13
노조할 권리 보장 지원	4.43	3.39	1.04
장기투쟁사업장 및 해고노동자 지원	4.17	3.24	0.93
산업별/업종별 노사정협의회	3.84	2.92	0.92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4.17	3.29	0.88
노동자 경영참여 모델 강화 및 확대	3.96	3.11	0.85
노동존중형 교대제	3.84	3.01	0.84
집단적 노사갈등 사전조정 지원	3.69	2.88	0.80
노동행정 위상 제고	4.01	3.25	0.76
노동인지적 행정체계 구축	4.12	3.45	0.66
유급병가 유급휴가 지원 및 확대	4.10	3.45	0.65
노동분야 중간지원조직간 협력 강화	4.23	3.72	0.50
노동자 참여 플랫폼(노동자 1000인 위원회)	3.53	3.15	0.38
노동자 교육훈련 지원	4.16	3.84	0.32
1부서 1실태조사	3.68	3.37	0.31
서울형 노동지표 개발	3.87	3.62	0.25
공무원 노동교육 강화	4.09	3.87	0.22
조정전문가 육성	3.55	3.40	0.15
노동자 자조 모임 지원	3.90	3.75	0.14

6. 소결 :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과제 도출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와 자문회의, 그리고 연구진 논의를 통해 도출한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우선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지만 성과는 높았던 과잉노력영역 과제는 제외하고¹⁾, 지속유지영역, 집중노력영역, 점진개선영역에 포함된 과제를 중심으로 2차 과제를 도출하였음
-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았던 지속유지영역에서는 기존과제 중 인지도와 중요도, 성과의 합계가 가장 높았던 4개 과제를 선정함. 이들 4개 과제는 생활임금제 도입과 확산(11.99), 비정규직의 정규직화(11.88), 감정노동자 권익보호(11.74), 지방정부 지원센터 확충과 운영(11.61)으로 다른 추진과제와 비교하여 전반적인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었음. 1차 노동정책 과제인 지방정부 지원센터 확충과 운영은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연계되는 과제로 민선 7기 7대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인지도, 중요도, 추진용이성 합계가 가장 높은 과제였음
 - 중요도는 높지만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집중노력이 필요한 영역(집중노력영역)에서는 중요도와 성과간 차이가 큰 5개 과제를 선정하였음.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노동정책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 아르바이트·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으로 이들 사업은 중요도와 성과간 차이가 1점 이상이었음.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특성화고 졸업생 등 노동권익’은 1차 추진 과제였던 아르바이트·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연계된 과제로 중요도와 추진용이성 모두 높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나타나기도 함
 - 점진개선영역에서는 7개 과제를 선정함. 점진개선영역은 중요도와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들이나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에도 포함하여 향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판단함. 노동시간 단축모델 도입과 확산, 민간위탁기관 고용개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 외국인 노동자 보호,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등 5개 과제는 중요도와 성과간 차이가 1점 이상으로, 중요 사업이지만 1차 노동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가 낮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동자 권리보호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운영과 노동이사제 운영 등 2개 과제도 선정함. 공공조달을 통해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고, 노동자 경영참여 측면에서

1)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과제는 평가결과 과잉노력영역에 속하나, 플랫폼 및 프리랜서 등 신규 취약노동자 확대에 따라 쉼터 개수를 늘리기보다 쉼터 사업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2차 노동정책과제로 제안함

노동이사제의 안착과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임

-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는 2차 노동정책에 모두 포함함.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노동사회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 중요도가 모두 4.0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3개 과제(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보호,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는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 과제와 연계된 과제로 기존과제 평가시 지속 추진의 필요성이 확인됨.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던 서울시 노동사회위원회 설치의 서울형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측면에서 과제로 포함함

- 신규제안과제에 대해서는 신속추진영역, 장기추진영역, 중기추진영역, 선택추진영역별로 평가하여 2차 노동정책 과제로 선정함. 또한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구진 논의를 통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과제도 함께 제안함
 - 중요도와 추진용이성이 모두 높았던 신속추진영역에서는 노동자 교육훈련 지원, 노조할 권리보장 지원, 서울시 노동권익기관간 협력 강화, 공무원 노동교육 강화,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유급병가·유급휴가 지원 및 확대, 노동인지적 행정체계 구축을 선정함.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와 유급병가·유급병가 지원 및 확대 강화는 서울형 취약계층 시민보험 사업으로 제안하고, 공무원 노동교육을 포함하여 행정 전반의 노동인지적 관점 실현을 위해 노동인지적 행정체계 구축 사업으로 제안함
 - 장기추진영역은 중요도는 높지만 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부문이며, 중기추진영역은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추진은 용이한 편은 영역으로 이들 영역에서는 해당 사업간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함. 이에 신규 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노동정책 예산 확보, 자치구 노동행정 강화, 서울형 노동지표 개발, 노동자 자조 모임 지원을 선정함
 - 선택추진영역에서는 기존 추진과제와 연계된 서울형 주4일제 노동모델(기존과제의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 경영참여 모델 강화 및 확대(기존과제의 노동이사제)를 포함하였으며, 그 외에 노동자의 정책의사결정 참여로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노동자 참여 플랫폼(1,000인 위원회)과 노사협력 기반을 위한 서울시의 노사갈등 조정·중재 역할 필요에 따른 집단적 노사갈등 조정 과제를 선정함

- 그 외에 설문조사시 제안하지 않았지만, 연구진 토론을 통해 무급노동 지원, 돌봄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지원, 성평등 노동사업 확대, 차별없는 일터 실현 등 4개 과제를 추가함

○ 1차 노동정책 추진과제,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그리고 신규제안과제 평가에 따른 2차 노동정책 과제(안)는 아래 표와 같음

<표 4-15>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안)

평가대상 과제			2차 노동정책 과제(안)
1차 노동정책 과제	민선 7기 노동 7대 과제	신규제안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 직장암 지원 -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 -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 노동권리보호관 - 서울노동이카데미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생활임금제 -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전담조직 강화 -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 - 청소년 등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 아파트 경비, 청소년노동자 처우개선 -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 노동조사관 - 직장내 괴롭힘 예방 - 노조 및 노동단체 지원 - 노동정책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외국인노동자 보호 -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 민생침해 모니터링 - 마을노무사 - 시민명예노동운동부즈만 운영 - 노동자 권리보호 공공조달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아르바이트, 청소년 특성하고 졸업생 노동권익 보호 -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IL0국제기준에 맞는 노조 설립지원 - 서울시 노동사회위원회 설치 - 체불임금ゼロ 도시 조성 -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노동교육 강화 - 노동인지적 행정체계 구축 - 노동자 경영참여 모델 강화 및 확대 - 노조할 권리 보장 지원 - 서울형 주4일제 노동모델 - 노동정책 예산 확보 - 신규 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자치구 노동행정 강화 - 장기투쟁사업장 및 해고노동자 지원 -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 - 산업별·업종별 노사정협의회 -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 유급병가·유급휴가 지원 확대 - 노동중흥형 고대제 - 집단적 노사갈등 사적조정 지원 - 노동행정 위상 제고 - 서울시 노동권익기관간 협력 강화 - 노동자 참여 플랫폼(노동자 1,000인 위원회) - 노동자 교육훈련 지원 - 1부서 1실태조사 - 서울형 노동자표 개발 - 조정전문가 육성 - 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p>(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 - 체불임금 ZERO 도시 - 아르바이트, 청소년, 특성하고 졸업생 노동권익 보호 - 취약직종별 노동자 지원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 서울형 취약계층 시민보험 - 민간위탁 노동환경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모델 구축 - 생활임금제 확산 및 표준화 - 노동자 유급교육훈련 지원 - 노동안전보건 및 건강권 강화 - 정신건강(감정노동, 디지털트라우마) 및 직장내 괴롭힘 대책 - 공공계약·조달시 산재업체 자격 제한 - 도심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등 지원 - 서울시 노동자 참여 플랫폼 구축(1,000인 위원회) - IL0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조합 설립 지원, 노조할 권리 보장 - 서울형 사회적대화기구 재편을 통한 노동포괄적 교섭·협이기구 - 노동이사회 확대·강화 -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 - 미래지향적 노동의제 발굴과 서울형 노동자표 개발 - 집단적 노사관계 조정 및 갈등사업장 노동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간 단축 - 청소 노동환경 시설 개선 - 민간위탁기관 고용개선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 노사민정모델협의회 운영 - 노동이사제 -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 노동권리수첩 - 다산콜센터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인적 행정체계 구축 - 노동정책예산 확대 - 자치구 노동행정 강화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원비 및 기능·역할 정비 - 노동정책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노동권리보호 체계 내실화 <p>(연구진 추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노동 지원 - 돌봄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지원 - 성평등 노동사업 확대 - 서울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시행
---------------------------------------------------------------------------------------------------------------------------------------------------------------------------------------------------------------------------------------------------------------------------------------	--	--	-----------------------------------------------------------------------------------------------------------------------------------------------------------------------------------------------------------------------------------------------------------------------------------------------------------------------------------------------------------------------------------------------------------------------

* 평가대상 과제에서 기울어진 진한 글씨체가 2차 노동정책 도출 과제

V. 2차 노동정책 비전과 정책방향

1. 2차 노동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1) 비전체계

[그림 5-1]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비전체계(안)

비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정책 목표		취약노동자 권리보장	좋은 일자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정책 과제	중점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원 강화(플랫폼, 프리랜서 등) -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 - 체불임금 제로 도시 - 아르바이트, 청소년, 특성하고 졸업생 노동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 서울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시행 - 서울형 취약계층 시민보험 - 민간위탁 노동환경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노동 안전 사업 - 정신건강, 기술변화 맞춘 노동안전과 작업중지권 - 공공조달 사업, 산재유발업체 자격 제한 -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노동자 참여 플랫폼 구축 (1,000인 위원회) - ILO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조합 설립 지원, 노조할 권리 보장 - 노동포괄적 교섭·협약기구 활성화 - 노동이사제 확대·강화
	일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노동 지원 - 돌봄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지원 - 성평등 노동사업 확대 - 취약직종별 노동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모델 구축 - 생활임금제 확산 및 표준화 - 노동자 유급교육 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 - 미래지향적 노동의제 발굴과 서울형 노동지표 개발 - 집단적 노사관계 조정 및 갈등사업장 노동자 지원

지속가능한 노동행정 (기반 구축)

(중점과제)

- 노동인지적 행정체계 구축
- 노동정책예산 확대
- 자치구 노동행정 강화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완비 및 기능·역할 정비

(일반과제)

- 노동정책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 서울시 설립 노동권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노동권리보호 기반 내실화

2) 추진방향

[그림 5-2]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추진방향

정책목표	추진방향	
<p>① 취약노동자 권리보장</p>	<p>취약노동자 노동권의 향상을 위한 권리보장 기반 및 환경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노동자, 이주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신규 취약노동자 보호 사업 추가로 취약노동자 보호 범위 확대 - 고용관계나 임금노동 중심의 협의의 노동자를 넘어 비임금노동, 생활노동 등 일하는 사람에 대한 포괄적 접근 - 1차 노동정책에서 추진했던 취약노동자 지원 정책 확대·강화
<p>② 좋은 일자리</p>	<p>노동의 질 향상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EU의 Decent Work 관점에서의 노동의 질 향상 - 고용안정, 소득불평등 해소(임금), 노동시간 단축, 사회보장, 교육 훈련, 차별해소 등 사업 추진 -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모델 구축, 생활임금 확산과 표준화 등 기존 정책 강화
<p>③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p>	<p>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중받는 일터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사회, 안전한 일터의 중요성 확대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서울지역 산업특성을 고려한 도심형 제조업, 서비스 산업, 공공부문에 특화된 안전보건 사업 추진
<p>④ 노동기본권 보장</p>	<p>노동자 참여 및 협력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참여에 기초한 포괄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포괄적 참여형 거버넌스 구조 선도적 확립·운영 (노동자 참여 플랫폼 확립, 지역 수준 사회적 대화기구 신설, 노동이사제 강화·확산) - 노동법상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하는 서울시민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전면 보장과 지원

지속가능한 노동행정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노동행정 추진을 위한 인프라 강화 - 행정 전반의 노동인지적 관점 실행을 위한 노동인지적 행정체계구축 추진 - 안정적·지속적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노동행정예산 확대 - 전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기능·역할 정비 및 노동권리보호 기반 내실화

2.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와 중점과제

1) 정책목표1 : 취약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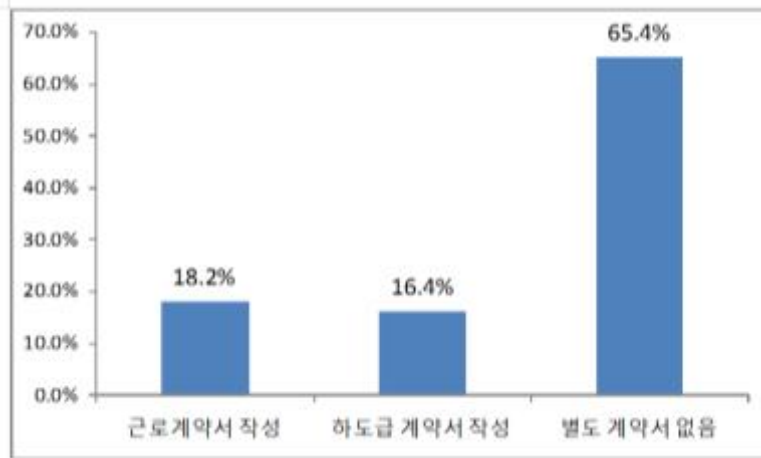
-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에 이어서 2차 노동정책에서도 취약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지속되어야 함. 청소년, 여성, 이주민, 중고령자 등 취약노동자는 노동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낮음.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취약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노동의 시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2차 노동정책에서는 1차에서 진행했던 취약노동자 지원정책 중 일부를 확대강화하고, 이주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에 대한 신규 사업을 추가 해서 취약노동자 보호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취약노동자를 노동법 적용 대상이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해서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노동법 적용을 받거나 혹은 배제된 노동자 등 고용관계나 임금노동을 중심에 둔 협의의 노동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임금노동, 생활노동 등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노동정책의 보편화 차원에서 고용관계를 넘어서서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따라서 “취약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정책대상을 1차 기본계획 보다 확대하여 신규과제로 제시하고, 기존 1차 기본계획 정책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안하고자 함. 중점과제로서는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신규), ▲ 체불임금 제로도시(신규), ▲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신규), ▲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특성화고 졸업생 지원(강화)를 꼽았고, 일반과제로는 ▲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강화), ▲ 무급노동 지원사업(신규), ▲ 돌봄노동자 지원 확대(강화), ▲ 성평등 노동 사업 확대(강화)를 제안함

1-1-1. 플랫폼 노동자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디지털 플랫폼 중개를 통해 비정기적인 일거리를 할당받아 일하는 플랫폼노동이 급증하고 있음. 기존 퀵서비스, 대리운전, 음식배달 외에도 가사/요양서비스, 디자인,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 플랫폼노동은 플랫폼기업의 중간착취로 인한 구조화된 저임금 노동임. 또한 노동자성이 부정되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고, 노조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서 집단적인 권익 옹호활동에 한계가 존재함
- 최근 연구보고서(고용정보원, 2019)를 참조해서 플랫폼 노동자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플랫폼노동을 ‘지난 한 달 동안 디지털 플랫폼(웹/앱)의 중개를 통해서 고객에게 단기적 유급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고용형태’로 정의하고, 국내 취업자의 약 1.7%에 해당하는 46만 9천명이 해당된다고 추정함. 주요 직종을 보면, 남성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판매 및 영업, 청소 및 건물관리,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이며, 여성 플랫폼노동자의 경우는 음식점 서빙, 가사육아도우미, 요양의료, 청소 및 건물관리, 판매 및 영업, 화물운송, 통번역 등임
- 지난 한 달간 활용한 일자리/일거리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34.6%)보다 특별한 계약이 없었다는 비율(65.4%)이 2배 더 많았음. 이는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전체: 68.5%, 비정규직: 63.7%)보다 현저하게 낮음(고용정보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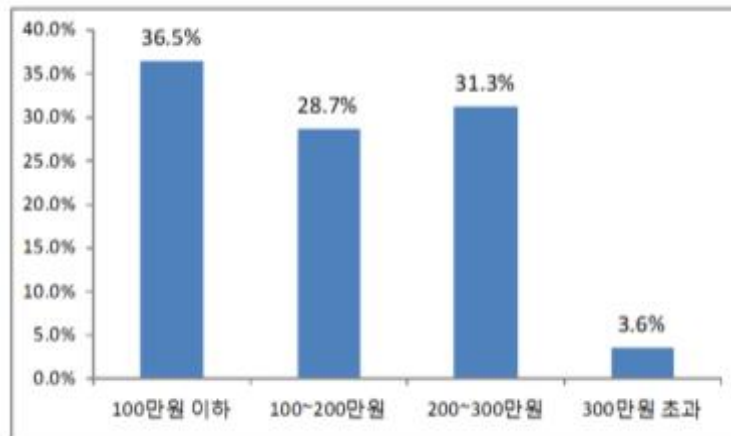
[그림 5-3] 플랫폼 노동자 계약체결 비율



자료 : 김준영 외(2018),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플랫폼경제종사로 얻은 월평균 소득(세전)이 100만 원 이하라는 응답비율 (36.5%)이 가장 높고, 300만 원 초과라는 응답비율은 3.6%에 그쳤으며, 월평균소득의 산술평균은 163.9만 원이었음(고용정보원, 2019)

[그림 5-4] 플랫폼 노동자 월 평균 소득(세전)



자료 : 김준영 외(2018),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중앙정부 동향 >

- ▶ 2019년 1월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서비스 시장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혁신적인 공유 플랫폼의 등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며,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경제활력대책회의 관계부처 합동, 2019. 1.)
-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산재보험 확대와 플랫폼 노동에 적합한 산재보험 부과 징수 체계 마련을 제시하고 있음.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현행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에서 2020년에는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A/S기사로, 2021년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IT 업종 프리랜서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제안 배경

-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계약관계의 불분명함, 높은 수수료, 사용자 책임의 부재 등 노동권 보장이 미흡한 취약노동계층에 속함
- 중앙정부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표준계약 관행을 형성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이고 섬세한 접근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자체가 나서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사업 목표

-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통해 표준계약, 공제조합 등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
-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당사자 조직화 지원

□ 사업 내용

- 3자 협의체 구성(지자체/플랫폼기업/노동자조직)
 - 노사민정협의회의 부문별 조직으로서 플랫폼노동 3자협의체 구성
 - 플랫폼노동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 작성, 공제조합 설립 논의 등 지속적인 협의틀로 운영
- 산업안전 지원
 - 플랫폼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폭염, 한파에 대비한 안전장비 지급
- 이동노동자 쉼터의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강화
 - 기존 5개 쉼터를 포괄하는 종합지원센터 구축. 쉼터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기존

쉼터의 사업내용을 강화하여 이동노동자 보호기능 활성화
- 커뮤니티 촉진, 조직화 지원 사업 다각화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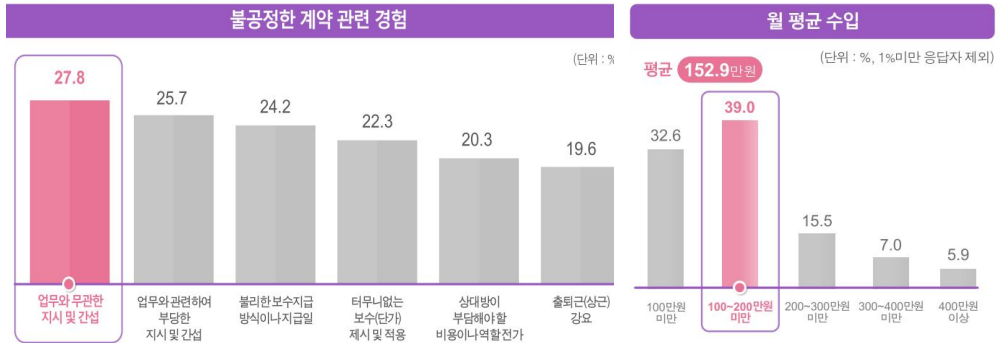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3자협업체 구성 및 표준계약서 등 협력		조사 및 구상	협업체 구성 준비	협업체 가동	협업체 가동	협업체 가동
폭염, 한파 대비 산업안전 지원	5	1	1	1	1	1
쉼터 사업 강화 (사업비 증액)	10	1	1.5	2	2.5	3

1-1-2.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프리랜서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 정의는 없음. 다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자영업자(self-employed), 독립노동자(independent worker) 등의 개념이 중첩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금근로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프리랜서가 포함될 개연성이 높음(노동연구원, 2013)
- 아웃소싱 활용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 모바일 사용 증가로 인해 프리랜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프리랜서 규모는 광의의 개념(특수고용,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으로는 취업자의 20% 내외, 협의의 개념(광의의 개념 중 관리직, 전문직만 포함)으로는 취업자의 3% 내외로 추산됨. 2018년 기준 취업자 2,700만명을 토대로 하면 프리랜서는 80만~540만 명에 해당하는 규모임
- 프리랜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법적 보호에서 제외,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한 낮은 보수, 취약한 일자리 형성 등 취약노동계층에 속함
- 2018년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와 무관한 지시와 간섭'(27.8%),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 및 간섭'(25.7%) 등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월평균수입도 152.9만원으로 낮음

[그림 5-5] 프리랜서 불공정계약 경험 및 월 평균 수입



자료 : 서울시(2018),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프리랜서 정책토론회(2018.4.11.)

□ 제안 배경

- 프리랜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짐으로 인해 일할 때는 노동자처럼 사실상의 고용주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도, 보수, 사회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자영업자처럼 사회적 보호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모든 위험은 프리랜서가 떠안아야 하는 것임
- 프리랜서는 일하는 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가 강구되어야 함

□ 사업 목표

-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의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 조직화를 통한 자구노력 활성화

□ 사업 내용

- 프리랜서 실태조사(서울청년시민회의 제안으로 2020년 기 예산 반영)
 - 프리랜서 지원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주요 업종별 실태조사
 - 주요 업종별 업무환경, 계약실태, 인권침해사례 조사
- 업종별 표준계약서 적용
 - 주요 업종별 표준계약서 제작
 - 사용자단체에 대해 표준계약서 적용에 대한 권고 및 협약 체결

- 프리랜서 지원 센터(프리랜서 지원 조례상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 법률·세무 상담, 비즈니스 컨설팅, 네트워크 및 협업 공간 지원
 - 프리랜서 등록제를 통한 유급휴가 등 사회복지 적용
- 프리랜서 자구모임 지원
 - 자조모임, 협동조합, 직능단체(당사자협회), 유니온 등 자구모임 조직화 지원
 - 초기 조직화 지원을 토대로 중장기적 정책협약 파트너십 구축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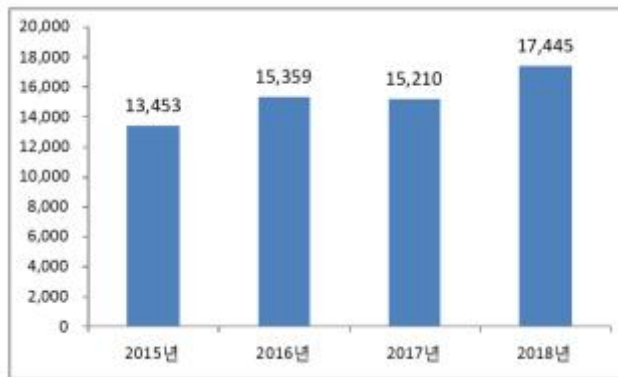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등 보호방안 마련	-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표준계약 유도	표준계약 유도	표준계약 유도	표준계약 유도
지원센터 설립	-	지원센터 모델 개발	지원센터 설립	지원센터 설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센터 운영
지원센터 예산	27	1	5	6	7	8

□ 현황 및 문제점

○ 근절되지 않는 임금체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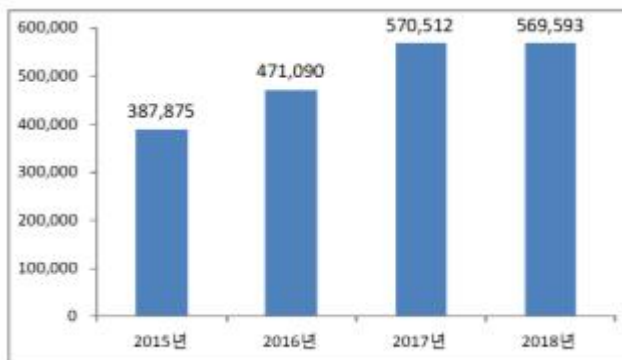
-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활의 원천인데, 이러한 임금이 체불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에 있음. 2018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7천 억을 넘으며,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도 2018년 57만 명에 달함

[그림 5-6] 임금체불액 규모(억원)



자료 : 참여연대(2019), '임금체불 보고서-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9. 10. 07.

[그림 5-7]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 수(명)



자료 : 참여연대(2019), '임금체불 보고서-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9. 10. 07.

- 노동사건의 대다수가 임금체불사건이나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제도 운영의 한계 노출
 - 근로감독관 대비 감독사업장 과다(1명당 노동자 12,500명, 사업장 1,450개소)
 - 고용노동부 신고건수의 약 54% 이상이 임금체불 사건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불임금 지급 절차 및 요건의 엄격함으로 구제 미흡
 - 기금활용을 통한 권리구제 요건이 제한적이고 복잡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움

□ 제안 배경

-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확대하여 체불 자체에 대한 사업주 경각심을 높여야 함.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체불의 피해를 줄이는 수단이 됨.
-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행정의 개선만을 기대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면 소극적 자세임. 지자체가 노동청과의 협력을 통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발생한 체불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함.

□ 사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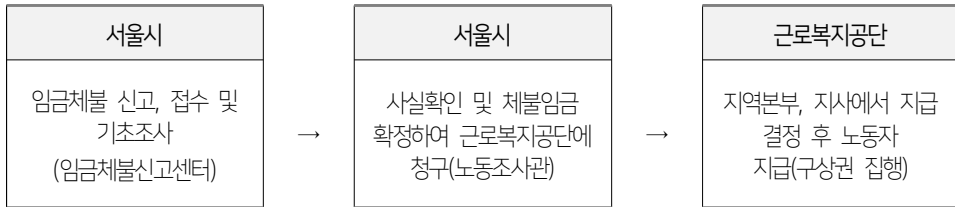
- 임금체불조사권의 지자체 병행으로 근로감독관 부족문제 해결 및 임금체불 해소
- 서울시의 체불임금 조사확인을 통한 임금채권보장기금 지급방안 마련
- 신속한 임금체불 조사 및 해결을 위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임금체불 신고센터 기능 수행

□ 사업 내용

- 지방정부 임금체불조사권 부여
 - 임금체불 해소에 대한 여론 조성
 - 임금체불 조사권한 지방정부 부여 관련 지자체간 공감대 형성
 - 중앙정부, 국회에 법 개정 건의
- 체불임금 확인 및 청구 지원제도
 - 중앙정부 등에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건의

-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사유 확대 및 요건 완화
- 체불임금 확인 및 청구 지원
- 부당노동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조사

[그림 5-8]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한 청구 지원



○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단기)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내 설치
- (중장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과 연계하여 운영 확대
- 지역별 임금체불 다발 업종의 현황 및 임금체불 유발 원인 분석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간 업무협약 체결로 임금체불사건 원스톱처리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임금체불 조사권 부여	-	여론 조성, 법 개정 건의	~ 법 개정까지			
체불 확인 및 청구지원	-		(법개정 전제)	체불 조사 및 청구	체불 조사 및 청구	체불 조사 및 청구
신고센터 운영	-	노동권익센터 운영	자치구센터로 확산	자치구센터로 확산	자치구센터로 확산	자치구센터로 확산

□ 현황 및 문제점

-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존재함. 이주노동자 31.9%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고, 여성, 건설업, 미등록 노동자일수록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더 높아짐(국가인권위, 2018)

<표 5-1> 업종, 성별, 체류자격에 따른 최저임금 수령 여부

구분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 미만	모름	조사인원수
업종	제조업	58.8%	31.4%	9.8%	388
	건설업	30.8%	42.3%	26.9%	26
성별	남성	57.4%	30.7%	11.9%	404
	여성	40.6%	46.9%	12.5%	32
체류자격	등록	59.0%	30.0%	10.9%	393
	미등록	28.6%	50.0%	21.4%	42
전체		56.2%	31.9%	11.9%	436

자료 : 국가인권위(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거현안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 2018. 11. 13.

-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3,316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1,623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관계기관 통보, 시정조치, 사법처리,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함

<표 5-2>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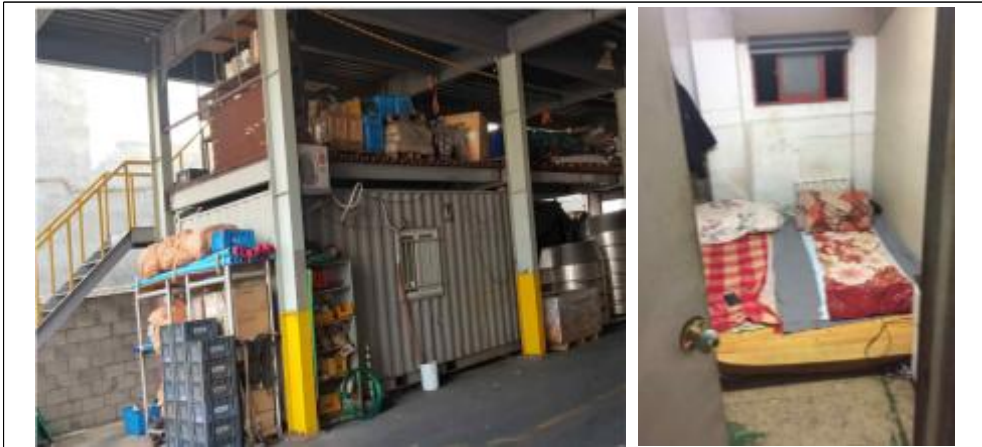
점검 업체	위반 건수	항목별 위반 내역					
		외국인 고용법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산업안전 보건법	남녀 고용 평등법	기타 법령
3,316	7,005	2,620	2,207	175	502	848	653

자료 : 고용노동부(2016),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 이주노동자의 주거조건도 열악함. 이주노동자 조사에 따르면 84.2%가 회사가 제공한 숙소(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기숙사의 50.7%만 주거용 독립건물이

고, 나머지는 작업장 부속 숙박공간이거나 임시가건물(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이었음(국가인권위, 2018)

[그림 5-9]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사례



자료 : 국가인권위(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 2018. 11. 13.

□ 제안 배경

- 이주노동자는 한국 산업을 지탱하는 한 부분이지만 사회적 차별로 인해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인권 보장 차원에서, 건전한 다문화 사회 조성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 서울시는 현재 6개의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요 사업내용은 법률상담, 교육(한국어, 컴퓨터), 의료지원, 문화사업 등임. 법률상담을 넘어서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사업 목표

-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문제 신속 해결을 통한 노동법적 권리 보장
- 이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 제공

□ 사업 내용

- 임금체불,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보상제 시행
 - 6개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

확인된 사건(고용노동관서 체불임금확인서 등)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시가 선지급하고, 체당금 수령 후 환급

- 사업주 대상 인사노무 지원 및 계도
 -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주기적 홍보
 -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최소기준 수립
 - 사업주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주거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주거환경 실태조사
 -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거환경 최소기준 수립 및 시설개선비 지급

□ 연차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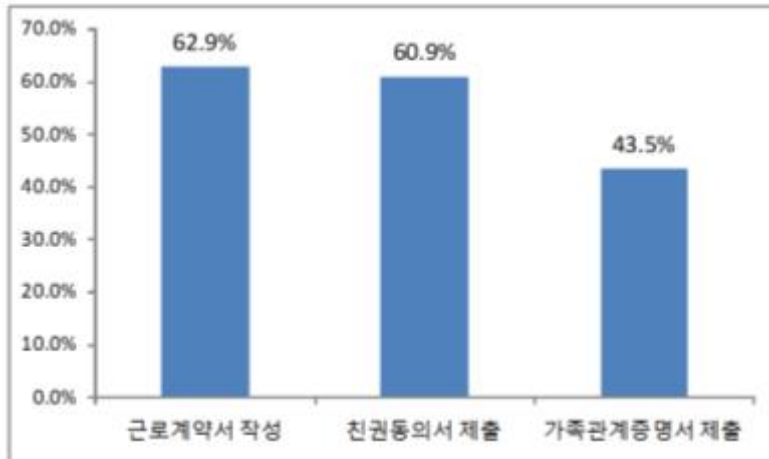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개소)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체불 신고센터 및 체불임금 신속보상제 시행	-	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 운영
인사노무 지원 (개소)	500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주거환경 개선 (소요 비용)	44	실태조사 (1)	주거환경 개선 (10)	주거환경 개선 (10)	주거환경 개선 (10)	주거환경 개선 (10)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우 노동법의 보호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움
 - 실태조사(서울교육청, 2018)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62.9%에 불과했고,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하거나(60.9%),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한 비율(43.5%)도 낮음.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몰라서 요구하지 않았다'가 가장 높은 50.4%를 차지했음

[그림 5-10] 아르바이트 참여시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비율



자료 : 송태수 외(2018),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비율이 47.8%에 달하고, 정해진 일 이외의 업무지시(21.2%), 고객의 욕설(17.9%), 초과수당 미지급(16.1%) 등 다양한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초과수당, 최저임금, 주휴수당, 임금지급 연기 등 임금 관련 문제를 종합하면 경험자 비율이 57%로 나타남

<표 5-3> 청소년 아르바이트시 노동인권 침해 실태

노동인권 침해 유형	유경험 비율
정해진 일 외에 다른 일도 시킴	21.2%
손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음	17.9%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은 적이 있음	16.1%
사장이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함	13.5%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	13.4%
최저임금 이하로 받은 적이 있음	12.4%
일하다가 사고를 당함	9.6%
사장이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음	7.9%
일하다가 성희롱을 당함	6.9%

자료 : 송태수 외(2018),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

- 특성화고 학생도 80.7%가 현장실습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음. 부당한 대우의 유형은 임금체불(34.7%), 과도한 야근(33.7%), 언어폭력(26.7%) 등임(청소년유니온 기자회견 내용, 2017. 11. 19.)

□ 제안 배경

- 청소년 및 특성화고 졸업생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직업경험을 유도하고, 열정페이 등 세대간 착취를 근절해야 함

□ 사업 목표

- 청소년, 특성화고 졸업생 등 취약노동층의 노동법 적용 환경 조성
- 소상공인 등 사용자의 준법의식 제고로 좋은 일터 만들기

□ 사업 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인식개선 홍보
 - 서울시의 공공 매체를 통해 인식 개선 홍보·캠페인
 -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노동법 준수 문화 조성
- 청소년 노동권리의식 증진
 - 교육청과의 협력을 토대로 모든 고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정례화하고 권리의

식 제고

- 개별적 노동권과 함께 노조할 권리 등 집단적 권리의식 양성

○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 지원

- 주로 청소년노동을 활용하는 영세사업장에 노무컨설팅 제공
- 청소년 밀집 노동지역에 대해 현장 출장 상담

○ 당사자 조직화 지원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 등 조직화 지원
- 당사자 조직과 지자체의 정책협의 파트너십 형성

□ 연차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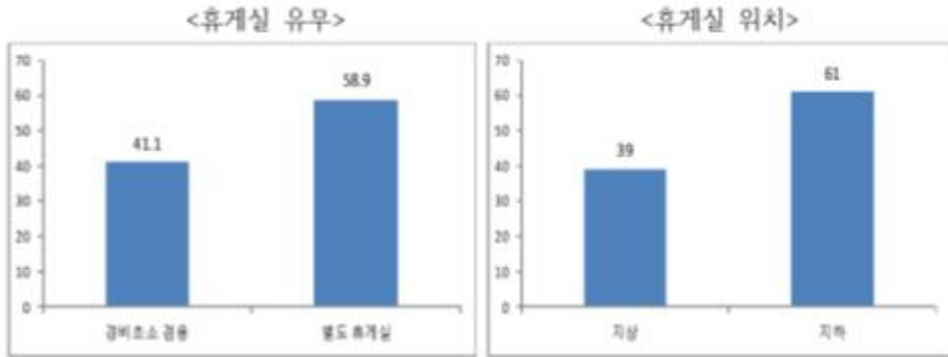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식개선 홍보	-	홍보사업 지속	홍보사업 지속	홍보사업 지속	홍보사업 지속	홍보사업 지속
노동인권 교육	-	교육사업 지속	교육사업 지속	교육사업 지속	교육사업 지속	교육사업 지속
노무컨설팅(개소)	500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조직화 지원	-	조직화 지원	조직화 지원	조직화 지원	조직화 지원	조직화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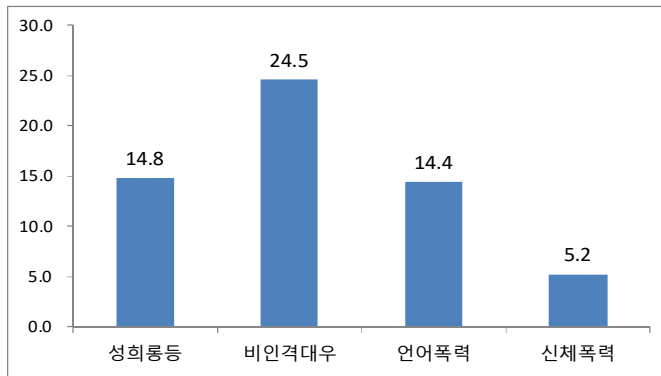
- 아파트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함.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휴게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58.9%에 불과했고, 휴게실이 있더라도 지하에 있는 경우가 61%로 조사됨.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율도 27.2%임.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경험한 비율도 5명 중 1명임(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9)

[그림 5-11]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 유무 및 위치



자료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2019),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그림 5-12] 방문 요양보호사 성희롱 등 경험 비율(%)



자료 : 남우근 외(2018),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노동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자원연구원

- 재가요양보호사, 수도검침원, 가스안전점검원, 방문간호사 등 가정방문노동자의 경우 밀폐된 사적 공간에서 이용자와 단 둘이 있는 경우 성희롱 등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제안 배경

- 1기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추진했던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을 계승,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정방문노동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표적인 취약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함
- 특히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권리보장을 넘어서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조직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사업 목표

- 취약노동자 직종별 지원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 조직화 지원을 통해 해당 정책 수립, 집행 과정에 거버넌스 구성

□ 사업 내용

- 가정방문노동자
 - 방문노동의 취약점인 성희롱 등 인권침해 실태 조사
 - 서비스 이용자 구분 관리, 특정 가구 2인 1조 방문, 이용자 대상 홍보 등 문제 해결 프로세스 구축
-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 아파트 품질평가 기준에 노동지표 비중 확대 및 평가 결과 공시
 -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단기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약
 - 입주자 대표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 휴게실 개선 사업.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의 확대 적용
 - 노동복지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당사자 조직화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가정방문노동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	실태조사	대책수립 및 시행	지속	지속	지속
아파트노동자 휴게실 개선(개소)	200	홍보 및 협력관계 구축	50개소	50개소	50개소	50개소
당사자 조직화 지원	-	자치구센터 조직화지원 사업	지속	지속	지속	지속

□ 현황 및 문제점

- ‘무급노동’은 요리, 청소, 세탁, 집안관리 등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가사노동과 아이들과 가족원을 돌보는 행동, 자원봉사 행동 등이 포함됨. 대표적으로는 가사노동, 무급가족종사자가 우선적인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음
 - * UN의 무급노동 정의 : 가구구성원에 의해 생산되나 시장에 내다팔지 않으며 가족 안이나 가족 밖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 한국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무급노동의 여성화가 두드러짐.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의 남성은 하루 중 무급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10% 내외임에 비해 한국 남성은 3%에 불과함. 돌봄노동 역시 비교대상 서구 남성은 1.6% 내외인데, 한국 남성은 0.8%임. 한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4배의 무급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을 사용함(안미영, 2018)

<표 5-4> 성별 시간분배율(1999~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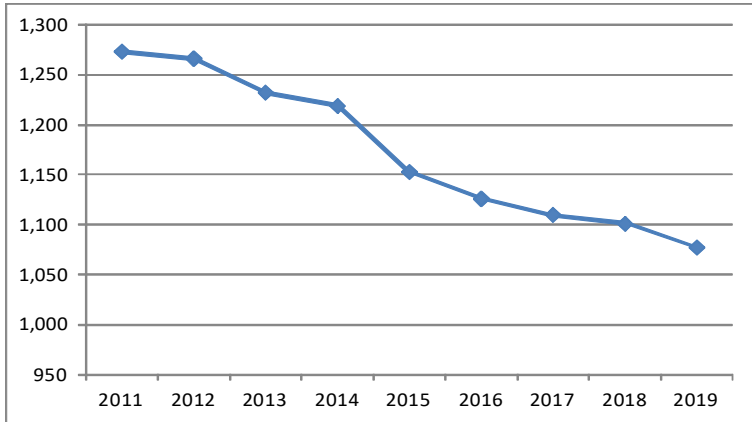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유급노동 또는 학업		무급노동		돌봄노동	
	남	여	남	여	남	여
한국	26.5	15.4	3	13.7	0.8	3.4
독일	17.4	11.3	9.8	15.9	1.4	1.7
스웨덴	20.1	14.8	10	14	1.8	3
영국	20.1	11.9	9.5	16.6	1.6	3.6
미국	20.4	15.1	10.2	14.8	1.6	3.2

자료 : 안미영(2018), 가족 내 무급노동의 불평등과 사회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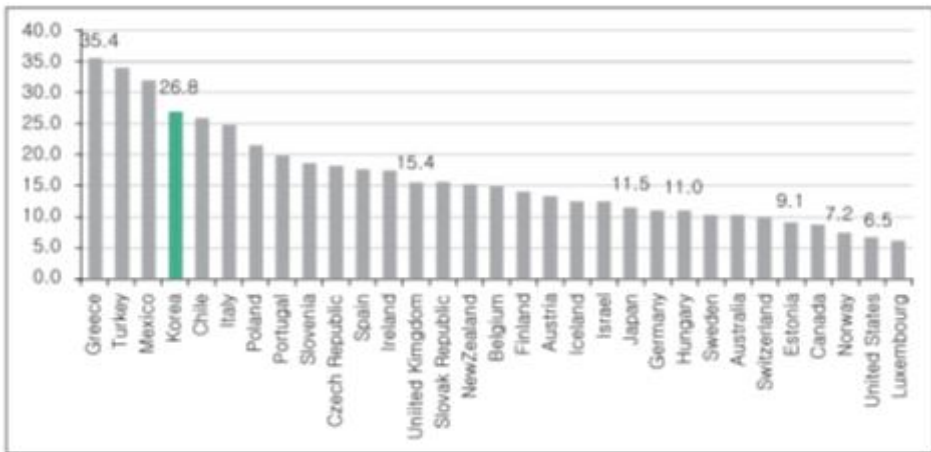
- 통계청 정의에 따르면 ‘무급가족종사자’는 동일가구 가족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일정한 보수없이 조사대상 주간 동안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을 의미함
 - 무급가족종사자 규모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2019년 107만 명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로 존재함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임금노동자가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 16.5%인데 비해 한국은 26.8%로 높음

[그림 5-13] 무급가족종사자 추이 (천명)



자료 :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5-14]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비임금노동자 비율(%)



자료: 유진성(2016),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점 시사점

-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은 여성이고, 저학력층, 장년층, 장시간 노동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의 20.3%가 산재보험제도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조사됨(유진성, 2016)
- 무급가족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수고용 노동자 9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현재 임의가입도 안 됨

< 중앙정부 및 해외 동향 >

- ▶ 정부는 2018년에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제도 적용을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고 있음.
- ▶ 일본은 1965년 특별가입제도를 노재보험법에 포함시키면서 제도화됨. 중소기업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임의가입할 수 있는데, 개별가입은 안 되며 동시에 특별가입해야 함.
- ▶ 독일은 농업의 경우 농민과 가족을 강제적용대상으로 규정함. 농업 이외의 산업분야는 산업별 산재보험조합별로 강제가입 또는 임의가입으로 상이하게 규정함. 적용제외는 아님.
- ▶ 오스트리아는 일반노동자와 유사노동자가 모두 당연가입대상이고, 따라서 무급가족종사자도 당연가입대상임.
- ▶ 스위스는 1984년 재해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자국 내 거주하고 있는 전체 취업자에 대해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함. 다만,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자료 : 오승은(201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 -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 제안 배경

- 그 동안의 노동정책이 근로계약관계나 종속노동을 전제로 노동법적 보호를 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보편적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노동(labor)에서 일(work)로 개념을 확장해서 "일하는 보편시민을 위한 서울시"로 정책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필요
- 이는 고용관계(특수고용처럼 은폐된 고용관계를 포함)로 포괄하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 생활노동 등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일(work)도 사회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정책의 보편화 차원에서 고용관계를 넘어서서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필요
- 남녀 간의 편중된 무급노동은 일·생활 균형을 깨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억제하며, 성평등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따라서 무급노동을 사회적으로 객관화하고 지지체계를 수립해서 지원과 관리의 범위로 포괄하는 것이 필요

□ 사업 목표

- 무급노동의 존재 양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수요 분석
- 무급노동에 대한 상담, 휴가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개정시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 내용

○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 실태조사를 통해 무급노동의 존재 양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수요 분석

○ 휴가 지원

- 무급노동에 대한 휴가 지원제

* 돌봄가족지원사업 참조(어르신복지과)

노인 또는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이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갖고 돌봄 부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가족 상담, 부모 교육, 힐링 여행, 미술치료, 비장애 형제자매 심리 지원, 자조 모임 조직 등 돌봄 가족을 지원.

○ 당사자 관계망 형성

- 성별 불평등을 강화하는 식으로 무급노동이 분배되는 경향에 대해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고 당사자 고충을 드러내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당사자 커뮤니티 형성 지원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내부사업으로 진행함.

○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지원

- 현재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야 가입이 가능함. 고용노동부가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법개정이 되더라도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므로 특수고용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입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따라서 임의가입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함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무급노동 실태조사	-	실태조사 (1)				
휴가지원	32		5	7	9	11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지원	15		법개정 전제	3	5	7

□ 현황 및 문제점

- 고령사회 및 핵가족화로 인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돌봄노동자 규모도 커짐
 - 돌봄서비스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는 반면, 돌봄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지지기반을 마련했으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간병노동자 등은 상대적으로 지원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림 5-1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자료 : 여성가족부

[그림 5-16]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수 및 인정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안 배경

-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종합지원센터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돌봄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기반이 없어서 돌봄노동자 내부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사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돌봄노동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사업 목표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돌봄노동자 간의 사회적 지원 격차 해소 및 통합지원 체계 수립

□ 사업 내용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돌봄노동자 확대 적용

- 2021년까지 수행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2019. 7.)을 2022년부터는 돌봄노동자로 확대해서 적용
- 주요 내용은 ▲ 돌봄노동자 표준노동권리 보장, ▲ 고용안정성 강화, ▲ 신체, 정신적 건강 보장, ▲ 돌봄노동자 사회적 인식 개선, ▲ 좋은 돌봄 확산 및 역량 강화, ▲ 돌봄현장 소통 활성화, ▲ 서비스공급기관 관리감독 강화

○ 돌봄노동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 기존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돌봄노동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서 기존 시설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
-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장기요양요원,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보건의료서비스종사자 등으로 확대
- 복지정책과에 '돌봄노동지원팀'을 신설해서 해당 사업 주관
- ※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업 대상 참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2.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자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돌봄노동자로 사업대상 확대	32	사업모델 개발	5	7	9	11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노동시장의 성별임금격차는 여전히 큼. OECD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4.6%로, OECD 평균인 13.5% 보다 두 배 이상 높았음

[그림 5-17]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각 연도)

□ 제안 배경

- 서울시는 2012년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이라는 정책비전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 민선 7기 정책방향 중 하나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을 표방함
- 성별임금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꼽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은 임신·출산 및 육아부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국미애·임윤옥, 2019)
 - * 경력단절 요인 : 근로조건 38.9%, 자아실현 14.2%, 결혼·출산 13.7%, 가족돌봄 12.9%, 경영악화 9.4%, 기타 10.9%

□ 사업 목표

-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

○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사업 내용

○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 성평등 임금공시제 확대 운영 및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 서울시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체계 컨설팅
- 성평등기업지원조례 제정

○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성평등 노동인권교육 확대
- 공공조달계약을 통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민간 확산

○ 직장맘지원센터 강화

- 고용관계 없는 워킹맘 포괄
- 광역센터 설립, 중장기적으로 '여성노동인권센터'로의 발전 모색
- 노동권익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 강화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직장맘지원센터 강화	27	3	3	6	6	9

2) 정책목표2 : 좋은 일자리 구축

- 서울시 노동정책 2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1차 노동정책을 확대 강화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정책의제를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책목표 2의 '좋은 일자리'(decent work)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임
- 서울시 2차 노동정책 핵심 정책 목표인 '좋은 일자리'는 약 9개 영역으로 제시될 수 있음. 주요 내용은 고용안정, 소득불평등 해소(임금), 노동시간 단축, 사회보장 확대, 노동시장 차별해소(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환경 개선(민간위탁), 교육훈련 등으로 재분류 가능함

□ 제안 배경

- 장시간 노동 해소 위한 전 사회적 문제와 국정과제 수립 정책
 -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2,052시간(201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상태
 - * 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18.5.18.)
- 근로기준법 개정('18)과 서울시 노동시간 단축 공약
 - 2017년 7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상한)과 휴일휴가 확대(1년 미만 유급연차 11일 부여)로 일과 삶의 균형(WLB)을 위한 제도적 변화 추진. 서울시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민선 6기부터 7기까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상황

□ 현황, 문제점

- 52시간 상한제 도입과 노동시간 휴일휴가 제도 확산
 - 서울지역 노동자 10명 중 1명은 1주일에 52시간 노동을 초과(11%)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노동자의 노동시간 만족도는 57.1점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서울시 공공부문 중 민간위탁에서는 예산(총인건비) 문제로 초과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상(휴가, 임금)도 미흡한 상황

[그림 5-18] 서울시 및 광역시도별 주 52시간 초과자 비율(2018년 기준,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2018년 상반기).

- 서울시 노동시간 단축 정책('16년)과 다양한 모델 도입

-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핵심 정책으로 노동시간 단축 제시되었으나, 서울의료원과 신용보증재단 2곳의 시범사업(2016년) 논의 이후, 일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서울복지재단 등)이 진행되는 곳이 있지만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림 5-19] 유럽 지자체 노동시간 단축 실험 (이탈리아, 독일)

이탈리아 보첸 (Bozen)



도나우 시의 시간의 정치 워크숍 참가자(가족과 양육 부문)

- 시간구조 파악, 유연한 시간
- 인간중심적 시간문화 - 시간계획 가이드라인

- ① 10분 안에 어디든지
- ② 아침에는 도시를 학생들에게
- ③ 시민 목요일, 시간정치 대학, 타임코드(보첸의 시간들)
- ④ 시간관측소/시간관리센터 설치

독일 브레멘-베게삭(Bremen-Vegesack)



독일 베를린 인근 할레(Halle)시 Saale구 '시간의 정치' 로고

- 시간과 도시의 질, 프로젝트
- 시민친화적 구청 운영 '시간관리실'
- 일상 전환력 배식 만들기 포럼(협력 네트워크)

- ① 서비스 모임: 근무시간 협상조건 '시민의 날'
- ② 교통 모임: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 ③ 양육 모임: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기기

→ '네트워크링, 협력, 참여 및 소통' 4가지 활동

□ 사업 목표

- 서울시 민간위탁 주4일제 시범사업 통한 일과 삶의 균형(WLB)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의 다양한 모델 사업 운영의 확대 모색

[그림 5-20] 서울시 공공부문 및 민간위탁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실현 로드맵

구분	2020 하반기	2021 상반기	2021 하반기	2022 상반기	2022 하반기
대상	사업장 선정	유형별 진행	유형별 진행	유형별 진행	각 유형 평가
운영	위원회 구성	노동시간 사전 계측	노동시간 계측	노동시간 계측	주요 결과 보고
성과	다양한 모델	실태 파악	중간점검 수정반영	1차 결과 발표	모델 지속 확장 검토

주 : 1) 1주일 35시간 근무형태 모델(3일 9시간, 1일 8시간, 인력 추가형→임금보전 無, 미추가형 → 임금보전 有)
 1주일 40시간 근무형태 모델(1일 10시간, 인력 추가형/임금보전 無, 미추가형/임금보전 有) 2개 모델 운영
 2) 운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법정연차휴가 등 준수와 '출·퇴근 기록 시스템'과 '노동시간 계좌제' 도입

□ 사업 내용

-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 주4일제 시범 사업 추진
 - 서울시 민간위탁 유형별(시설, 사무)-서비스형태별(복지, 여성, 청년, 보건, 문화, 교육) 주4일제 도입 6개 시범 사업 추진, 이후 확장 모델 검토
 - 가칭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실행위원회’ 구성 후 전후 과정 모니터링
- 주4일제 운영 시작 전후 과정 효과성 분석 진행
 - 주4일 운영 사업 ‘시작 이전(1단계)-중간(2단계)-종료 시점(3단계)’ 각기 노동시간 계측
 - 주4일제 운영 과정에서 업무 서비스 제공, 노동시간과 삶의 질,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효과성 분석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건)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1. 시범 사업장 (분야 건수)	12	제도설계	6	6	-	-
2. 노동시간 계측* (회수: 반기별)	4		2	2	-	-
3. 변화 모니터링** (회수: 분기별)	8		4	4	-	-

주 : * 각 사업장별 시행 전, 중간, 완료시점 노동시간(시간, 휴일휴가 등) 조사

** 시민서비스, 업무 만족도, 삶의 질 등 조사·모니터링

□ 제안 배경

- 노동시장 임금차별과 격차 문제 등 불평등 발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나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가장 높은 상황. 국제노동기구(ILO)와 근로기준법(균등대우), 국가인권위원회(1조 2항) 등에 있어서도 차별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나, 임금차별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위한 서울시 성별임금공시제
 - 서울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위해 2019년 공공부문 성별임금공시제(서울시 여성정책과) 시행. 2020년부터 「2기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300인 이상 공공과 민간부문 대기업 사업장 성별·고용형태별 정부 임금 제출

□ 현황, 문제점

- 노동시장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차별과 격차
 - 2019년 8월 기준(시간당 임금) 남성 100일 경우 여성 66수준, 정규직 100일 때 비정규직 54.9, 남성 정규직 100일 경우 여성 비정규직 43.3 수준으로 임금 격차 확인>(*2019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9.8)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공시제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25.5%이며, 기본급 22.2%, 제수당 28.2%의 격차가 확인됨. 성별임금 격차가 큰 곳은 서울연구원(46.4%)이며, 가장 임금격차가 적은 곳은 공공의료재단(1.74%)이었음(서울시 여성정책과).

-
- 국제노동기구(ILO) 동일임금 동일노동 선언
 - 1919년 국제노동현장: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남녀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 1951년 국제노동기구(ILO) 제100호 협약에서 원칙 채택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 미국과 유럽
 - 미국 『균등임금법』(Equal Pay Act of 1963)
 - 독일(일반평등), 노르웨이(평등지위) ‘법제화’(아이슬란드 임금/급여명세서 제출)

□ 사업 목표

- 서울시 임금공시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서울시 저임금 비정규직 대표 직군 표준임금체계 구축

□ 사업 내용

- 서울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 - 임금 데이터 베이스 구축
 - 동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공공과 민간위탁 사업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시행을 위한 모델 구축(임금 DB 구축 → 정기적 임금실태분석 : 서울시 ‘직무-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공시)
- 서울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 - 직군직종별 표준임금 체계 구축
 -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과 저임금 직종·사업장의 비정규직 다수 고용 직업군(직종별 노동시장 특성 반영 - 전문 자격증 소유 직종, 각종 ‘센터’ 활동가 등) 시범 시행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건)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1. 임금DB 구축 (분야 건수)	4	설계	1	1	1	1
2. 임금공시 (회수: 분기별)	분기별		4	4	4	4
3. 표준임금 체계 제시 (개: 직종)*	초기 3개 중기 6개	설계	3	3	6	6

주 :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한 표준임금 체계는 초기 3개 직종, 중기 6개 직종별 표준임금 제시

□ 제안 배경

-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 5인~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회적 안정감 사각지대 존재. 외국과 달리 사회보험 대상 누락(운영상)과 제도적 사각지대 존재
-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특성에서 보완
 - 최근 미취업 취준생,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 등 노동시장에서 사회보험 미가입(적용 제외) 집단의 증가. 불안정 취약층(특고, 플랫폼 등)의 사회 안전망 사업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현황, 문제점

- 저임금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발생
 - 국내 임금노동자(472만 8천명)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적용률 미흡한 상황(비정규직 178만 7천명 37.8%). 2018년 기준 사회보험 적용률 33%~42%, 유급휴가 25% 수준. 서울 고용보험 적용률 71.6%, 건강보험 74.8%, 국민연금 68.8% 수준임(통계청).

<표 5-5> 사회보험 가입률

조사 주체	직종/고용형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노동 조사 (2018)	3개 단순 평균	19.1%	35.8%	49.0%
	°릭서비스	19.6%	34.0%	48.0%
	°대리운전	27.5%	53.9%	71.6%
	°음식배달	10.2%	19.6%	27.5%
통계청 경활조사 (2018.6)	호출근로	8.1%	0.5%	0.6%
	특수고용	8.2%	6.1%	6.5%
	기간제	40.0%	33.0%	41.9%
	정규직	84.15	95.4%	98.8%

자료 : 임금노동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2018.8) 재분석
플랫폼노동자 '한국고용정보원 원자료(2018) 재분석

○ 사회보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미흡

- 국내 불안정노동 및 영세사업장, 저임금노동자 등 취약 집단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이 필요한 상황. 그러나 정부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사회보험’(10인 미만 사업장 & 215만원 미만 종사자)의 정부 지원 제도 비적용율(20%~30%) 발생

* 지자체 시행 사업 : 강원도(‘19), 충청남도(‘19) → 사업주 부담 지원
 경상남도(‘19) → 노동자 1인당 월5만원 지원

<표 5-6>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현황 (2012~2020)

구 분	지원 보수	지원 수준
’12년	월보수 35~125만원 미만	▲ 35만원~105만원 미만: 1/2지원 ▲ 105만원~125만원 미만: 1/3지원
’19년	월보수 21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1~4인(5~9인) 90%(80%), 舊가입자 40%
’20년	월보수 215만원 미만	

자료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http://www.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 사업 목표

- 서울지역 두루누리사회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지원(정부 90 + 서울시 10)
- 서울지역 두루누리사회보험 이외 2개 사회보험 지원

□ 사업 내용

- 서울지역 영세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공단 협약)
 - 정부의 기존 두루누리사회보험 적용 사업장의 노사 각 당사자 부담금 시 차원의 보험료 추가 지원(1단계)
 - 기존 두루누리사회보험(고용, 국민연금) 이외에 2가지 사회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추가 지원(2단계)
- * 정부 사회보험 지원제도 :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실업 크레딧, 특수고용 산재 참조

<표 5-7> 서울지역 사회보험 지원(안)

	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	서울형1	서울형2
고용보험	노사 분담	정부 90%	서울 10%	
국민연금	노사 분담	정부 90%	서울 10%	
건강보험	노사 분담			서울시
산재보험	사용자	사용자		서울시

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2021년부터 지원 중단)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 개, 명)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1. 두리누리1 (지원 %)	-	제도설계	20	20	20	20
2. 두리누리2* (지원 %)	-	제도설계	50	50	50	50
3. 취약층 시민보험** (직군 개수)	-	-	-	-	-	-
4. 취약층 병·휴가*** (인원)	14,000	-	2000	3000	4000	5000

주 : * 두리누리 사회보험 항목이 아닌 2개 사회보험(건강, 산재)의 50% 서울시 지원

** 사회보험 사각지대 취약층 별도 사회보험 제도적 지원(지역 임의가입 가입 지원)

*** 서울시 유급병가와 휴가비 지원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적용 인원 증가(할당)

□ 제안 배경

- 정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조응 정책 필요
 - 2019년 정부의 공공부문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발표(2019.3, 2019.12)에 맞추어 서울시에서도 민간위탁 시설 노동환경 문제 검토 필요
 - * 정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위탁 사무 체계적 관리(민간위탁관리위 설치),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고용 불안 해소(고용승계 유지), 체계적 임금관리 등 치우개선, 관리감독 강화 등
- 서울시 민간위탁 시설의 노동환경 개선 문제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과정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가이드라인은 존재했으나, 노동환경 및 노동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 한 상황.
 -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종합개선 대책(‘14.3)과 혁신계획 대책(16.6)

<표 5-8> 공공영역과 민간위탁 영역 구분 - 직접고용, 간접고용, 민간위탁

	공공영역		준 민간영역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민간위탁
고용주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민간업체
사용주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근무장소	공공기관 사업장	공공기관 사업장	수탁기관 책임시설
업무내용	행정사무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병원·복지·청소년 센터 등
법률관계	직접 고용관계	도급(파견용역)	도급, 위임

□ 현황, 문제점

- 서울시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서울시 약 380여개 민간위탁 시설(18,000여명) 고용 ‘안정성’(stability)과 산업 노동안전 및 노동환경 ‘안전성’(security)의 취약성을 노동단체 제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한계
 - 시 수탁기관 공고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명시, 수탁기관 적격심사 시 고용의 유지 및 승계, 정규직 전환 등에 10점 이상의 배점 부여 수준 적시되어 있으나 미인지, 미시행 기관 존재

□ 사업 목표

-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조사
-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 유형별 노동환경 개선 지원 사업

□ 사업 내용

-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 종합계획 수립
 - 민간위탁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대책, 실태조사²⁾
 - 민간위탁 사업장 운영위원회 노동자 참여제도 의무화
 -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의 질 개선(초단시간 고용 지양 등)

<서울시 민간위탁 고용 가이드라인 검토>

1.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및 고용유지·승계 의무화
 - △ 평가 항목 : 사서 등 고용안정성 의무 반영 및 하한선 설정 (우수탁 심사평가 배점 반영)
 - △ 표준협약서 : 고용유지·승계 '노력' 규정을 '의무'로 강화
 - △ 제재 조치 : 고용유지·승계 의무 불이행시 제재 조항 추가
2. 상시지속업무 초단기 고용 지양
 - △ 고용 형태 :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주말, 야간 등) 업무 지양
 - △ 근무 형태 : '초단기 시간제' 인력, '시간제' 인력 전환 예산 설정 (사회보험, 주휴수당 지급)
 - △ 복리 제도 : 시간제 비정규직의 차별 및 처우개선 사항 점검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수, 회)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1.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제도설계	1	-	-	-
2. 운영위원회 참여 의무화(기관 수)	전 기관	-	386	396	386	386
3. 가이드라인 고지 이행실적 제출**	전 기관	-	1	386	386	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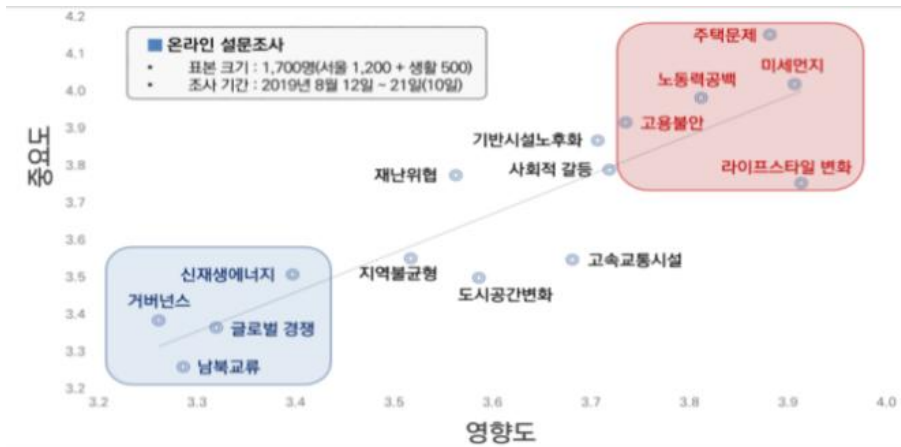
주 : * 종합계획 수립 이후, 가이드라인 고지 이후 민간위탁 시설 각 기관별 이행실적 제출/모니터링

2) 영국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에서는 2019년 6월부터 고용주에게 '최소 4주 전 근무(shifts) 공지' 및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생활노동시간(Living Hours) 캠페인 진행하고 있음. BBC(2019.6.12), "Firms face pressure to improve zero-hours contracts", <https://www.bbc.co.uk/news/business-48593588>

□ 제안 배경

- 서울시는 2012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기계약(공무직)의 일반직 전환(정규직) 정책이 진행 중. 특히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규직 전환 진행 과정
-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향후 미래 이슈에 ‘고용불안’ 문제가 정책 중요도와 영향도에 있어서 상위 4개 정책 의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림 5-21]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미래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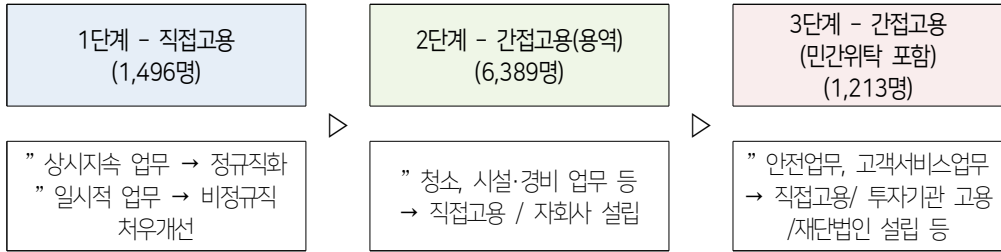
자료 : 서울연구원(2019), 서울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현황, 문제점

-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국회(2017년), 광주광역시(2017~2018년), 문재인 정부(2017)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되었으며, 2019년 현재 약 19만명이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추진 중임
- 서울시는 지난 7년 동안 약 1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다만,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추가 발군)하고, 정책 효과성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단계별 정규직화 추진 현황

[그림 5-22] 서울시 단계별 정규직화 추진 현황



(2) 연도별 정규직화 추진 현황

[그림 5-23] 연도별 정규직화 추진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직접고용 (1,369명)	간접고용 청 소 (4,245명)	간접고용 시설·경비 (1,191명)	[직접] 사무 등 (127명) [간접] 안전 등 (1,614명)	[간접] 안전 등 (552명)	120콜센터 430명 수도감침교체 (460명)	사회서비스원 500명 tbs교통방송 200명
누계 : 1,369명	누계 : 5,614명	누계 : 6,805명	누계 : 8,546명	누계 : 9,098명	누계 : 9,988명	누계 : 명

□ 사업 목표

- 서울시 비정규직의 지속적 정규직 전환(추가 발굴)
-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효과성 및 사회적 의미 도출

□ 사업 내용

-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속화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의 추가 발굴(사각지대)
 - 서울시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모색
-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효과성 및 사회적 의미
 - 민선 5,6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효과성
 - 고용안정성, 노동조건, 작업환경, 직장 만족, 서비스 등
 - 민선 5,6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사회적 의미
 - 개인의 삶과 가치관, 사회관계 및 의식 변화 등

□ 제안 배경

- 서울시는 낮은 최저임금을 견인하고,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광역시 최초로 생활임금제 정책을 시행(위원회 구성)하고 있음
- 서울시 생활임금을 통한 저임금 해소라는 정책 목표 통해 좋은 일자리 실현(약 1만명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시설 중 매칭(시비 50% + 구비 50%) 시설이나 보조금 지원 시설 등에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표 5-9>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추이 및 적용대상 (조례)

지역	생활임금 금액						적용 대상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시 소속	출자 출연	민간 위탁	공사 용역	하수 급인
평균	6,917	7,248	7,726	8,777	9,623	10,112					
서울	6,687	7,145	8,197	9,211	10,148	10,523	○	○	○	○	○
부산	-	-	-	8,446	9,894	10,186	○	○	○		
인천	-	-	6,880	8,600	9,600	10,000	○	○			
광주	7,254	7,839	8,410	8,840	10,090	10,353	○	○	○		
대전	-	7,055	7,630	9,036	9,600	10,050	○	○			
세종	-	7,170	7,540	7,920	8,530	9,378	○	○			
경기	6,810	7,030	7,910	8,900	10,000	10,364	○	○	○	○	
강원	-	-	7,539	8,568	9,011	10,010	○	○			
충남	-	-	7,764	8,935	9,700	10,050	○	○	○		
전북	-	-	7,700	8,600	9,200	10,050	○	○			
전남	-	7,248	7,688	9,370	10,000	10,380	○	○	○		
제주	-	-	8,420	8,900	9,700	10,000	○	○	○		

□ 사업 목표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 서울시 생활임금 표준화 모델 구축(시+자치구)

□ 사업 내용

-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효과성 확보
 - 기존 공공부문 생활임금 적용대상 만족도 및 개선방향 실태조사
 - 서울지역, 자치구 생활임금 기준(산입범위 등) 통일화 작업 진행
-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확대 - 민간위탁, 민간부문 (*조례 적용대상)
 - 1단계 생활임금 확대
 - 서울시 민간위탁 매칭 시설 생활임금 적용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의 보조금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 검토
 - * 영화, 연극, 패션, 등불 축제 등
 - 2단계 생활임금 확대
 -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체 등으로 확대
 - 서울지역 공공성을 가진 민간기관과 연계 통한 범위 확대

[그림 5-24]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확산 단계별 검토 대상

단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적용 대상	고용형태	예시	적용 대상	고용형태	예시
영역1	민간위탁	무기계약 비정규직	정신건강 복지센터	제3섹터	직접고용 비정규직	사회적 기업
영역2	국시비 매칭 보조금 사업	기간제 시간제	축제/대회 영화제	서울시 강소 기업	직접고용 비정규직	강소 기업
영역3	자치구 민간위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25개 구청 위탁시설	준공공적 사업장	직접고용 비정규직	법률, 연구기관 대학/은행

※ 참조

<표 5-10> 서울지역 기초지자체 생활임금 및 적용대상 현황 (2019.11.)

자치구	생활임금(시급, 원)					산업범위 : ① 기본급 ② 교통비 ③ 식대 ④ 상여금 ⑤ 가족수당 ⑥ 자격수당 ⑦ 복지포인트 ⑧ 기타 고정수당	적용대상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직접 고용	출자 출연	위탁 용역	하수급
서울시	7,145	8,197	9,211	10,148	10,523	①+②+③+⑥+⑧	○	○	○	×
강남구	미시행			9,990	10,523	①+②+③+④+⑥+⑦+⑧	○	○	×	×
강동구	7,013	8,197	9,211	10,140	10,520	①+②+③+⑧	○	○	×	×
강북구	7,130	7,767	9,211	10,148	10,523	①+②+③+④+⑤+⑥+⑦+⑧	○	○	○	×
강서구	6,934	7,800	9,210	10,040	10,523	①+②+③+④+⑥+⑧	○	○	○	○
관악구	7,145	7,810	9,010	10,042	10,523	①+②+③+⑥+⑧	○	○	○	○
광진구	7,200	7,810	9,211	10,148	10,523	①+②+③+④+⑤+⑥+⑦+⑧	○	○	○	×
구로구	7,368	7,720	9,060	9,980	10,523	①+②+③+⑥+⑧	○	○	○	○
금천구	7,239	8,197	9,211	9,934	10,307	①+②+③+④+⑤+⑥+⑧	○	○	○	×
노원구	7,370	7,750	8,140	8,980	10,523	①+②+③+④+⑤+⑥+⑦+⑧	○	○	○	○
도봉구	7,130	7,767	9,211	10,041	10,523	①+②+③+④+⑥+⑧	○	○	○	×
동대문구	7,236	7,817	9,211	10,148	10,523	①+②+③+④+⑤+⑥+⑧	○	○	○	×
동작구	7,185	8,197	9,211	10,148	10,523	①+③+⑧	○	○	○	×
마포구	7,145	8,197	9,211	10,148	10,523	①+②+③+④+⑤+⑦+⑧	○	○	○	○
서대문구	7,200	7,720	8,740	10,000	10,310	①+②+③+④+⑥	○	○	○	○
서초구	미시행		9,110	10,040	10,523	①+②+③+④+⑥+⑧	○	○	○	×
성동구	7,600	8,110	9,211	10,148	10,307	①+②+③+⑧	○	○	○	×
성북구	7,585	8,048	9,255	10,113	10,307	①+②+③+⑥+⑧	○	○	○	○
송파구	미시행	7,513	8,163	10,000	10,307	①+②+③	○	○	○	×
양천구	7,145	7,823	8,931	9,936	10,307	①+②+③	○	○	○	×
영등포구	7,145	7,818	9,094	10,148	10,523	①+②+③+⑤+⑥+⑧	○	○	○	×
용산구	7,020	7,709	9,070	10,140	10,520	①+②+③	○	○	○	×
은평구	7,180	7,700	9,059	10,000	10,310	①+②+③	○	○	○	×
종로구	7,145	7,747	8,501	9,428	10,523	①+②+③	○	○	○	×
중구	미시행		8,170	9,976	10,523	①+②+③+⑥+⑧	○	○	○	×
종량구	미시행			9,900	10,310	①+②+③+④+⑤+⑧	○	○	○	×

□ 제안 배경

- 현재 국내 비정규직의 유급교육훈련 적용비율은 38.5%(정규직 69%)에 불과하기에, 미취업자 및 비임금노동자 평생교육훈련 보장 필요함. 임금노동자(472만 8천명)에 비해 비임금노동자(110만 9천명) 교육훈련 적용의 사각지대 60%~76% (일, 시간, 부족)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
- 서울시 민선 5,6기 과정에서 노동자 교육훈련제도는 상대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북유럽 및 서유럽(독일 브레멘, 오스트리아 빈) 해외 지방정부 등에서는 노동자 교육훈련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
- 서울시에서는 노동자 직업훈련과 숙련형성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노동자 교육훈련 미적용 집단(미취업자, 니트 청년 등)에 대한 사업 모색 필요

[그림 5-25] 취약계층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

비정규직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개인적으로 바빠서	너무 비싸서	고용주 지원 부족해서	합계
한국	53.94	6.70	13.54	2.04	76.26
OECD	27.33	11.44	20.37	8.39	67.53
고령자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개인적으로 바빠서	너무 비싸서	고용주 지원 부족해서	합계
한국	33.97	11.58	12.01	2.38	59.94
OECD	18.80	15.60	13.06	3.87	51.38

자료 : OECD 2019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19)

□ 사업 목표

- 서울지역 미취업, 불안정노동자 교육훈련제도 모색
- 서울지역 직업훈련 계좌제(가칭) 사업 통한 노동교육 활성화

□ 사업 내용

- 서울지역 미취업, 불안정 노동자 교육훈련제도
 - 서울시 기술교육원(권역별 기술교육원)에 노동자 교육훈련 모델

- 미취업, 불안정노동자 유급 교육훈련 사업 프로그램
- 서울지역 직업훈련 계좌제 사업 모색
 - 프랑스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는 직업훈련계좌제 등 검토 [참고: 프랑스 CPA]
 -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집단에 직업훈련 계좌 설정, 교육훈련 사업

[사례1] 프랑스 자기활동계좌(CPA) 3가지 형태 (2014년, 2016년 통합 시행)

- (1) 개인별 직업훈련계좌(CPF)
 - : 정규직 총 150시간, 비정규직 총 400시간 적립 ⇔ 2019년 500유로
- (2) 시민활동계좌(CEC)
 - : 시민단체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참여 활동에 대해 총 60시간까지 적립
- (3) 개인별 위험예방계좌(C2P)
 - : 장애인, 취약층 등

[사례2] 오스트리아 빈 '노동지원센터'(Arbeitsmarktservice) 직업훈련

- (1) 여성비율이 낮은 업종의 직업훈련과정 여성
- (2) 불이익을 받는 직업훈련 구직자
- (3) 직업훈련기간이 연장된 직업훈련생

3) 정책목표3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실현

-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기존의 1차 노동정책을 확대 강화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정책의제를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노동안전·보건영역의 정책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 제시되었음
-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산업노동안전보건 분야는 산안법 전면 개정 공표(2020.1)와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관련 조례(2020.1) 시행과 맞물려 정책과 사업이 제시되었음
- 노동안전 분야는 종합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노동안전조사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과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산업특성을 고려한 사업(도심 제조업, 서비스 및 공공부문)과 영역(취약층, 새로운 분야)을 제시했음

□ 제안 배경

○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의 노동의제 부각

- 국제노동기구(ILO)와 산안법 전면 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및 서울시 조례 취지(2020.1.9) 고려하여,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 건강, 보건 향상 위한 노동안전종합계획과 거버넌스 구축 필요

□ 현황, 문제점

○ 국제적으로 심각한 한국 산업재해 문제

- 한국은 OECD 회원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중대 재해율 포함)이며, 업무상 사고질병과 연동되어 하루에 5명 이상 사망자(연간 1,000명대)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상 재해는 하청노동자 비율이 높은 상황

○ 서울지역 산업재해 발생 건수 전국 평균 이상 수준

- 2019년 상반기 동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상 산재는 7,113명(사망 126명)으로, 전년도 동시기 6,863명(사망 112명)에 비해 높은 상황

〈표 5-11〉 고용노동부 지청별 산업재해 현황 (2019.1~6, 단위 : 명, %, ‰, ‰p)

구 분	2019. 1~6월			전년 동기			증 감 율	
	노동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 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 만인율)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 만인율)
총 계	18,603,549	51,659	0.28	18,651,299	48,125	0.26	7.34	7.69
		1,115	0.60		1,073	0.58	3.91	3.45
서울청	4,452,190	7,113	0.16	4,367,339	6,863	0.16	3.64	0.00
		125	0.28		112	0.26	11.61	7.69
중부청	5,890,355	18,637	0.32	5,827,284	17,448	0.30	6.81	6.67
		462	0.78		434	0.74	6.45	5.41
부산청	2,698,167	8,768	0.32	2,822,051	8,334	0.30	5.21	6.67
		153	0.57		144	0.51	6.25	11.76
대구청	1,638,271	4,916	0.30	1,683,655	4,498	0.27	9.29	11.11
		119	0.73		113	0.67	5.31	8.96
광주청	1,873,139	5,966	0.32	1,899,532	5,374	0.28	11.02	14.29
		107	0.57		112	0.59	-4.46	-3.39
대전청	2,051,428	6,259	0.31	2,051,438	5,608	0.27	11.61	14.81
		149	0.73		158	0.77	-5.70	-5.19

자료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청구 자료(2019.10)

- 서울시 산업재해 중심의 정책에서 확대강화 정책 전환
 - 서울시는 그간 해당 조례와 정책이 부재했던 시기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전환 대응(위험의 외주화)에 초점이 있었고, 감정노동 조례와 정책 중심

<표 5-12> 노동안전보건 분야 1차, 2차 노동정책

	1차 노동정책				2차 노동정책			
	조례	정책	사업	거버넌스	조례	정책	사업	거버넌스
산업노동안전	×	×	×	×	○	○	○	○
감정노동	○	○	○	○	○	○	○	○
직장 내 괴롭힘	×	×	×	×	○	○	○	○
기후환경	×	×	×	×	△	○	○	△

□ 사업 목표

- 서울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구축(종합계획, 시스템)
- 서울시 노동안전분야 실태조사, 교육 및 모니터링

□ 사업 내용

- 서울시 노동안전종합계획과 공공부문 시스템 구축
 - 서울형 노동안전종합계획 수립
 - 노동안전자문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안전조사관 등 지속 가능하고 실효적인 시스템 구축(* 팀 명칭 변경 : 노동안전팀)
 -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7485호, 2020.1.9.)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강화 및 정기적 실태조사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건)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1.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제도설계	1	-	-	-
2. 노동안전보건자문위 구성* (회수)	분기별		4	4	4	4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교육(기관 수)**	시 산하기관		26	26	26	26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4. 노동안전지표, 매뉴얼 및 모니터링***	1차 시 산하기관 2차 민간위탁기관	1	26	26	386	386
5. 노동안전 교육****	1차 시 산하기관 2차 민간위탁기관		26	386	386	386

주 : *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 자문심의 기구 성격(분기별 운영)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 교육은 서울시 산하기관 대상으로 1차 진행하고, 인원은 기관당 상시 종사자 수 인원에 비례하여 할당을 원칙으로 진행(100명 이하 1명, 100명 이상 2명, 300명 이상 3명, 1000명 이상 5명 등의 기준)

*** 서울형 '노동안전' 지표 및 매뉴얼 통해 현장에서 예방적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 노동안전교육은 공공기관(2021) 시행 이후, 2022년부터 민간위탁 전면 시행(1년 1회)을 목표로 진행

□ 제안 배경

- 노동정책의 산업안전보건영역 강화
 -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 산업안전보건법(2019)에서는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법률이 근로기준법(76조의 3)에 시행
- 서울시 산업안전 공약 및 조례 시행
 - 서울시는 민선 7기 산업안전노동 공약 수립과 조례(산업노동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각 2020.1) 시행으로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과 다양한 고용형태에 일의 미래가 불러 올 산업노동안전보건 대응 필요
 -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7450호, 2020.1.9)

□ 현황,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영역의 변화하는 상황 반영 제한적
 - 산업노동안전보건 영역은 기술 기후변화 산업구조 다양한 고용형태와 관련된 괴롭힘 스트레스 디지털 건강 등 변화하는 산업재해 영역의 사회심리학적 위험요인 포함되지 못한 상황이고 이를 반영한 실태조사도 부재한 상황
- 서울지역 직장 내 괴롭힘 비율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법’ 시행(근로기준법 76조) 이후 서울지역 괴롭힘 234건(32%)으로 타 지역(부산 14.2%/93건, 대전 72건/11%)에 비해 높은 상황임(고용노동부, 2020년 업무보고 자료)

□ 사업 목표

- 서울시 ‘새로운 노동안전 영역’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
- 서울시 감정노동 + 직장 괴롭힘 영역으로 감정노동 정책 확장

□ 사업 내용

- 산업과 기술변화 및 고용 다변화 반영 - 노동안전 영역 확대
 - 기술발전(디지털 트라우마), 기후변화(폭염, 폭한, 미세먼지 등), 산업구조(서비스

산업), 다양한 고용형태(플랫폼, 프리랜서 등) 영역별 실태조사 후 대책 수립(위험요인 평가, 과제 등)

- 산업과 기술변화 및 고용 다변화 속에서의 작업증지권 모델 개발
 - 서울시 2차 감정노동종합계획 이후 2020년 2기 종합계획 수립과 맞물려 변화하는 정책 영역(직장 괴롭힘) 추가
 - 서울시 2기 노동정책 기후 환경 변화 요인 반영 작업증지권 지표 수립 및 작업장 반영***
 - ① 폭염 지표 : 영상 39도 이상 폭염 시 1시간 휴게시간 (작업증지)
 - ② 폭한 지표 : 영하 10도 이하 폭한 시 1시간 휴게시간 (작업증지)
 - ③ 미세먼지 지표 : 기준치 나뉘 $75\mu\text{g}/\text{m}^3$ 이상 발표시 1시간 휴게시간 (작업증지)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건)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1. 분야별 실태조사* (건수)	27	3	5	5	7	7
2. 직장 괴롭힘 점검 (기관 수)**	시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종합계획	26 386	26 386	26 386	26 386
3. 기후환경 노동안전 지표수립***	-	제도설계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주 : * 분야별 산업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는 매년 일정 업종·직종·현장을 선정하여 진행

** 직장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전면 시행을 고려하여, 산하기관과 민간위탁 동시 적용

□ 제안 배경

- 공공부문 공공계약 및 조달 과정 노동인 지적 계약 필요
 - 정부(중앙·지방)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매년 다양한 공공계약·조달이 진행되고 있으나, 계약업체의 노동인권 지표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일부)민간기업 중 헌법적 권리를 위반(위법불법)하거나, 무시하는 반노동인권적 기업들이 존재. 이들 기업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 사업에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

<표 5-13> 해외 공공계약 협약과 지방정부 정책개입 사례

국제기구의 공공계약, 공공조달 정책	1. 국제노동기구(ILO) “공공계약에서 노동조항에 관한 협약(1949년 제94호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Labor Clauses in Public Contracts 2. 유럽연합(EU) “공공조달에 관한 입법지침(Directive 2004/18/EC)”
독일 브레멘 공공계약 사업장 최저임금 감독 과정	가. 공공계약기관의 위탁신고 : 신고 후 자동으로 최저임금특별위원회에 발송(위탁내용, 위탁기관, 장소, 기간, 수입기업, 계약액수 등 기재) 나. 최저임금특별위원회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감독시행 : 주로 건물청소, 건축, 안전요원, 정원관리, 이사업체 등 다. 공공계약기관은 직접 감독하거나 또는 제3기관에 감독(변호사, 건축사 등)을 의뢰. 보통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됨 라. 일반적으로 두 명의 감독관이 사전 통보 없이 현장에서 조사함 마.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업무의 종류, 시간당 수당, 시간외 추가수당 지급여부 등의 질문조사 바. 근로계약서, 임금장부, 위탁계약서를 비롯한 그 밖의 필요한 증명서 제출 요청 사. 위반사항 없을 시 감독 종료.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공공계약기관에 신고함 아. 적발 시 공공계약기관은 수탁기업에 민사상 제재를 가하고 수탁기업은 향후 2년간 브레멘에서 공공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이미 계약이 진행되었더라도 공공계약기관에 의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함

□ 현황, 문제점

- 법률 위반기업의 공공계약·조달 참여 제한 정책 미반영
 - 법률 위반한 기업의 공공계약 및 조달 제한 규정(건설 입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일부 기업의 참여가 언론 통해 확인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입찰 제약(2년 이내)

○ 서울시 공공계약과정에서 법률 위반 기업의 규제 미흡

- 현재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의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산업재해)이 모니터링되지 못하여 입찰 참가 사후적으로 언론에서 제기

* 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후속조치(2019.3.19.)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 중대재해>

가. 사망자 수 따른 건설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적용

△2명 이상~6명 미만, 1년 △6명 이상~10명 미만, 1년6개월 △10명 이상 2년

나. 제재대상 사망자 수 따른 적용 구간

△6개월(2명 이상~6명 미만) △1년(6명 이상~10명 미만) △1년 6개월(10명 이상)

□ 사업 목표

○ 서울시 공공계약·조달 사업의 산업안전보건 영역 강화

○ 서울시 공공계약·조달 사업의 노동안전조례 통한 모니터링 시행

□ 사업 내용

○ 서울시 공공계약·조달 사업의 노동안전보건 위반 사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시·산하 공공기관과의 계약·조달, 보조금 사업 2년 참가 제한 자격 공표

- 시·산하 공공기관과의 계약·조달, 보조금 등 사업체 입찰 서류 의무 제시

* 산업재해 유발업체 입찰참가제한기간 2년(국가계약 시행규칙 10조2항)

○ 서울시 공공계약·조달 사업 과정에서의 노동안전 지표 신인도 반영

- 시·산하기관 발주 공사,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노동안전 반영(조례)

- 시·산하기관과의 계약·조달, 보조금 등 사업체 입찰 서류 신인도 가감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건)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1. 산재유발업체 공시	-	제도설계	1	1	1	1
2. 공공계약 신인도 반영	-	제도설계	1	1	1	1
3. 정기적 모니터링	-	-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 제안 배경

- 산업구조 변화 특성에 존치하는 도심제조업 문제
 -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제조업과 도심형 제조업은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곳에서의 산업안전 영역이 사전 예방과 사후적 관리 필요성 제기
- 서울지역의 도심형 제조업의 노동환경 사각지대
 - 도심형 제조업(의류봉제, 귀금속, 인쇄, 기계, 신발제조업 등)의 작업환경이나 제도적 지원 등은 간헐적으로 일부가 진행된 측면이 있음.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고용 및 노동력 유입을 촉진하고 제조업 활성화의 토대 필요

□ 현황, 문제점

- 서울지역 제조업 비중의 의미
 - 서울지역 전체 산업 중 제조업 비중은 사업체(82만3천개) 중 5만8천개(7.5%), 종사자 521만명 중 26만6천명(5.5%)을 차지하고 있음. 이 중에서 중소기업이 77만5천개임
- 서울지역 영세제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 서울지역 제조업 중 10인 이하 영세업체가 93.7%를 차지하고 업종의 영세성으로 인해 노동환경도 열악한 상황

<표 5-14> 서울지역 사업체 및 종사자 구분 현황 (2018)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수		
		계	남성	여성
전체 산업	823,385	5,210,936	656,764	555,410
■ 광업	24	81	24	10
■ 제조업	58,970	266,500	54,492	40,721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83	6,083	179	92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51	9,139	449	290

자료 : 서울통계(<http://data.seoul.go.kr/dataList/10254/S/2/datasetView.do>)

□ 사업 목표

- 도심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통한 안전한 일터 만들기
- 도심 제조업 노동복지 향상 통한 노동력 유입 등 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 사업 내용

- 제조업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비용 지원
 - 서울지역 성수제화, 중구 인쇄 등 특화 지역 노동안전 기준 수립 및 실태조사, 작업환경 지원
 - 안전보건공단과의 협력사업으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원
- 제조업 밀집지역에 공동편의시설 운영
 - 야외 작업현장의 △이동형 샤워실, △작업복 세탁 바우처 제공 등 사업체 영세성으로 인해 기업복지로 제공되지 못하는 편의시설 지원 운영(*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모델 벤치마킹)

[그림 5-26] 해외사례 -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 도심 공예품 일자리 프로젝트(2013~2021)



[이탈리아 지방자치 정책 - 북부 밀라노시, 130만명(면적 181.67km)]

2017년 이탈리아 밀라노시에서는 새로운 공예품 개발과 도시에서의 디지털 제조업 경제를 위한 "Manifattura Milano" 행동 계획 발표. 새로운 정책은 도시 교외에 제조 기업 투자를 지자체에서 지원(이해당사자 참여, 학교와 학생 참여 등). 도시의 좋은 일자리(노동조건 데이터 수집과 판단)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건)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1. 작업환경 개선 지원 (건수)	90	제도설계	10	20	30	30
2. 작업환경 편의시설 지원* (개수)	70	제도설계	15	15	20	20
3. 작업환경 바우처 제공**	-	제도설계	바우처지급	바우처지급	바우처지급	바우처지급

주 : * 서울시설공단에서 현재 작업환경 및 도로보수 등의 노동자들의 간이 샤워실(캠핑카 이용) 확대

** 옥외나 지하 등 야외 작업 시설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 바우처 지급(월 10회, 15회, 20회 등)

4) 정책목표4 : 일하는 시민의 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존중 서울, 유니온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취약노동 계층을 포함한 노동의 다양한 의제를 서울시 주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참여'에 기초한 포괄적(inclusive)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일하는 서울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 노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노동정책을 제안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참여 모델을 구축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노사정 대표자들 간 상호협의, 대화와 숙의를 통해 노동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동포괄적(labor-inclusive)' 사회적 대화 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포괄적 참여형 거버넌스 구조를 선도적으로 확립·운영하여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는 i. 노동하는 시민의 정책참여 플랫폼 확립, ii. 서울시 사회적 대화 기구의 확대 및 강화, iii. 노동이사제도의 확대 및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 또한 유니온 시티의 기본 전제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임과 동시에 노동조합 설립과 노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현행 노동법상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하는 서울시민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를 전면 보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서도 '노조할 권리 보장'은 중요도와 추진용이성이 모두 높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되었으므로 정책목표 4의 중점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은 설문 결과 중요도는 높지만 성과는 낮아 향후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여 일반과제로 제시함. 그 밖에 자문회의와 연구진 논의를 통해 '노동자 참여 플랫폼 구축', '서울시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활성화', '노동이사제 확대 및 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함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서울시 노동정책 거버넌스에는 양대노총 중심의 조직된 노동 외 다양한 일하는 서울 시민들과 미조직 노동자들이 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부재

[그림 5-27] 기존 민선 5, 6기 노동정책 플랫폼

구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정책 심의
전국조직			
지역단위	서울특별시투자출연 기관노사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산별업종	업종별 현안 조직 노동조합		
기타	현안 문제 발생 개별 노동조합		3개 위원회

< 중앙정부 및 해외 동향 >

- ▶ 중앙정부의 경우,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참여 민주주의 모델을 중앙정부가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화와 같은 일회적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협의의 주요 채널로 확립하고 있음
- ▶ 해외에서도 참여 민주주의 모델은 주로 지방정부와 도시를 중심으로 확립되어 있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 협의,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강조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으며, 포괄성(inclusiveness), 시민권, 책임성(accountability), 과정성(processuality)에 기초한 공동 도시 거버넌스 모델을 그 기본 원리로서 강조함(Badach, J. and M. Dymnicka, 2017). 시민이 시정(市政)의 주체로서 시민권을 행사하는 이와 같은 모델은 미국 주요 도시의 타운홀미팅 유형의 의사결정체계에서도 나타남. 공직자들이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주요 정책 또는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시민들을 설득함과 동시에 시민들과의 토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발언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

- 정책 추진력, 정책의 포괄성, 질적 수준과 효과성은 행정적 기획과 집행 외에도 이해당사자의 광범한 참여와 정책개입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나, 현재 서울시 노동정책 거버넌스에서는 일하는 서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서울시 주요 정책에 반영토록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음

□ 제안 배경

- 서울시 2차 노동정책이 보다 광범위한 서울시 노동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으려면, 일하는 일반 시민과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논의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참여 민주주의의 원리를 강조하는 타운홀미팅 모델은 도시 거버넌스의 민주적 토대를 강화하여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일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현장밀착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미조직 노동자와 민간 부문의 취약 노동자들은 이해대변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조가 다차원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이미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이와 같은 참여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모델을 확립하고 있으므로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청년정책의 경우,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해 학생, 회사원, 청년활동가, 구직청년, 프리랜서 등 다양한 청년 1,000여명이 참여하여 주거, 건강, 교육, 복지안 전망, 일자리경제, 민주주의, 평등 다양성과 관련된 서울시 청년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수립하고 있음

□ 사업 목표

- 서울시 노동하는 시민 1천명 정책 참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사업 내용

- 기존 조직 노동 외 일하는 서울 시민 및 취약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시민 발의형 의제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여 서울시 노동정책을 노동하는 시민과 함께 기획하고 숙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 * '민주주의 서울', '청년시민의회' 형태, 외국 노총의 사례들(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을 벤치마킹하여 1천명 서울지역 개별 독립 노동자들이 서울시 노동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모델을 구축

- 3개월~6개월의 기간을 두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지원 하에 온·오프 플랫폼을 운영: 참가자 선정 및 참여 기반 확립, 분과 체계 확립 및 운영
- 공공, 민간을 모두 포괄하는 분과별 원탁회의를 운영하고, 노동정책 해커톤 형태의 ‘일하는 노동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노동정책 과제를 직접 선정하고 논의하여 이를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반영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명)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분과 회의 횟수	-	2	3	3	4	4
일하는 노동 시민 대토론회 참가자 수	매년 1,000명	1,000	1,000	1,000	1,000	1,000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직률은 11.8%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신규 조합원 중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공공부문과 대기업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음(고용노동부, 2019)
 - * 2018년 기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경우 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37.3%,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34.9%,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조직에 있는 조합원이 27.7%
 - * 여성조합원은 전체의 2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
 - * 공공부문이 68.4%인 반면, 민간부문은 9.7%에 불과
 - *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50.6%, 100-299명이 10.8%, 30-99명이 2.2%, 30명 미만이 0.1%로 나타남
- 서울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취약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조 설립을 지원하여 이해대변 격차 및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그 결과, 서울지역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수리됨
 - * 서울지역 대리운전 노동조합 설립: 2018년 11월
서울지역 대리운전자 노동조합 설립: 2019년 3월
서울지역 퀵서비스 노동조합 설립: 2019년 4월
서울지역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설립: 2019년 4월
서울라이더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 2019년 11월
- 또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정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함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특수형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이와 같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시도는 고용노동부의 재의 요청 등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였으나, 전속성을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제한하는 기존의 노동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안 배경

- '노동존중 서울, 유니온시티'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함
- 저임금 서비스 업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아 이해대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의 노조설립을 지원하여 집단적 이해대변의 가능성을 확장해야 함
- 노조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들이 누려야 하는 노동기본권이어서 하는데,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해 개인사업자 형태로 노동을 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에 어려움이 있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침해를 받고 있음. 따라서 노조법 상의 근로자 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호해야 함
- 노동조합이 공공부문과 대기업 위주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으로 노동권익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관련 법률지원 및 노조설립 지원이 필요함

□ 사업 목표

- ILO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조합 설립 지원과 노조할 권리 보장

□ 사업 내용

- 유니온시티 서울의 위상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ILO 국제기준에 맞도록 특수형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전면 보장
- 현재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완성하고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환경을 조성,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
- 노동기본권 중 핵심조항들은 고용지위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서울시 노동정책의 근본적 기조로 확립하고 그와 같은 핵심 기본권에 단

결권과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금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

- 노동조합 조직화 지원 및 활동기반 마련: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의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공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다각도로 지원
- 미조직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노조 설립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강사 파견을 통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교육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취약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지원 횟수	25	3	4	5	6	7
영세사업장 노조 설립관련 법률 상담/교육 횟수	125	5	15	25	35	45

□ 그간의 추진성과와 한계

- 지금까지 서울시는 공공부문의 경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 협력과 안정을 추구해 왔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지역수준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만들고자 함

* 설치근거

-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그러나 최근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적을 보면, 2017년 서면회의 1회 개최이후로 '18년과 '19년에는 회의 개최실적이 없어서 지역 사회대화기구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고 명목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임

<표 5-15>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적

개최년도	운영활동	성과내역
2017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세칙 개정 등 (서면회의 '17.10.16)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참여기관 인원 확대 (11개 기관 28명 → 13개 기관 33명)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추천
2018	회의 개최 실적 없음	
2019	회의 개최 실적 없음	

< 중앙정부 및 해외 동향 >

-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사회적 대화 체제를 개편하여 대표성 확장, 합의와 협의의 균형 등을 추구하였으나 민주노총 미참여, 탄력근로제 합의를 둘러싼 갈등을 겪으며 난항에 직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존중 패러다임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 해외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기구와 더불어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가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

□ 제안 배경

- 노동존중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산하 기관 및 서울 소재 기업들의 정책과 실천이 노동계층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개선과 양립할 수 있도록 노사정 교섭, 협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실행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개별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일하는 노동 시민 플랫폼(노동자 1000인 위원회)' 구축과 더불어 보다 제도화되고 공식화된 수준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이해조정과 협의를 통한 노사관계 협치모형을 구축,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 노사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사회적 대화기구를 쇄신하여 운영 정상화 및 내실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취약노동계층이 참여하여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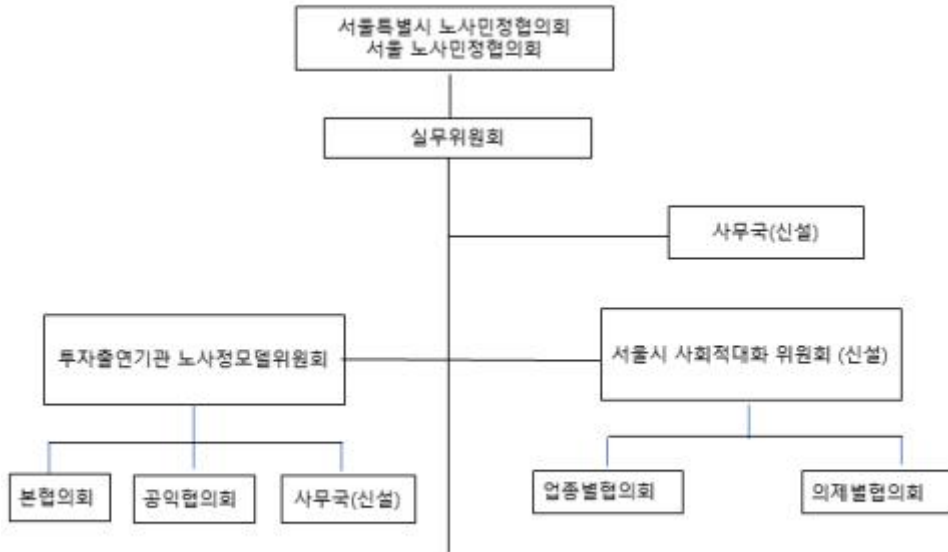
□ 사업 목표

- 서울시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 및 혁신

□ 사업 내용

- 서울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위원 배치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통한 서울시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 및 회의 정례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 운영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한 노정 교섭을 내실화
- 민간부문의 경우 서울시 사회적 대화 위원회를 신설하여 업종별 협의회와 의제별 협의회를 운영
- 업종별 협의회는 업종별로 미조직 취약 노동계층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사안들을 중심으로 각 업종에 고유한 고용·노동문제를 협의 및 조정
- 의제별 협의회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초단시간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의 노동권과 사회보호 방안과 관련된 의제, 서울형 노동 4.0 등의 미래형 의제 등을 포괄하는 논의구조를 만들고 미조직 취약계층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표성을 확장해야 함

[그림 5-28]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직 현황



○ 사회적 대화의 의제는 향후 서울시 핵심 노동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예: 서울시, 양대노총, 라이더 유니온,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협의하여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및 협약 체결, 도시형 제조업 산업안전 보장을 위해 노사정 각 주체 및 전문가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서울형 산업안전 협약 추진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회)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무국 운영기금	540	100	100	100	120	120
투자출연기관 노사정모델위원회 회의 횟수	29회 이상	4	5	6	7	7회 이상
서울시 사회적대화위원회 협의회별 회의 회수	24회 이상	3	4	5	6	6회 이상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
- 근로자 100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기관 100% 도입 완료함(지방공기업 5개 기관 8명, 출연기관 11개 기관 14명)

<표 5-16> 서울시 노동이사제 현황

구분	내용	근거규정
도입대상	노동자 100명 이상 기관 의무도입(16개 대상기관 100% 도입)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6.9.29)
자격/임기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 3년	
선임절차	노동자 투표로 후보자 선발 → 임추위 심사·추천	운영지침

- 중앙정부의 경우 국정과제로 선정 후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및 노동자 경영참여 모델의 기반을 마련함
- 현재 노동이사가 존재하는 기관의 경우,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탈퇴 의무, 노동이사의 경영의사결정 참여 권한 미흡 등이 개선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100인 미만 기관과 서울시 민간위탁시설의 경우에는 여전히 노동이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 권한이 크게 제한되어 있음

□ 제안 배경

- 노동이사제도는 내부의 감시와 견제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노동자들의 관점과 지식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개선, 안전, 품질 제고 등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참여경영을 통해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며 노사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적 관계를 창출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박태주 2016),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널리 확산되는 것이 참여형 노사관계의 확산을 위해 바람직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긍정

적 평가 속에서 제도적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노동이사의 경영참여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서 권한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동이사제도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 경영협의회를 도입하여 노동이사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100명 미만의 기관의 경우에도 노동이사제 단계적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 민간위탁시설의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현재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발전 방향을 도출 : 16개 기관 22명의 노동이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가 함께 하는 토론회,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운영실태 분석, 사업 경험과 성과 공유, 향후 발전방안 모색 등을 논의
- 노동이사의 경영참여 권한 확대 및 노동이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에서 노동이사의 의제 발의 권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경영협의회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100명 미만 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제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 서울시 민간위탁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노동 대표성 확보
- 서울시 공공계약 및 조달사업 체계와 연계하여 민간사업체에서도 노동자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경영 모델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이를 통해 민간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투표로 선발하거나 근로자 혹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100인 이상 기관 경영협의회 설치율	-	20%	40%	60%	80%	100%
100인 미만 기관 노동이사 선출율	-	20%	40%	60%	80%	100%
운영위원회 노동자대표 참가율	-	20%	40%	60%	80%	100%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2019.7.18. 시행)에 근거하여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를 비롯한 노동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동조건 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함
- 2019년 서울시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지원보조금 1,545백만원을 교부한 것 외에도,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의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동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알바상담소, (사)노동희망, 전국특성화고졸업생 노조 등 7개 단체에 총 1억원을 교부하였음
- 이와 같은 공모 지원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대부분의 노동단체가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조직적 기반이 취약하고 활동의 제약이 크므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꾸준히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표 5-17> 20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 및 교부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신청기관	지원금액
교육선전 강화사업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동서울우편집중국 지회	5,000
아르바이트/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통합치유 사업	알바상담소	11,000
‘일하는 주민, 동네에서 노동을 만나다’	사단법인 노동희망	15,000
특성화고 사회진출학교	전국특성화고졸업생 노동조합	27,000
건설노동자 퇴근 후 반딧불 학교	서울건설산업노동조합	17,000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방문작성 및 설문조사 사업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15,000
찾아가는 전태일 노동인권교육 및 조직갈등컨설팅	전태일재단	10,000
합계		100,000

□ 제안 배경

- 서울시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밀착형 노동사업을 활성화하고 노동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함
- 이를 위해 취약노동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과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노동조직의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신규 노동조합이나 영세 노동단체는 재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활동의 제약 받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해당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노동교육과 상담, 노조조직화 사업, 주민 노동복지 및 노동권의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동권의 향상에 기여해야 함
- 노동조합과 노동단체의 역량 향상과 노동자 조직화를 지원함으로써 ‘노조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 유니온시티 서울’의 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표

- 노동조합 및 단체 지원을 통한 노동권익과 복지 증진

□ 사업내용

- 취약노동계층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서울시 소재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을 지원: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노동권익과 노동복지 증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취약노동계층 대상 사업을 우선시
- 씨앗형 지원 사업: 신규 노동조합의 경우, 조직적 인프라와 활동기반이 취약하므로 정착 지원을 통해 노동조합의 역량과 조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서울시가 노동조합 신고 필증을 교부한 대리기사, 킥서비스, 보험설계사와 라이터 노동조합을 신규 조직 정착 및 활동지원 대상에 포함
- 새싹형 지원 사업: 신규 조직 외에 취약노동계층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지역 노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연차별로 지원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
- 열매형 지원사업: 설립 5년 이상된 노동단체의 전문역량 강화 및 노동단체들 간 지역 네트워크 협력 사업 지원

<표 5-18> 서울지역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사업 유형

씨앗형	새싹형	열매형
취약 노동계층과 주민의 노동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소규모 노동단체의 활동지원	신규노동조합과 노동단체의 정착 및 활동지원	설립 5년 이상된 노동단체의 전문역량 강화 및 지역네트워크 협력사업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원금액	19억 이상	2	3	4	5	5억 이상

□ 현황 및 문제점

-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갈등이나 쟁의 발생시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의해 공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며, 공적 조정 시스템은 준사법적 기능을 통해 노사간 권리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후조정이 일반적이며 단기의 정해진 조정기간 내에 심도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도 존재함

<표 5-19> 공적조정과 사적조정의 구분

구분	공적 조정	사적 조정
개념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공정기관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
조정기간	공익사업 15일, 일반사업 10일 심도있는 조정이 한계	노사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유연하게 운영가능
조정방식	사후조정이 일반적	노사갈등 전 단계부터 조정가능
조정인	노동위원회에서 지정됨에 따라 노사 당사자의 조정인에 대한 신뢰성이 낮을 수 있음	노사가 합의하여 지정하므로 조정전부터 노사 당사자의 조정인에 대한 신뢰가 높음
조정억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노사합의에 의하여 조정 억제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음
조정방법	사실관계 조사, 심문	사실관계 조사, 설문조사, 교육, 집중토론, 전문가의견,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조정방법
단체행동권 획득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노동위원회 조정 이후 단체행동 가능	노동위원회에 사적조정 신고방식을 제외하고 사적조정이후 단체행동권 불가

자료 : 서울시(2017),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2017.8), p.17

- 공적 조정 시스템만으로는 노사간 사전, 사후 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유도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적 조정 지원을 통해 공적 조정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한편, 중소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있어도 노조 사업 기반이 취약하여 법률 정보 지식 활용에 한계가 있고 교섭력이 약할 수 있으며, 초기업 단위로 구성된 노동

조합일지라도 소규모 신생노조일 경우 유사한 한계를 지닐 수 있음. 그러므로 제도적 기반과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장 노동조합과 소규모 신생노조를 대상으로 법률자문 등 집단적 노사관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제안 배경

- 노사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에 대해 서울시가 조정, 중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갈등을 예방, 해결하고 노사합의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사적 조정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노사간 쟁점을 정리하고 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적 조정은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공적 기관 이외의 제 3자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으로서 조정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한 조정방법을 동원하여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서 공적 조정을 보완함과 동시에 공적 조정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소규모 유노조 사업장이나 초기업 단위 신생 소규모 노조의 경우, 사용자에 비해 노동조합이 법률적 정보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교섭력의 약화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상시 노동법률 자문 및 부당노동행위 대응 지원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 목표

- 노사갈등 사적조정 지원 및 집단적 노사관계 지원

□ 사업 내용

- 사적 조정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서울소재 사업장의 노사갈등 중재 및 사적 조정 지원
- 사실관계 조사, 설문조사, 교육, 토론, 전문가의견, 브레인스토밍 등의 다양한 조정방법을 동원하여 노사가 합의한 다양한 조정의제에 대해 사적 조정 지원
- 노동조합 법률 자문 집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장 노동조합 및 신생 소규모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와 자문,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적조정지원(회수)	300	20	40	60	80	100
법률자문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지원 (회수)	300	20	40	60	80	100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수립, 실행해 왔으나 현재 서울시 노동존중 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며, 향후 노동존중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좌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도래 및 도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노동존중의 가치와 통합된 미래 서울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비전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의제발굴과 논의가 미흡

□ 제안 배경

- 서울시의 노동정책의 현주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툴(tool)이 필요하므로 서울형 노동지표를 개발하여 서울시 노동존중 지수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해야 함
-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과 노동시장, 고용관계의 변화에 서울시가 미래지향적,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술과 노동의 가치를 연계시킬 수 있는 서울형 노동4.0의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정책 협의, 전문가 토론, 포럼을 통해 노동존중의 미래지향적 비전과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표

- 미래서울 노동4.0 의제 발굴과 서울형 노동지표 개발

□ 사업 내용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대응 전략에 노동의제를 포함시켜 서울시가 노동포괄형 혁신 모델을 선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사회적 대화기구 내 의제별위원회에 노동4.0위원회를 설치
- 노동4.0 위원회 소속 노사정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정책협의를 통해 디지털화의 과정에서 더욱 배제될 취약노동계층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대책, 저숙련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숙련 교육 기회 제공 방안, 기술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방안 등을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

- 이와 함께 현재 서울시의 노동존중 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서울시 노동정책 현황,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취약 요소들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백만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4.0 위원회 회의 (회)	74	2	12	12	24	24
노동지표 개발을 위한 예산 (백만원)	-	50	50	운영	운영	운영

5) 노동정책 추진 기반 : 지속가능한 노동행정

- 서울시의 선도적 노동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른바 서울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그런 점에서 2차 노동정책은 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노동행정 기반을 확고히 하여 서울지역 노동권익의 저변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노동정책은 단지 담당부서의 정책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일하는 시민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전 부서가 노동인지적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함. 따라서 서울시 추진 정책의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일하는 시민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의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인지적 행정 기반을 조성토록 함
- 정책은 곧 예산이라는 이야기처럼, 노동행정 수요 증대 예상에 따른 목표예산을 확보하여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필요
- 25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마을노무사 운영,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 운영 등에 따라 상담 - 권리구제 - 예방의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 개편·조정도 필요함.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기능 중복이 예상되는 사업간 조정 및 역할 분담으로 취약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체계를 개편할 필요
- 또한 효율적 노동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 교육청 등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완비하여 지속가능한 노동정책의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가 설립한 노동권익기관(서울노동권익센터, 권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실행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노동인지적 행정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있던 계획 수립 전 및 예산 반영시에 노동의제를 고려하고 해당 정책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노동권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판단하는 것임
 - * 예. 장애인부서의 탈시설화 정책 추진시 장애인시설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고려
- 서울시에는 노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는데, 노동정책부서의 다른 부서의 시스템이 노동인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김철, 2019)
- 중앙정부의 고용영향평가처럼 서울시 다양한 정책이 정책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할 필요

< 중앙정부 동향 >

- ▶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사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 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유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
- ▶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23조 근거. 2010년 각 중앙부처 주요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본격적인 평가 시행

- 노동인지적 행정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노동인권 감수성이 강화될 필요
- 서울시는「서울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제2항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교육 추진하고 있으며, 본청, 투자출연기관, 사업소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실시
 - *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인원도 증가하였지만, 교육대상 대비 교육실적은 높지 않은 편임. 218년 기준 4급 이상 관리자 교육대상 205명 중 131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본청 팀장 및 6급 이하 교육대상은 4,388명이나 이 중 279명이 수강함. 사업소 대상도 12,335명으로 이 중 2,940명이 수강함

- 노동의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 교육화하고 단계적으로 전 공무원으로 확대

<표 5-20>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교육 실적

구분	2015	2016	2017	2018
본청 5급 이하 및 투자·출연기관	187명	54명	160명	131명(4급 이상 관리자) / 대상 205명
본청 노무관리 담당(6급 이하)	234명	91명	146명	279명(본청 팀장 및 6급 이하) / 대상 4,388명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사업소	1,913명	2,124명	2,087명	2,940명 / 대상 12,335명
인재개발원 위탁교육		73명	64명	
총계	2,334명	2,342명	2,457명	3,350명

* 자료 : 서울시(각 년도), 공공부문 노동교육 실시계획 자료

□ 제안 배경

- 서울시 정책은 결국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필요
- 노동정책 목표는 일하는 서울시민의 노동권 보호와 노동권의 증진으로, 서울시 모든 행정부서는 정책대상자인 일하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마련할 필요. 즉 노동기본권 등 노동이 존중되는 행정을 문화적, 시스템적 측면에서 체계화할 필요
- 노동인지적 행정 실행을 위해 노동정책부서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여 노동과 관련한 타 부서 사업에 대한 개입과 협력이 가능한 구조 구축 필요

□ 사업 목표

- 공무원의 노동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존중 행정 기반 마련
- 정책추진시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고려와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노동인지적 행정 실행

□ 사업 내용

○ 공무원 및 산하기관 대상 노동인권 교육 강화

- 시 본청 4급 이상,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민간위탁기관, 자치구 등으로 교육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나, 교육대상 대비 실적은 높지 않은 편임

* 2018년 기준 교육대상 16,928명 중 3,350명 교육 이수(이수율 19.8%)

- 서울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민간위탁 기관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강화하여 노동감수성 향상을 통한 노동존중 행정 기반 마련 필요
- 인권교육처럼 의무교육으로 배치하여 노동인지적 행정 토대 마련

○ 서울시 정책의 노동자 영향 사전 검토

- 현재 서울시 정책수립시 시민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 수렴 여부, 정책집행의 직·간접적 영향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전검토 문항만 있는 상황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정책수립시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에 해당 정책이 일하는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여 노동인지적 행정 실현

* 정책(사업) 집행이 노동자의 노동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까?

- 노동인지적 정책형성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노동정책담당관이 노동의제와 관련한 타 부서 정책 사전 검토 및 승인함으로써 노동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공공부문 노동인권 교육(교육이수율)	-	노동의제 관련부서 의무교육화	50%	70%	전체 의무교육화 100%	100%
정책의 노동자영향평가	-	제도도입 검토	지침 마련	시범사업	제도실행	제도실행

□ 현황 및 문제점

- 참여연대(2019)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노동행정 예산은 2019년 기준 2,263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63%이며, 이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9번째에 해당함³⁾. 광역지자체 가운데 노동행정 절대 예산액은 가장 많지만,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높지 않은 편임

* 2019년 기준, 광역지자체 노동정책 예산 비중은 강원(1.68%), 광주(0.81%), 제주(0.80%), 대구(0.77%), 세종(0.76%) 순이며, 전체 평균은 0.58%였음(참여연대, 2019)

<표 5-21>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예산 비중 (단위 : 억원, %)

	시 전체예산	노동정책담당관 예산 ⁴⁾	비율
2016년	275,038	121	0.044
2017년	298,011	314	0.105
2018년	318,141	165	0.052
2019년	357,416	163	0.046
2020년	395,282	271	0.069

* 자료 : 서울시(각 년도), 세출예산서 자료 정리

- 서울시 노동정책 주무부서인 노동정책담당관의 예산은 2016년 121억원에서 2020년 두배가 넘는 271억원으로 증가함. 2019년 163억원과 비교하면 2020년 노동정책담당관 예산은 전년대비 66% 증액됨. 하지만 서울시 전체 예산대비 비중은 0.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

- 3) 참여연대의 노동행정 예산 기준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19)」의 노동부문 업무로 다음 항목의 예산을 말함.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근로자 지원 등 노정관리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고용안정, 고용안정용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능력개발, 능력개발용자지원,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장애인근로자 용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용자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 시설지원, 실직자접촉용자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 4) 2017년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전태일기념관 건물 구입 및 리모델링 비용 때문이며, 2020년 예산 증가 이유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및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때문임

- 또한 예산이 크게 증가한 2017년과 2020년은 전태일기념관과 노동자복지관 확충에 따른 결과로 그 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증가는 크지 않은 편임
- 권역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대, 노동복합시설 운영, 생활임금 적용 및 민간확산 등 노동행정 수요 증대 및 적극적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노동예산 확대

□ 제안 배경

- 권역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대, 노동복합시설 운영, 생활임금 적용 및 민간확산 등 노동행정 수요 증대 및 적극적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노동예산 확대

□ 사업 목표

- 시 전체예산 대비 노동정책 예산 1% 확보

□ 사업 내용

-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동정책 예산 확대
- 노동행정 수요 증대 예상에 따른 목표예산 확보(시 전체예산 대비 노동정책 예산 1% 확보)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시 전체 예산대비 노동정책 예산	-	0.7%	0.8%	0.9%	1.0%	1.0%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노동행정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적인 법적 권한에도 불구하고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수립·시행해오고 있음
- 지방정부 노동정책을 선도해 온 서울시이지만 서울시 차원의 광역단위 노동정책과 자치구 단위 노동정책 연계는 미흡함. 광역 단위의 노동행정 발전과 비교하여 자치구 단위에서의 노동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조성주, 2019)
 - 이는 자치구 단위에서 노동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어려운 인적 자원 및 인프라가 그 원인
 - 자치구에 노동전담부서 자체가 없어 노동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노동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기 어려운 조직구조
 - 이에 따라 노동자 시민들의 생활단위까지 노동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
- 지방정부 노동정책 발전을 위해 광역 - 기초 - 중간지원조직(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으로 이어지는 체계 완비 필요

□ 제안 배경

- 자치구 단위의 노동정책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도 긴밀한 연계를 통해 노동자, 시민들의 생활단위까지 노동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구비 필요

□ 사업 목표

- 광역 - 기초 - 중간지원조직으로 이어지는 노동행정 체계 완비
- 자치구 노동행정 강화

□ 사업 내용

- 자치구의 독자적 노동정책 수행 및 시행이 가능하도록 자치구 노동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 자치구와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필수 사업 외 지역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독자적 사업계획 추진시 예산 매칭 지원

- 서울시 및 자치구 노동관련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 광역 - 기초 노동행정협의체 구성·운영
 - 시장 - 구청장 협의체 노동정책 관련 안건 상정·심의
- 자치구 노동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에 따라 노동정책 역량 강화와 연계성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자치구 노동업무 담당자 대상 정기적 노동인권 교육 및 워크숍 실시로 서울시 노동정책 공유 및 역량 강화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억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행정 협의체 운영(회)	분기별	2	4	4	4	4
자치구 노동사업 예산 지원(억원)	75	5	10	15	20	25
자치구 노동업무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회)	분기별	2	4	4	4	4

* 1자치구당 1억원 공모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4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이후 2019년까지 16개 센터 설치, 2014년 광역 센터로서 서울노동권익센터 설치, 2019년 권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 광역 : 서울노동권익센터 설치(2014년)
 - 권역 : 도심권·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2019년)
 - 자치구 : 16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2019년 기준)
- 2021년까지 전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완비 예정(1자치구 - 1개 센터)
 - 지역 내 노동복지 수요 증가 및 자치구별 노동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자치구 - 1개 센터 설치
-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미조직·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복지 및 노동권익 향상에 기여
 - 노동법률 상담, 노동교육 및 문화복지 등 서울지역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사업 추진
 - * 2018년 기준(계획),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용인원 7만명, 노동교육인원 7만 6천명
- 광역 - 권역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기능과 역할 정립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 제안 배경

- 권역센터와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대·운영에 따라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기능과 역할 모색 필요
- 향후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광역지원과 허브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현장 밀착형 지원조직으로 역할 강화 필요
- 업종, 고용형태, 세대별 매우 다양한 취약노동자가 다수 분포하는 서울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실태조사와 정책대안 마련이 중요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취약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연결망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되,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지원센터 위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연구용역을 통해 재단화 모색

- 노동권에 대한 노동자, 사용자, 학생, 시민 대상 노동교육 진행,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및 대상별 노동권익기관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취약노동자 권익개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칭) ‘서울노동재단’ 설립 추진

□ 사업 목표

- 25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완비
- 광역 - 권역 - 자치구 센터 완비에 따른 센터별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및 서울노동재단 설립 추진

□ 사업 내용

-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확대에 따른 광역 - 권역 - 자치구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 확보 및 조직간 역할과 기능의 조율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자 종합서비스 지원
- 광역 - 권역 - 자치구 센터 완비에 따른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필요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광역차원의 허브기능과 전략사업 추진 기능 담당·강화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현장밀착형 노동자 지원 기능 담당·강화
 - 권역센터는 권역 내 노조, 노동단체, 취약노동자들의 활동을 촉진·활성화하는 지원자로서의 역할
- 광역 기능의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장기적으로 (가칭)서울노동재단으로 전환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 수행. ① 서울시 차원의 연구조사를 통한 전략사업 개발 및 보급·지원, ② 확대된 권익보호와 법률지원으로 집단적 법률 구제지원 및 집단소송 등 집단대응, ③ 대시민 노동권 교육과 홍보, 노동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권역·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지원 등(주진우 외, 2017)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개소)	1자치구 1센터	22	25	25	25	25
권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개소)	5개 권역	5	5	5	5	5
(가칭)서울노동재단 설립	-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	조례 제정	재단 설립	-

* 기능·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구 및 권역센터 인력과 예산 확대(권역센터 9인, 자치구센터 6인)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중앙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교육청)와 협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계획 수립·시행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노동현안 사안별 공조체제 유지로 역할분담 및 수시 회의 개최
 - 서울시교육청 : 전문강사풀(공인노무사) 교류 활용 및 중·고교 노동교육 확대 등에 필요한 상호 협력 및 지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의 협력을 모색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노광표, 2018)
 - 지방정부의 임금체불조사권 부여를 고용노동부와 협의·추진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반대와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이양사무 목록 제외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
- 서울시교육청과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협력·추진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 권역 및 자치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연계하여 특성화고 대상 노동인권 교육 실시
 - * 교육체계, 강사진 구성, 역할 분담, 통합적 관리 등 협력 구축·시행
- 좋은일자리도시협의체(Decent Work Cities Network) 창립 및 ILO 협력 등 도시정부의 노동정책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 좋은 일자리 도시모델 개발 및 노동정책 확산을 위한 도시정부간 국제기구(DWCN)를 주도적으로 창립하고 국제포럼 개최
 - ILO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적용가능한 좋은 일자리 도시모델 개발

□ 제안 배경

- 서울시는 다양한 정책 협의 채널과 네트워크를 통해 노동자 권익 확대와 복지증진과 관련한 노동의제를 발굴·협의하여 이를 서울시 노동시장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
- 광역단위 노동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 교육청과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완비할 필요

- 또한 근로감독관 인력부족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 추진 필요

□ 사업 목표

- 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교육청과 광역단위 협력체계 완비
- 서울시 임금체불사건 원스톱 처리 및 지자체 임금체불 조사권한 부여
- 국제협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도시 모델 개발과 노동정책의 확산

□ 사업 내용

- 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교육청과 광역단위 노동정책 협의체 운영
 -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정책수립, 역할분담을 위한 논의
 - 서울시교육청과 안정적·체계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논의
- 중앙정부(고용노동부, 교육부)와 협력
 - 지자체 임금체불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추진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사권 병행으로 근로감독관 부족 문제 및 임금체불 신속·해결
 - * 근로감독관 인력부족 현상으로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2,115개에 이르고, 이로 인해 현행 근로감독은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 * 2018년 기준 전체 사업장 400만개 가운데 근로감독이 이뤄진 사업체는 0.7%인 2만 6천여개에 그쳐 매우 저조한 실적
 - * 한편, 서울시는 상담 - 구제 - 예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하는 시민의 노동기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특히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권역별·자치구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다양한 사업장의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창구는 물론, 사실 확인과 권리구제 지원 등 후속조치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
 - * 현재 서울시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은 권한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지방고용노동청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 임금체불 조사권한 확보 이전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 마련

- 중·고교 학생 노동인권 교육의 정규교육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력 추진
- 좋은 일자리 도시모델 개발과 노동정책 확산을 위한 DWCN 운영 및 ILO협력
 - DWCN 안정적 운영과 국제협력 확대·발전을 위한 별도 사무국 개설·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정책 광역협의체 운영	분기별	4	4	4	4	4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연 1회	1	1 (사무국 설치)	1	1	1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동정책기본계획 수행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노동권익기관 설치·운영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2012년 이후, 광역 - 권역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 2018년 개소
 - 직장맘지원센터 : 2012년부터 설치하여 현재 4개 권역센터 운영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 2015년부터 설치하여 1개 광역 센터와 4개 권역 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2001년 성동센터 설치 이후, 현재 6개 센터 운영
 - 청년활동지원센터 : 2016년 개소
-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미조직·비정규직 등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의 노동복지 향상과 노동권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그 밖에 센터들도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타 노동권익기관과는 다른 고유한 사업체계와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음
- 각 센터의 고유한 사업체계와 사업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들 센터 사업대상은 주요 취약계층노동자로서 유사한 성격의 노동권 침해에 노출되는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음. 즉, 각 센터 주요 기능중 하나는 사업대상 노동자 및 시민의 노동권보호와 노동권의 향상으로 서울시의 주요 노동권익기관이라는 것임
- 이처럼 서울시 다양한 노동권익기관이 있지만, 권익기관간 협력체계 및 연결망은 부재한 상황

□ 제안 배경

- 취약계층노동자 노동권의 향상을 위해 광역 - 권역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대 설치로 서울지역 모든 자치구에 취약계층노동자 지원 기능 구축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외에 특정 대상 노동자와 시민의 노동복지와 노동권의 향상을 위한 서울시 설립 노동권익기관 운영중
- 이처럼 서울시 설립 노동자 권익보호기관이 각자 민간의 전문성을 토대로 정책대상 지원을 위해 활동 중으로, 각 기관의 독자적 사업 추진과 함께 기관 간 협

력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사업 목표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직장맘지원센터,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청년활동지원센터간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설립 노동권익기관간 유기적 사업협력을 위한 서울시 노동사업 담당 행정부서관 협력체계 구축

□ 사업 내용

- 직장맘지원센터와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등 대상을 특정해서 운영되는 노동권익기관간의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강화
 - 협의체 구성 및 운영회의 정례화를 통해 협력사업 발굴 및 연계가능성 모색
- 서울시 노동사업 담당 행정부서관 협력체계 구축
 - 노동권익기관 담당 행정부서인 노동정책과, 여성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청년청 등 간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노동권익기관 간 효과적 사업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억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협의체 운영(회)	분기별	2	4	4	4	4
협력사업 예산 지원(억원)		5	10	15	20	25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의 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해 교육, 상담, 권리구제 지원,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옴
 - 교육 : 시민의 노동기본권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노동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서울시민 대상 노동교육 프로그램(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 매년 7만명 이상 교육
 - 상담 :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공인노무사 50명)의 무료 노동상담 진행. 2019년 기준 1만 8천건 상담
 - 권리구제 : 취약계층 노동자의 침해된 노동권 회복을 위해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 15명, 공인노무사 25명)을 통해 권리구제 지원. 2019년 기준 140건 권리구제
 - 컨설팅 : 노동권의 침해 예방을 위해 마을노무사(공인노무사 50명)를 통해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진행. 매년 300개 사업장 컨설팅 진행
- 상담 - 권리구제 - 예방으로 이어지는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기반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민간의 노동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화되어 있음
- 하지만, 상담 및 컨설팅 사업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또는 마을노무사가 공통으로 수행하여 유사·중복 문제가 지적되고, 특히 2021년 25개 전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예정에 따라 역할 조정이 필요한 상황

□ 제안 배경

- 25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권리보호 기반 정책분야(모니터링, 상담, 교육, 홍보)의 세부사업 조정 및 내실화 필요
-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을 체계화하여 추진할 필요
- 서울시민 노동교육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인과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노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 상담 - 권리구제 - 예방의 노동권리보호 기반 조성 사업은 기능 중복에 따라 역할 재조정 필요
- 서울시 노동정책 홍보사업은 서울시민의 정보접근 및 이용을 제고를 위해 서울 노동포털 구축에 따라 온라인 및 모바일 홍보전략 수립
-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단순홍보가 아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획 캠페인을 광역 - 권역 - 25개 자치구 센터가 동시에 추진하여 실질적 변화 유도

□ 사업 목표

- 서울시 전역 취약계층노동자 노동복지서비스 완비에 따른 노동권리보호 기반 개편
- 시민대상 노동교육 체계화 및 안정화
- 온라인을 통한 노동상담, 교육, 권리구제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시스템 구축(서울노동포털 구축)
- 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공동 추진에 의한 기획캠페인을 통해 현장의 노동문제 실질적 해결

□ 사업 내용

- 상담, 교육, 컨설팅 등 취약노동자 노동권의 사업을 전 자치구에서 수행함에 따라 일부 기능 중복이 있는 시민명예노동움부즈만 및 마을노무사 제도 개편 필요
 - 전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상담 - 권리구제 - 예방의 노동권리보호 기반 사업의 조정. 시민명예노동움부즈만, 마을노무사, 노동권리보호관 등이 수행하는 상담, 컨설팅, 권리구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 문제 발생
 - 상담 사업의 시민명예노동움부즈만 운영은 광역 - 권역 - 자치구 센터의 역할·기능 확대에 따라 사업 조정
 - * 노동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각 센터별 개별 상담번호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
 -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사업의 마을노무사 운영은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대상 규모와 역할 조정
- 취약계층노동자 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은 광역 - 권역 - 자치구 센터간 연계와 협력 필요
 - 자치구 센터는 자치구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독자적 조사를 수행하되, 서울시 전역에 걸친 공통의 조사 필요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조사 기획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사업화를 위한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력 강화
- 서울시민 노동교육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 단시간 내 높은 교육실적을 보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인프라 구축(공통교안 마련, 강사진 역량 강화 등)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필수교육이 되도록 중앙중부 정책 건의 및 협력 추진
- 서울노동포털 구축으로 광역 - 권역 - 자치구 센터의 상담, 교육 등 대시민 노동복지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서울시 전역의 노동복지서비스 구축에 맞춰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서울시 노동정책 브랜드화
- 광역 - 권역 - 자치구 센터 공동 추진에 의한 기획캠페인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개, 건수, 회)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취약계층노동자 실태조사(명)	10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시민 노동교육(명)	480,000	8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노동상담(명)	105,000	19,000	20,000	22,000	22,000	22,000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개)	2,000	300	350	400	450	500
권리구제(건수)	930	150	180	200	200	200
기획 캠페인(회)	반기별	1	2	2	2	2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9a),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보도자료, 고용노동부(2019.12.)
- 고용노동부(2019b), 공공부문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고용노동부(2019.3.12)
- 고용노동부(2019c), 2018 전국 노동조합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거현안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2018.11.13)
- 국미애·고현승(2018), 「직장맘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국미애·임윤옥(2019),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종진·황수옥·윤정향 외(2019a), 「소득보장과 사회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김종진·노성철·장희은·양경욱·김윤영 외(2019b), 「서울시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서울연구원.
- 김종진·박용철·윤자호·홍종윤(2019c), 「서울지역 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 연구」, 서울도서관.
- 김종진·이명규 외(2020), 「서울시 민간위탁 노동실태 연구」,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김준(201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관련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영향보고서》, 입법영향분석보고서 Vol. 2016-00, 국회입법조사처.
- 김준영·권혜자·최기성·연보라·박비곤(2018),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김철(2019), 박원순 서울시정 3기, 노동정책의 쟁점과 과제, 박원순 민선 7기 서울시정 1년 평가 토론회 발표자료(2019.6.11.)
- 김철식·장귀연·김영선·윤애림·박주영·박찬임·홍석만·신순영(2020),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남우근·조경진·류임랑·양영실(2018),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노동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자원연구원.
- 노광표(2018), 고용노동정책 분권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 서울시 경험과 그 함의, 고용노동정책의 분권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토론회 발표문(2018.10.11.)
- 박태주(2016), 한국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시도를 중심으로, 노동사회 제 191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각 년도), 공공부문 노동교육 실시계획
 서울시(각 년도), 세출예산서
 서울시(각 년도),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교육 추진계획
 서울시(2015).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15.4)
 서울시(2016a).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서울시(2016.4.)
 서울시(2016b).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 기자간담회 자료, 서울시(2016.8.11.).
 서울시(2017).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계획. 서울시(2017.7.)
 서울시(2018),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프리랜서 정책토론회 발표문(2018.4.11.)
 서울시(2019a),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
 서울시(2019b), 서울시 투·출기관 성평등임금공시 토론회 자료집,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연구원(2019), 「도시기본계획재정비를 위한 2030서울플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송태수·이원희·손영근·허정·조성신·김유진·김태수·전명훈(2018),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2019),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미영(2018), 「가족 내 무급노동의 불평등과 사회정책」, 월간 복지동향(235), 10-15
 안전보건공단(2018), 「근로자 안전 위한 미래 지향적 연구방향 수립」, 안전보건공단.
 오승은(201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 -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유진성(2016),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KERI 정책제언 16-32.
 윤영삼(2019), 「부산지역의 노동존중방안 연구: 취약노동자정책을 중심으로」, 부산연구원.
 이승렬·김상수·황준욱·박명준·신현구(2013),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철(2019),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동권익 활동 성과와 과제, 충남노동권익센터 제1회 노동정책 포럼 발표자료.
 이철·신태중·김주일·김철·남우근·정경은(2017),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체계 개발과 적용,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보고서.
 조성주(2019),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9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발표자료(2019.9.6.).
 주진우·신경희·이정용·오찬섭·노광표(2015). 「서울시 노동정책 발전전략」, 서울연구원
 주진우·이정용(2015), 「서울시 노동정책 전략사업」, 서울연구원
 주진우·신경희·권혜영(2017).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서울연구원.

참여연대(2019).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2019.4.4.).
참여연대(2019), 임금체불 보고서-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
안, 참여연대 이슈리포트(2019.10.7.)
최봉(2019),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 기준과 자치구 생활임금 통합안 마련 연구」, 서울연구원.
황수옥(201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적 제도화 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9.

Badach, J. and Dymnicka, M.(2017). Concept of 'Good Urban Governance' and Its
Application in Sustainable Urban Planning. In *IOP Conference Serie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Vol. 245). IOP Publishing.
Conchon, A.(2011).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rights in Europe: Facts and trends*. Brussels: Etui.
Martilla, J. A. and James, J. C.(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Matzler, K., Bailom, F., Hinterhuber, H. H., Renzl, B., & Pichler, J.(2004). The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e-level performance and overall
customer satisfaction: a re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3(4), 271-277.

A. 다음은 기존 서울시 노동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 귀하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가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한 아래의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인지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중요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성과) 각각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인지도	중요도	성과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음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직장맘 지원 (지원센터 운영 등)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음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 특성화고 졸업생 지원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음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어르신 돌봄노동자 지원 (지원센터 운영 등)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음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외국인 노동자 보호 (직업능력개발 등)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음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음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도심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음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음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용역근로자 노동조건 개선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음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문 2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의 개선을 위해 새롭게 제안해주시실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문 3

귀하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가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한 아래의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인지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중요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성과) 각각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인지도	중요도	성과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① 전혀 알지 못하는 편임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알고 있음 ④ 중요하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노동분야 실태조사 및 홍보)	① 전혀 알지 못하는 편임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알고 있음 ④ 중요하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서울노동아카데미 (시민 노동교육)	① 전혀 알지 못하는 편임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알고 있음 ④ 중요하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① 전혀 알지 못하는 편임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알고 있음 ④ 중요하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 (노동상담)	① 전혀 알지 못하는 편임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알고 있음 ④ 중요하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마을노무사 (노무관리 컨설팅)	① 전혀 알지 못하는 편임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알고 있음 ④ 중요하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노동권리보호관 (권리구제 지원)	① 전혀 알지 못하는 편임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알고 있음 ④ 중요하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노동조사관 (공공부문 노동인권침해 조사)	① 전혀 알지 못하는 편임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알고 있음 ④ 중요하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제작	① 전혀 알지 못하는 편임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알고 있음 ④ 중요하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문 4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의 개선을 위해 새롭게 제안해주실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문 5

귀하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 아래의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인지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중요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성과) 각각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인지도	중요도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생활임금제 도입과 확산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사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노동시간 단축모델 도입과 확산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민간위탁기관 고용개선 (노무진단, 노동여건 개선)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다산콜센터 처우개선 (다산콜재단 설립)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청소 근로환경 시설 개선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노동자 권리보호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큰 편임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문 6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의 개선을 위해 새롭게 제안해주시실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문 7

귀하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 아래의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인지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중요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성과) 각각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인지도	중요도	성과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큼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서울시 노사정보협의회 효율적 운영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큼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큼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큼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과 운영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큼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노동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 (근로자권보호위원회, 포럼 등)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큼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노동정책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청)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큼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및 전담조직 강화 (노동정책담당관 설치)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크지 않음 ② 크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큰 편임 ⑤ 매우 큼 ⑥ 잘 알지 못해 평가할 수 없음

문 8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의 개선을 위해 새롭게 제안해주시실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B. 다음은 서울시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9 귀하는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분야 7대 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인지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중요도), 추진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는지(추진용이성) 각각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인지도	중요도	추진용이성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개 자치구 1센터 설립, 역할/기능 강화)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ILO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조합 설립 지원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서울시 노동사회위원회(가칭) 설치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체불임금 Zero 도시 조성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강화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특성화고 졸업생 등 노동권익 보호 강화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알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 ④ 알고 있는 편임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문 10 민선 7기 노동분야 7대 과제 추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실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C. 다음은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제안된 신규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1 귀하는 제안된 신규과제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요성), 추진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추진용이성) 각각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중요도	추진용이성
노동인지적 행정체계 구축 (정책수립시 사전 검토 항목 노동 추가 등)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일하는 노동자 1,000인 위원회 (노동자 참여 플랫폼)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노동정책 예산 확보 (목표예산 5% 확보)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자치구 노동행정 강화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공무원 노동교육 강화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노동행정 위상 제고 (개방형 직제 상향)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신규 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원 강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이주노동자, 돌봄노동자)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1부서 1실태조사 (각 부서별 정책대상 노동자 실태조사)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노동존중형 교대제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서울형 주4일제 노동모델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산업별·업종별 노사정협의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중요도	추진용이성
노동자 경영참여 모델 강화 및 확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강화, 민간위탁 노동자 운영위원 참여)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집단적 노사갈등 사적 조정 지원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조정전문가 육성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노동자 교육훈련 지원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유급병가·유급휴가 지원 및 확대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서울형 노동지표 개발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장기투쟁사업장 및 해고노동자 지원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노조할 권리 보장 지원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노동분야 중간자원조직간 협력 강화 (노동센터, 직장맘센터, 어르신돌봄 종사자센터, 감정노동자센터 등)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노동자 자조 모임 지원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① 매우 어려운 편임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용이한 편임 ⑤ 매우 용이함

문 12 향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새로운 노동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십시오.

◆ 긴 시간 동안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집필진

-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정책방향

- 발행연월일 2019년 12월 31일
- 발행인 문종찬
-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전태일기념관 5층
 02)6925-4349, www.labors.or.kr